

월간  
**재정포럼 7**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7년 7월호 제133호

**현안분석** •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소고/ 홍범교  
기혼여성과 소득세 : 최적조세이론 관점/ 김현숙

**정책토론티포트**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정책연구** •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 •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b>권두칼럼</b>	02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 이인실
<b>현안분석</b>	06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소고 · 홍범교 25 기혼여성과 소득세 : 최적조세이론 관점 · 김현숙
<b>정책토론티포트</b>	45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b>해외동향</b>	64 일본의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7」
<b>정책연구</b>	79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 전병목
<b>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b>	84 중국, 이자소득세 폐지한다 외
<b>정책흐름</b>	101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10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110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11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118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b>재정통계</b>	125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외
<b>이런의견 저런생각</b>	138 불투명한 NGO 회계 기부문화 죽인다 외

#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재정의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그 역할도 커다란 변모를 겪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약 2년간의 심의과정을 거쳐 2006년 9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의 제정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이번 국가재정법은 관계부처와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제정에 성공하였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재정은 이미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담긴 재정관련 운영방식의 상당부분이 이미 정부의 개혁과제로서 실행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들이 입법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재정법의 제정은 우리 재정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동법의 제정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재정 확립이라는 원칙의 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재정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가재정법은 향후 우리나라 예산회계시스템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재정학자들 사이에서도 간과되기 쉬운 것은 국가재정법의 시행에 따른 국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54조는 국가 재정의 핵심을 구성하는 예산에 관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변화하는 경제사회 여건에 맞추어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역할이 변화하고 있듯이 국회의 재정통제권도 전환점에 있으며 새로운 역할을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제도적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범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한정되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기금까지 망라하게 되었다. 또한 국회 내에서 재정을 논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설되는 등 종전에 비해 국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들이 입법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재정법의 제정은 우리 재정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회의 예·결산 관련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국가재정법의 제정 이전에는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의 미진한 심의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모색되어 왔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국가재정법의 커다란 틀 속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보다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재정학계의 노력이 좀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국회의 사전적·체계적 관여를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증시하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행정부는 국회가 행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을 증시하는 기조하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선순위의 점검과 사후통제에 주력하도록 국회·행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배분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의 입장 차이도 크지만 국회 내에서도 교섭단체 간에 행정부 편성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강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를 불신하는 야권 교섭단체는 자연히 국회의 행정부 예산 편성

에 사전적 관여와 통제의 범위를 유지하는 기초를 가져가고 있다. 이미 최근 수년간 재정과 관련해 정치쟁점화할 정도로 국가채무의 범위와 누적규모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간 근원적 시각의 차이가 노정된 바 있다.

당연히 국가채무관리에 있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국회의 개입을 국가재정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채무를 정의하지 않고 「국제기준을 따른다」는 봉합수준의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의 견제적 역할은 국가재정법 제정 과정에서도 주된 논란의 하나였다.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국채발행의 신축성 확보 조항을 국가재정법에 포함시키는 정부 제안은 “국채발행의 신축성이 재정건전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국회의 견고한 입장에 밀려 수용되지 못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에 대한 사후통제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러 형태의 사후통제시스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국회의 결산 심의권을 차체에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결산 심의로 발굴된 주요 정책 사안이 예산 심의에서 쟁점으로 부각,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었다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정도로 그동안 국회의 결산 기능

.....

국가재정법의 제정은 향후 재정개혁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비효율적 관행이라고 지적되던 부분이 개혁이 되어야 국가재정법의 제정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

은 예산 심의의 뒷전에 밀려 형식화될 수밖에 없었다. 제17대 국회에 이르러 결산될 심사의 내실화 노력이 급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결위 내에서 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결산소위가 설치되었고 입법부당한 현안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재정법에는 조기 결산을 가능케 하는 예산결산 순기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결산 심사의 강화가 예견되고 있다. 국가 재정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결산기능 내실화 제도화의 기반 위에서 국회가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보다 충분한 심사기간과 추가적인 자원투입을 통하여 원활한 사후통제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법의 제정은 향후 재정

개혁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비효율적 관행이라고 지적되던 부분이 개혁이 되어야 국가재정법의 제정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예산을 통한 국회의 견제기능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는 가급적 국가의 장기비전과 재정정책의 기초와 같은 커다란 틀에 대해 심의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년은 국가재정법 시행 원년이다.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예산의 규모나 국민부담, 국가 채무 관리, 재정의 부문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등 중요한 재정과제에 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KIPF**

# | 현안분석 |

-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소고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혼여성과 소득세 : 최적조세이론 관점  
김현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소고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hong@kipf.re.kr)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  
문제의 핵심은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 I. 서론

최근 국제조세 논의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세제가 주요한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형자산의 거래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도 이러한 현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동 문제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각국의 과세권에 연결된 참여 한 이해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 문제의 핵심은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상가격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OECD에서는 1996년에 이전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칙적인 논의로서 실제 적용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나름대로 관련 국내법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법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실제 적용하기에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별로 제도상의 상이점이 있는 것도 국제거래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과제로서 국제적인 일관성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로서는 단기적 현안에 치중하여 소홀히 하기 쉬운 문제이나 향후 무형자산의 국제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II. 무형자산의 국제거래

### 1. 현황 및 전망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음악·영상·소프트웨어 거래, 특허 및 노하우 전수, 상표권 사용 등을 생각해보면 동 거래의 증가 전망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표 II-1〉은 우선 국제적인 상품과 서비스 거래의 변화 추이에 대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IMF에서는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한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 않고,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여기서 보여주는 서비스 교역량 가운데 무형자산의 거래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상품 대비 1/4 정도가 서비스 교역이고, 그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에서는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한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 않고,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

〈표 II-1〉 세계 주요 30개국 수출입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상품		서비스	
	수출 (export)	수입 (import)	수입 (credit)	지급 (debit)
1980	1,352.8	1,328.5	288.9	319.5
1985	1,310.2	1,318.9	300.9	323.6
1990	2,454.9	2,403.0	619.2	657.9
1995	3,505.7	3,352.3	867.9	891.5
2000	4,082.2	4,246.1	1,068.8	1,082.7
2001	3,901.3	4,046.3	1,061.0	1,075.3
2002	3,998.0	4,115.7	1,106.8	1,112.6
2003	4,600.3	4,714.9	1,261.0	1,265.6

자료: Lipsey(2006)

〈표 II-2〉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는 〈표 II-3〉과 〈표 II-5〉의 무형자산 관련 거래의 비중을 보여주기 위한 비교 기준으로 수록하였다.

1) IMF 분류에서 서비스 가운데 기타 서비스(other services)에 특허권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1년 이후, 두 가지 서비스 수지에 있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타 사업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자 규모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 II-2〉 국제수지 요약표

(단위: 백만 달러)

	상품		서비스		경상수지	자본수지
	수출	수입	수입	지급		
2001	151,478.3	137,990.3	29,054.9	32,927.0	8,032.6	-3,390.8
2002	163,414.0	148,636.6	28,387.7	36,585.2	5,393.9	6,251.5
2003	197,289.2	175,337.2	32,956.5	40,380.7	11,949.5	13,909.4
2004	257,710.1	220,141.3	41,881.5	49,927.6	28,173.5	7,598.8
2005	288,970.7	256,287.6	45,129.4	58,787.6	14,980.9	4,756.5
2006	331,844.8	302,631.1	51,873.6	70,636.5	6,092.6	18,618.7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2007. 4

〈표 II-3〉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를 나타내는데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와 무형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이후, 두 가지 서비스 수지에 있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타 사업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자 규모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 서비스 수지

(단위: 백만 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수입	지급	수지	수입	지급	수지
2001	923.5	3,052.9	-2,129.4	6,388.4	9,237.1	-2,848.7
2002	835.3	3,002.2	-2,166.9	6,005.5	9,607.3	-3,601.8
2003	1,311.2	3,570.0	-2,258.8	6,687.3	11,049.4	-4,362.1
2004	1,861.1	4,445.9	-2,584.8	8,125.1	13,162.5	-5,037.4
2005	1,908.4	4,560.8	-2,652.4	9,422.3	15,537.5	-6,115.2
2006	2,010.6	4,487.3	-2,476.7	13,070.6	19,904.9	-6,834.3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2007. 4

〈표 II-3〉의 두 가지 서비스 항목의 수입과 지급을 연도별로 각각 합한 것을 〈표 II-2〉의 전체 서비스 수입과 지급에 각각 대비하여 비중을 구한 결과가 〈표 II-4〉에 나와 있다. 2001년부터 2006년에 걸쳐 무형자산 관련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은 약 24~30%, 지급은 약 34~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급의 경우가 수입보다 약 10% 포인트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표 II-4〉 무형자산 관련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	25.2	24.1	24.3	23.8	25.1	29.1
지급	37.3	34.5	36.2	35.3	34.2	34.5

무형자산 거래에 있어서의  
수지 적자 추세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과세권은  
더욱 축소됨을 의미한다.

〈표 II-5〉에서는 〈표 II-3〉의 기타 사업 서비스 가운데 무형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의 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무형자산의 거래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도 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sup>2)</sup>

〈표 II-5〉 기타 사업 서비스

(단위: 백만 달러)

	법률, 회계 등			연구 개발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수입	지급	수지	수입	지급	수지	수입	지급	수지
2006	694.8	1,188.0	-493.2	331.9	898.1	-566.2	368.5	680.3	-311.8
2007	205.9	300.4	-94.5	73.4	261.0	-187.6	100.0	209.5	-109.5

주: 2007년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집계임.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2007. 4

이러한 무형자산 거래에 있어서의 수지 적자 추세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과세권은 더욱 축소됨을 의미한다.

## 2. 무형자산의 특징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무형자산의 속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첫째, 각 무형자산은 독특하고 개별성이 강하여 비교 가능한 거래가 적다. 둘째, 최종수요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재판매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무형자산의 개발에는 장기간의 시간, 막대한 직간접 비용이 소요되고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어렵다. 넷째, 자산마다 특징이 있어 가치가 다르고, 희소성 때문에 주관적인 수치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거래되는 재화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자산가치에 많은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무형자산은 최초 개발시 많은 연구개

2) 기타 사업 서비스 가운데 세부 항목에 대한 통계는 2006년부터 수록되었다.

3) 마영민(2006), p. 9



무형자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시점에서 가격을 정하여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발비가 투입되고, 연구개발비의 일시적 배분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유형 자산보다 크다. 또한 개발 및 상업적 이용에 있어서 독점적 이익의 기대치도 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시점에서 가격을 정하여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소득상응원칙'에 의하여 무형자산을 고정된 금액으로 양도거래하고 종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sup>4)</sup> 즉, 무형자산이 거래당 시에는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거래 이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상응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정상가격을 이탈한 경우, 주기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주기적 조정의 원칙(periodic adjustments)'을 적용한다.

### 3. 세법상의 정의

이와 같은 무형자산의 특징에 기반하여 OECD,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무형자산을 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가. OECD

OECD에서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6장에서 무형자산을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특별히 제6장에서는 마케팅을 포함하는 상업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무형 자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크게 i) 특허, 상표, 상호, 디자인, 모델과 같은 산업적 자산의 사용권 ii) 문학 및 예술 재산권과 노하우 및 기업비밀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sup>

더 나아가 상업적 무형자산(commercial intangibles)은 크게 사업 무형자산(trade intangibles)과 마케팅 무형자산(marketing intangibl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케팅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무형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상표권으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을 돕는 상표, 고객 명단, 배포 채널, 독특한 이름이나 심벌 등을 들 수 있다.<sup>6)</sup> 일부 마케팅 무형자산은 법률로써 보호되며, 그 가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로써 증명되어온 상표의 명성과 신뢰성, 품질관리의 정도,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상품이나 서비스의 배포 채널 및 이용가능성, 광고 등의 효과, 무형자산을 통하여 접근하는 시장의 가치,

4) 미국 내국세법 제482조

5)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2

6)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4

무형자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권리의 성격 등.

마케팅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모두 사업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사업 무형 자산은 위험을 수반하고 비용이 드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러한 활동에 드는 비용을 그 결과물을 통하여 회수하고자 한다.<sup>7)</sup>

한편 노하우나 기업비밀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사업 무형자산 또는 마케팅 무형자산의 양쪽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노하우나 기업비밀은 상업활동을 돕는 고유의 정보나 지식이지만 특허나 상표권같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위하여 등록되지 않는 자산이다.<sup>8)</sup>

노하우나 기업비밀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사업 무형자산 또는 마케팅 무형자산의 양쪽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 나. 미국

미국 재무부 시행세칙 §1.482-4(b)에서 무형자산은 개인의 서비스와는 독립 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i) 특허권, 발명, 특정 공식, 공정, 디자인, 패턴 또는 노하우 ii) 저작권 및 문학, 음악 또는 예술적 창작품 iii) 상표권, 상호권 또는 제품명권 iv) 독점판매권, 특허실시권 또는 계약권 v) 방식, 프로그램, 시스템, 절차, 서베이, 연구물, 예측 방법, 추정 방법, 고객 명단 또는 기술적 자료 vi) 기타 유사한 항목.

무형자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국세법 제48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936조의 (h)(3)(B)항에서도 무형자산을 이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미국 무형자산 정의의 특징은 무형자산을 개인의 서비스와 구분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9)</sup>

## 다.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운영요령 제1장 「용어의 정의」1-1-(13)에서 무형자산은 「조세특별조치법 통달 66의4(2)-3(8)에 규정하는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해당 통달에서는 「저작권, 기본통달 20-1-21에서 규정하는 공업소유권 등 외에, 고객 리스트, 판매망 등의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sup>10)</sup>

법인세법 기본통달 20-1-21에서 말하는 공업적 소유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공업소유권 및 그 실시권 등 이외에, 이들 권리의 목적

7)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3

8)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5

9) 내국세법 제482조는 무형자산의 사용료에 대한 미국으로의 귀속을 강조하기 때문에 Super royalty 조항이라고 불린다.

10) 國際稅務研究會(2006. 9), p. 17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은  
법률상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달리 정의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생산 및 기타의 업무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발명, 즉 특별한 원료, 처방, 기계, 기구, 공정에 의하는 등 독자적 고안 또는 방법을 이용한 생산 방법, 거기에 준하는 비법, 비전 기타 특별히 기술적 가치를 가진 지식 및 의장 등을 말한다. 따라서 노하우는 물론 기계, 설치 등의 설계 및 도면 등에 체화된 생산방식,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되지 만 해외에 있어 기술의 동향, 제품의 판로, 특정 품목의 생산고 등의 정보 또는 기계, 장치, 원재료 등의 재질 등의 감정 또는 성능의 조사, 검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조법에서 무형자산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sup>11)</sup>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보면 감가상각의 대상으로서 무형자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채취권, 유료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 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 이용권, 수도시설 이용권, 열공급시설 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 이용권, 전용측선 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관리권, 수도시설 관리권, 댐 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한편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의 대상으로서 무형자산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i)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ii)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그리고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서는 무형자산의 공동개발 및 확보에 관한 원가분담약정 관련 무형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그 밖의 설계, 모형 및 노하우.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은 법률상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달리 정의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개인의 서비스와 특별히 구분하는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11) 마영민(2006)의 분류에 따른다.

**마.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구분**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특별히 무형자산이 개인의 서비스와 독립된다는 정의는 없다. 즉, 미국은 서비스와 무형자산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적자본에 의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영업인력이 해외 자회사로 진출되는 경우를 보자.<sup>12)</sup> 본사와 자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동 진출자에 대한 급여 등은 본사 근무시의 급여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자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무형자산의 거래가 존재하는가? 이는 영업인력으로서의 서비스와 별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무형자산이 영업에 사용되는가에 달려 있다. 즉, 동 사원이 본사에서 받는 급여 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업 노하우 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고, 독립된 제3자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를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6년 3월에 개정된 국세청 사무운영요령 2-11 「조사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무형자산」에서 「조사에 있어서 무형자산이 법인 또는 국외관계자의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특허권, 영업비밀 등의 기술혁신에 관한 무형자산뿐 아니라, 예를 들면 기업의 경영, 영업, 생산, 연구개발, 판매촉진 등의 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종업원 등의 능력, 지식 등의 인적자원에 관한 무형자산 및 프로세스, 네트워크 등의 조직에 관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그 검토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도록」하였다.<sup>13)</sup> 일본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 서비스에도 무형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과 같이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인적 요소 또는 경영적 요소에 포함된 무형자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특별히 무형자산이 개인의 서비스와 독립된다는 정의는 없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적자본에 의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12) 羽床正秀(2007), p. 35의 예

13) 上野嘉一(2006), p. 32



OECD는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서도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Ⅲ. 국제이전가격 과세제도

#### 1.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거 이전가격세제의 대상은 주로 유형자산으로서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OECD의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유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OECD는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서도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14)</sup>

##### 가. 전통적인 거래 기준법

이전가격세제의 전통적인 거래 기준법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말한다.

-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② 재판매가격법(RP: resale price method)
- ③ 원가가산법(CP: cost plus method)

각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우수하나 독립된 자 간의 유사한 거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재판매가격법(RP)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한편 원가가산법(CP)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

14)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13

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OECD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거래 기준법을 다음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15)</sup>

#### 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

OECD에서는 전통적인 거래기준법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도 제시하고 있다.

- ① 거래순이익률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 ② 이익분할법(PSM: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률법(TNMM)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이익분할법(PSM)은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을 토대로 측정한다.

이익분할법은 다시 기여도분석법(contribution analysis), 비교이익분할법(comparable profit split), 잔여이익분할법(residual profit split)으로 나누기도 한다. 기여도분석법은 말 그대로 결합이익을 특수관계자가 행한 기능에 따라 그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로 발생한 결합이익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나 활동과 유사한 독립적인 기업의 합산영업이익과 같은 비율로 배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해 내는 방법이다. 잔여이익분할법은 2단계로 이익을 분할하는데, 제1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기여에 대한 이익을 배분한다. 즉 무형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유사한 독립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참고로 하여 이익을 배분한다. 그리고 남은 잔여이익에 대하여 무형자산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다.(그림 Ⅲ-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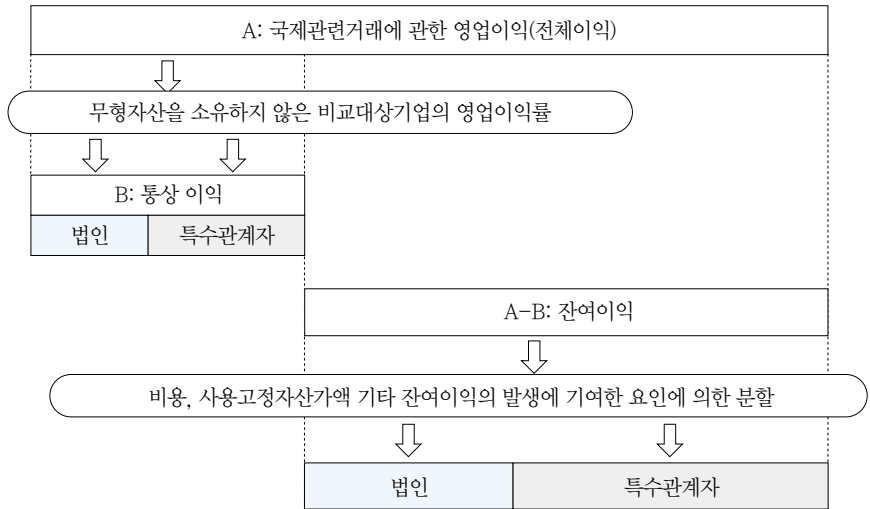
OECD에서는 전통적인 거래기준법 이외에 거래순이익률법과 이익분할법과 같은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식도 제시하고 있다.

15) OECD 이전가격지침 제2장 문단 2.49



OECD에서도 무형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제6장에서 무형자산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I-1] 잔여이익분할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산정



자료: 國際稅務研究會(2006. 10), p. 14

### 다. 무형자산에 대한 고려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유·무형자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OECD에서도 무형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제6장에서 무형자산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자(transferor)와 받는 자(transferee)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6)</sup> 이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독립기업원칙이 비교 가능한 독립거래에서의 가격을 점검하는 것이지만, 이전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가하는 무형자산의 가치나 유용성에 근거하여 비교 가능한 독립기업이 지불하는 가격이 반드시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이 이용 가능한 다른 옵션, 즉 새로운 투자 또는 사용료 지불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특수관계기업이 그 사업내용과 사업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유용성이 매우 한 정적인 즉, 특별히 그 기업에만 필요한 무형자산을 매입하거나 사용 허여를 받는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가장 생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동 무형자

16)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14

산의 한정적인 유용성을 감안할 것을 OECD는 권고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제시는 개별 거래의 비교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모든 사실과 환경을 감안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특수관계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의 산출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요소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리적 지역의 제한, 동 이전권리를 사용하여 생산된 재화에 대한 수출 제한, 독점사용 여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본투자, 개시 비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개발 작업, 재허여(sub-licensing) 가능 여부, 배포 채널, 사용자가 동 무형자산의 후속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sup>18)</sup>

특별히 대상 무형자산이 특허권인 경우, 마케팅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표에 의한 가치 증대, 소비자 수용도, 지역적 중요성, 시장 점유율, 매출 규모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감안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사업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동 자산 자체의 가치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성을 분석하도록 충고하고 있다.<sup>19)</sup>

거래시점에서 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 OECD에서는 미국과 달리 기대편의(anticipated benefit)을 계산하여 독립기업원칙을 따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sup>20)</sup> 다만 예상치 못한 사후 사정이 매우 중대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독립기업이라면 가격이 재협상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미국의 super royalty 조항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1)</sup>

## 2. 주요국의 무형자산 이전가격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의 일반적 원칙을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을 기타의 방식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 가운데 재판매가 가격법과 원가가산법은 무형자산의 거래에 있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그것은 무형자산의 특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형자산은 최종수요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재판매가 거의 없고, 무형자산의 개발에는 장기간의 시간, 막대한 직간접 비용이 소요되고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원가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방법 가운데 나머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무형자산에 적용

거래시점에서 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 OECD에서는 미국과 달리 기대편의를 계산하여 독립기업원칙을 따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

17)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15

18)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20

19)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24

20)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29

21) OECD 이전가격지침 제6장 문단 6.32



미국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익분할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데 있어 타당성이 있으나, 실제로는 비교가능한 가격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에는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인 이익분할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 가. 미국

미국은 국제적으로 이전가격 세제를 주도해 온 나라이다. 미국은 1968년 재무부 시행세칙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세제를 최초로 구체화시켰다.<sup>22)</sup> 그러나 이전가격세제가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러한 원칙이 자국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고, super royalty조항이라고 불리는 내국세법 제482조를 1986년에 도입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초과이윤이 해외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러한 초과이윤을 모두 미국에 귀속시키고자 동법을 제정한 것이다.

내국세법 제482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무형자산에 귀속될 소득과 비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곧 초과이윤을 연구개발의 성과로 보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나라-즉, 대부분의 경우 미국을 상정-에서 초과이윤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sup>23)</sup> 이에 대하여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절충의 결과 이익분할법이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의 방법으로 추가되는 선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익분할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1994년에 개정된 재무부 시행세칙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① 특정 방법(Specified Method)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T)<sup>24)</sup>
  - 비교이익법(CPM)<sup>25)</sup>
  - 이익분할법(PS)
    - 비교이익분할법(Comparable Profit Split)<sup>26)</sup>
    - 잔여이익분할법(Residual Profit Split)<sup>27)</sup>
- ② 기타 불특정 방법(Unspecified Method)<sup>28)</sup>

22) 미국의 이전가격세제 도입 배경과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이창희 (2004) pp. 665~67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3) 전개서(2004), p. 668

24) 재무부 시행세칙 §1.482-4(c)

25) 재무부 시행세칙 §1.482-5

26) 재무부 시행세칙 §1.482-6(c)(2)

27) 재무부 시행세칙 §1.482-6(c)(3)

28) 재무부 시행세칙 §1.482-4(d)

한편 2007년 1월부터 무형자산의 소유자와 관련된 재무부 시행세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sup>29)</sup> 과거에는 고객 명단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무형자산은 복수의 경제적 소유자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개발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단일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규정은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향후 주목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기업이 무형자산의 형성을 위한 노력과 의사결정을 제공한 후, 그 무형자산을 미국의 자회사가 관리한다고 하자. 일본에서는 법적 소유 관계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의 형성, 유지 또는 발전에의 공헌 정도를 감안하여 복수 소유권을 인정하므로 미국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의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세제는 OECD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일본

일본은 1986년에 처음으로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한 이래, 2000년에 통칙을 개정하여 비교이익분할법과 잔여이익분할법을 도입하고, 무형자산의 사용허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4년에는 법개정을 통하여 거래순이익률법을 도입하였고, 2006년에는 사무운영요령을 개정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자산과 서비스의 구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sup>30)</sup>

### ① 기본3법과 이와 동등한 방법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조세특별조치법66의4(2)-1)
- 재판매가격법(조세특별조치법66의4(2)-ロ)
- 원가가산법(조세특별조치법66의4(2)-ハ)

### ② 기본3법에 준하는 방법과 이와 동등한 방법

### ③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이와 동등한 방법

- 거래순이익률법(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39의12(8)二,三)
- 이익분할법
  - 기여도분석법(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39의12(8)-)
  - 비교이익분할법(조세특별조치법 통칙66의4(4)-4)
  - 잔여이익분할법(조세특별조치법 통칙66의4(4)-5)

29) 河野 雅徳 外(2007), p. 56 참조

30) 國際稅務研究會(2006. 10), p. 22



현재 기본적인 틀은 상당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일본의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세제는 OECD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이전가격세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하겠다. 현재 기본적인 틀은 상당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 특별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구분은 없다. 다만 2006년에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제6항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sup>31)</sup>

-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전통적 거래기준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국조법 제5조1항제1호)
  - 재판매가 가격법(국조법 제5조제1항제2호)
  - 원가가산법(국조법 제5조제1항제3호)
- ② 기타 합리적인 방법(국조법 제5조제1항제4호)
  - 이익분할법(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 거래순이익률법(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Berry Ratio법(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기타 합리적인 방법(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최적방법(best method)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우선 순위에 있어 전통적인 거래기준법 가운데 최적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며,<sup>32)</sup> 기타의 방법에서 규정한 특정 방법<sup>33)</sup>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4)</sup> 이것은 OECD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1) 이 조항도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 추가한 규정이다.

32) 국조법 제6조

33)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Berry Ratio법을 말한다.

34) 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IV. 향후 전망 및 과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적으로는 이전가격세제하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전가격세제 자체에 대한 대안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방향의 전개는 대체로 실무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OECD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입법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익분할을 위하여 무형자산의 형성, 유지, 발전에 대한 특수관계자 간의 공헌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언급된 바와 같은 많은 애로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이전가격세제의 실무적 적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예로서 Glaxo Smith Kline 사건에서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들 수 있다. 영국의 대형제약회사인 Glaxo Smith Kline과 미국 국세청 간의 대형 조세분쟁이 2006년 9월에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마무리되었다.<sup>35)</sup> 이 사건은 1989년부터 2000년까지 12년 동안 총 132억달러에 달하는 소득조정이라고 하는 미국 이전가격세제 사상 최고액의 경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Glaxo Smith Kline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적 소송이 진척되기 전에 IRS와의 합의를 통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세금을 포함하여 총 17년간 34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IRS가 2004년에 제시한 경정통보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잔여이익분할법의 적용이 매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교대상거래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6)</sup>

쟁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IRS의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에 있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 IRS의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받아온 이전가격세제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두 번째 방향의 전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가격세제 자체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단일기업과세제도(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나 다중요소공식

중단기적으로는 이전가격  
세제하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전가격세제  
자체에 대한 대안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5) 동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望月文夫(2006, 11) 참조.

36) 望月文夫(2006, 11) p. 26과 p. 29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는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기존의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 의한 이익분할법 등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방법들과의 절충적인 방법이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단일기업과세제도는 미리 정해진 일종의 공식에 의해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분배하는 제도로서 이익분할법에 비하여 다국적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OECD에서는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방법이다. 반면에 OECD의 이익분할법을 비롯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 각 다국적기업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다 보니 실제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즉 납세순응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 극단적인 방법 간의 절충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sup>37)</sup>

장기적인 대안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가격의 적용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도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조사행정력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가격세제를 실무적으로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의 제정 이래 수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는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기존의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38)</sup> 하지만 유형자산의 이전가격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의 제정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이며, 여전히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은 결국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39)</sup> 따라서 이러한 보완은 국제적인 논의를 보아가면서 시간을 두고 진행할 작업이라고 하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보다 이른 시기에 실행 가능한 보완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최적방법 선택에 있어 우선 순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국조법에서 전통적인 거래 방법을 기타의 방법에 우선하여 먼저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적의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선 순위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우선 순위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조법 제정 당시 OECD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결과, 여전히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

37) 2001년 European Commission 연구에 의하면 유럽 역내시장에서의 이전가격세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조화(harmonization)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단일기업과세제도를 지향하고 있다.(Jacobs et al.(2004) 참조)  
 38) 김주택(1999), 박정우·박성배(2005), 마영민(2006) 등  
 39) 박정우·박성배(2005), p. 230

로 짐작되는바,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선택한 최적방법을 거래와 관련되는 두 개 이상 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동시에 인정받는 경우, 실효성이 없는 우선 순위는 납세자에게 실무적으로 한 단계 더 부담만 지우게 된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인적자본 및 경영자본에 관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앞서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자본들과 무형자산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부터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예를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상응의 원칙에 대한 대응으로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매우 불확실하여 납세자가 사전에 정상가격으로 평가한 금액과 사후의 실제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미국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대편익의 계산에 의하여 최대한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되,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기업이라도 재협상을 했을 만큼 실질적으로 사후적인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OECD에서도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후 조정을 하는 규정의 도입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세계적으로 볼 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와 국제적 세수 확보를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에 덧붙여 OECD를 비롯한 선진국의 논의를 보면 결국은 이익분할법도 잔여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중요소에 의한 이익분할법이나, 단일기업과세제도와 근본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최근의 국제논의를 볼 때 그러한 공헌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자본의 역할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조세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나 협약들이 이러한 바탕 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입장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KIPF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최근의 국제논의를 볼 때 그러한 공헌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자본의 역할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김주택,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무형재화를 중심으로」, 『산업경영연구』 제11권, 1998. 12, pp. 319~341.
- 마영민, 「그룹사간 무형자산 이전에 관한 과세문제」, 한국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12.
- 박정우·박성배, 「무형자산의 이전가격과세를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4집 제2호, 2005, pp. 211~244.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4.
- 한국은행, 『국제수지』, 2007. 4.
- 上野嘉一, 「「移轉價格事務運營要領(事務運營指針)及び「連結法人に係る移轉價格事務運營要領(事務運營指針)」の改正について」, 『國際稅務』, Vol. 26, 2006. 6. pp. 31~43.
- 河野刃雅德 外, 「役務提供取引に關する米國の新移轉價格規則」, 『國際稅務』, Vol. 27, 2007. 4, pp. 53~57.
- 國際稅務研究會, 「日本企業の海外進出と移轉價格稅制—無形資産·役務提供取引を中心に」, Part 1, 『國際稅務』, Vol. 26, 2006. 9, pp. 14~27.
- , 「日本企業の海外進出と移轉價格稅制—無形資産·役務提供取引を中心に」, Part 2, 『國際稅務』, Vol. 26, 2006. 10, pp. 12~29.
- 羽末正秀, 「役務提供取引と無形資産取引について」, 『國際稅務』, Vol. 27, 2007. 4, pp. 33~41.
- 望月文夫, 「グラクソ·スミスクライン事件の全容」, 『國際稅務』, Vol. 26, 2006. 11, pp. 26~35.
- Jacobs, O. et al., “ICT and Profit Allocation within Multinational Groups,” *Intertax*, Vol. 32, No.6/7, 2004, pp. 268~283.
- Lipsey, R., “Measuring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NBER Working Paper 12271, May, 2006.
-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01.



# 기혼여성과 소득세 : 최적조세이론 관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hskim@kipf.re.kr)

조세제도 내의 양성 불평등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장려하고 결혼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법을 통해 양성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 I. 서론

양성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세제도 내의 양성 불평등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장려하고 결혼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법을 통해 양성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선진국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에서 세법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양성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는 아예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세체계 중 가장 양성 불평등적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소득세는 주로 비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및 각종 조세혜택에 불평등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비근로소득을 모두 남편소득에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기도 하며 여성보다는 기혼남성에게 더 유리한 공제제도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세법상 명시적인 불평등 요소가 없다고 해도 남녀에게 동일한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소득세 부과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남성과 여성(혹은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다르다면 탄력성이 높은 그룹에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부과로 인한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남녀의 임금탄력성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최적 소득세율을 추정하는 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불평등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개인소득세는 주로 부부의 공동소득인 비근로소득,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소득, 각종 공제제도, 누진적 소득세율을 통해 양성 불평등이 나타난다.

구는 양성 평등이라는 이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본고에서는 각국의 소득세법상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양성 불평등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나아가 기혼여성과 남성의 임금탄력성을 분석하여 과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세법상의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특히 우리나라 기혼여성과 남성의 임금탄력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시도한다.

## II. 각국의 소득세 내의 양성 불평등 요소

양성 불평등 요소는 법적 주체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나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판매세(sales tax)보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에 직접 부과되는 소득세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시스템에서도 발생한다. 양성 불평등 요소는 뚜렷한 형태로도 존재하지만 암묵적인(implicit) 형태로도 존재하여 때로는 식별이 어렵다. 명시적으로 뚜렷한 불평등 요소는 법령이나 규정, 규제 등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지만 암묵적인 요소는 법령이나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반응이나 행위가 다르므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로 의도적으로 존치시키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경제주체의 행위로 인해 결과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세체계 내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명시적인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암묵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불평등 요소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시적인 양성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세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세법의 개정 등을 통해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적 함의를 통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암묵적인 불평등 요소는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개인이나 가구의 의사결정과 맞물려 이루어지므로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불평등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개인소득세는 주로 부부의 공동소득인 비근로소득,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소득, 각종 공제제도, 누진적 소득세율을 통해 양성 불평등이 나타난다. 가구에 귀속되는 비근로소득이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거나 남편과 부인의 소득에 대한 공제에 차별이 있을 경우 불평등이 발생한다. 소득세에 나타나는 명시적,

암묵적인 양성 불평등 요소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종합소득세 체계 내의 양성 불평등 요소

명시적인 요소	
부부합산신고	개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와 관련된 조세혜택(공제, 감면, 이연 등)</li> <li>소득세 신고자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근로소득 혹은 가족간의 공동사업소득의 귀속</li> <li>조세혜택</li> <li>소득세율 구조</li> </ul>
암묵적인 요소	
부부합산신고	개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진적인 한계세율로 2차적인 소득원에 패널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근로소득 혹은 가족 간의 공동사업소득의 귀속</li> <li>조세혜택</li> </ul>

주: Stotsky(1996)

각국의 소득세를 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양성 불평등 요소가 개별 소득원천에 대한 과세의 경우 보다 많이 나타난다.

### 1. 종합소득세와 개별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비교

개별 소득원천에 대해 분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소득원천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성 불평등 요소가 명시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즉 개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납세자의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직접 연계시키기 어려우므로 결혼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이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각국의 소득세를 보면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양성 불평등 요소가 개별 소득원천에 대한 과세의 경우보다 많이 나타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별신고와 부부합산신고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부부합산의 경우에는 양성 불평등적 요소가 많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 등에서는 과거에 부부합산신고를 하였으나 성적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개별신고제로 전환하였고 독일이나 미국 등은 납세자에게 개별신고제와 부부합산신고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 포르투갈은 개별신고제에서 부부합산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프랑스는 가구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개별신고제하에서의  
양성 불평등 요소는  
비근로소득, 가족공동의  
자영업 사업소득,  
조세혜택, 세율체계  
등에서 존재한다.

## 2. 개별신고제하에서의 양성 불평등 요소

### 가. 비근로소득

개별신고제하에서 근로소득은 노동을 제공한 납세자에게 귀속되지만 비근로소득에 대한 취급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비근로소득을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 귀속시키거나 부부 간에 절반씩 귀속시키거나 부부가 선택하도록 허용하거나 비근로소득의 원천에 대한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가능하다.

그런데 세법상 비근로소득을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나라가 상당 수 존재한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비근로소득은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는데 이는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전통에 따른 것이다. 1990년의 조세개혁 이전에 영국의 소득세 체계는 부부합산신고제(부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별신고 선택 가능)였는데 만약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개별신고를 선택했을 경우 가구의 비근로소득은 모두 남편에게 귀속되었다. 이로 인해 이혼이 발생했을 경우 부인의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거의 불가능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 나. 가족 공동의 자영업 사업소득

가족이 함께 종사하는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나라들이 많다. 탄자니아의 경우 부인의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부부 공동자영업 소득은 남편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부부가 개별신고를 할 경우 소득이 낮은 부인에게 사업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다. 조세혜택

감면, 공제, 이연 등과 관련한 조세혜택에 대해 남녀에게 차별을 두는 방식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1984년 조세개혁 이전의 네덜란드에서는 결혼한 남성이 결혼한 여성보다 더 많은 감면이나 공제의 혜택을 받았으며 요르단에서는 부부가 각각 소득세를 개별신고할 경우, 남성에게

계만 해당하는 특별공제가 있으며, 짐바브웨에서는 홑벌이 여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홑벌이 남성에게는 제공한다.

부부합산신고제는 부부를 하나의 조세단위로 간주하므로 개별신고제에 비해 명시적인 양성 불평등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 라. 세율체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5년까지 기혼여성에게 기혼남성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녀에게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최적조세 관점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소득세율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 3. 부부합산신고제하에서의 양성 불평등 요소

부부합산신고제는 부부를 하나의 조세단위로 간주하므로 개별신고제에 비해 명시적인 양성 불평등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 가. 조세혜택 및 소득세 신고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남편에게는 조세혜택이 주어지지만 부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감면이나 공제 등의 혜택이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부부합산신고를 할 경우 세법상 남편의 이름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1990년까지 영국에서 부부합산시 남편 이름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였고 1983년까지 프랑스도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스위스는 여전히 남편 이름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나. 가구의 2차 소득원과 누진세율 : 암묵적인 양성 불평등

누진세율체계는 무엇보다도 주요한 소득원이 아닌 2차 소득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누진적 소득세 체계하에서는 개별 신고제와 달리 2차 소득원의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2차 소득원인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합산과세는 결혼에 대한 패널티나 혼인세(marriage tax)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도 누진세율 체계하에서는 그 크기가 달라지므로 경제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누진적인  
소득세율하에서는  
개별신고제가  
부부합산신고제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임금에 대한 노동공급탄력성은 기혼남성보다 크므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에 대한 소득세율이 다른 납세자에 비해 낮아야 한다(McCaffery(1993), Alesina&Ichino (2007) 참조). 따라서 누진적인 소득세율하에서는 개별신고제가 부부합산신고제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 4. 세계적인 소득세 개혁 흐름 : 양성평등의 제고 및 결혼에 대한 패널티 제거

〈표 2〉는 다른 나라에서 남녀 간의 평등을 제고하고 결혼에 대한 패널티를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진 소득세 개편내용이다.

〈표 2〉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각국의 소득세 개편내용

국가(개정연도)	개정 전	개정 후
프랑스 (1983년)	부부합산신고시 남편의 서명만 기입	부부 모두 서명 기입하도록 강제화 여전히 가족단위의 소득과세 제도 유지*
아일랜드 (1993년)	부부합산신고시 남편 서명으로 기입하고 부인이 근로소득세에 대해 개별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조항 존재	부부합산신고시 부인이 우선 납세자로 될 수 있도록 선택 조항 추가
말레이시아(1991)	부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개별 평가를 선택하지 않는 한 부인의 모든 소득은 남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신고	개별신고와 부부합산신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네덜란드(1984년)	독신이나 기혼여성보다 기혼남성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를 허용	납세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의 소득공제 허용
남아프리카공화국(1995년)	독신이나 기혼여성에게 더 높은 소득세율 부과	모든 납세자에게 단일화된 소득세율 부과
영국(1990)	부부합산신고 혹은 부인의 근로 소득에 대한 개별평가 선택조항	개별신고로 전환

주: 프랑스의 가족단위 합산과세제도의 소득세는 가족의 과세소득을 합산한 후 이를 구성원 수에 따른 가족계수로 나누어 세율적용 후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는 형태로 산출. 즉 소득세액=((가족의 과세소득합/가족계수)\*소득세율)\*가족계수

대부분 부부합산 신고를 개별 신고로 전환하거나 공제나 감면에 대한 혜택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하는 형태로 소득세 개편이 이루어졌다. 한편 남성에게 유리한 소득세 체계와는 반대로 여성에게 유리한 소득세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자녀관련 소득공제에 있어서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고학력자인 여성에게는 추가적인 자녀관련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을 제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경우, 여성에 대한 기초공제가 남성보다 더 많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부부합산과세는 최적조세이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개별신고제의 경우에도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것이 최적조세이론에 부합한다.

### III. 최적조세이론에 입각한 소득세율

#### 1. 노동공급탄력성과 소득세율<sup>1)</sup>

소득세 신고시 부부합산이 아닌 개별 신고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의 2차적 소득원인 부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없다. 또한 부녀자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하거나 부부 공동의 사업소득에 대해 부부 개인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체계 내에 기혼여성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조항은 거의 없다. 그러나 McCaffery(1993)와 Alesina&Ichino(200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적조세이론의 관점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 사중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금탄력성이 높은 기혼여성에 대한 소득세율이나 실질적인 실효세 부담이 임금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에 비해 낮아야 한다는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합산과세는 최적조세이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개별신고제의 경우에도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것이 최적조세이론에 부합한다.

본장에서는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다를 때 어느 정도의 소득세율의 차이가 최적조세이론의 관점에서 적정한지 살펴본다.

#### 가. 남성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이 독립적인 경우

우선 노동공급은 세후소득에 상수의 탄력성(constant elasticity)을 가진 함수라고 가정하고 임금은 정확히 한계생산성만큼 지급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사

1) 주요한 내용은 Alesina&Ichino (2007)에 기초하여 정리



만약 남성의 임금탄력성  $\sigma_m$ 이 여성의 임금탄력성인  $\sigma_f$  보다 낮으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세율인  $t_0$ 를 부여하게 될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이 더욱 위축되며 이에 따라 더 큰 사회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회 전체에 하나의 세율  $t$ 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sup>2)</sup>.

$$L_f = s [(1 - t)w]^{\sigma_f} \quad (1)$$

여기서  $s$ 는 조정요소(scale factor)이고,  $\sigma_f$ 는 개인  $f$ 의 임금탄력성이다. 소득세 부과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C_f = w(L_n - L_f) - \int_{L_f}^{L_n} \left(\frac{1}{s}L\right)^{\frac{1}{\sigma_f}} dL \quad (2)$$

여기서  $L_n$ 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의 시장균형 노동공급량이다. 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후생이 감소하며 임금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후생 감소의 폭은 더욱 커진다.<sup>3)</sup>

$$\frac{dC_f}{dt} = -wt \frac{dL_f}{dt} = s\sigma_f w^{\sigma_f+1} (1-t)^{\sigma_f-1} t > 0 \quad (3)$$

만약 남성의 임금탄력성  $\sigma_m$ 이 여성의 임금탄력성인  $\sigma_f$  보다 낮으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세율인  $t_0$ 를 부여하게 될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이 더욱 위축되며 이에 따라 더 큰 사회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sup>4)</sup>.

따라서 동일한 세수를 유지하는 세수중립적인 세율을 유지하면서 사회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해는  $t_f = \frac{\theta}{\sigma_f + \theta} < t_0 < \frac{\theta}{\sigma_m + \theta} = t_m$ 이며  $\theta$ 는 세수중립적인 정부의 예산제약식의 라그랑지 승수인  $\lambda$ 를 이용하여 구성된  $\frac{\lambda}{\lambda + 1}$ 로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며 정부의 예산제약의 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최적소득세율  $t_f$ 하에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남녀 동일세율의 경우보다 증가하고 남성의 노동공급은 다소 감소하지만 두 노동공급의 합은 증가하여 세수 중립적이면서 사회 전체의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사회후생 손실도 최소화된다.

2) 세율이 여러 개 존재해도 분석과정은 복잡하지만 최적조세이론에 따른 분석의 함의는 동일하다.

3)  $\frac{dC_f}{dt d\sigma_f} = \frac{1}{1-t} sw[w(1-t)]^{\sigma_f} \{1 + \log[(1-t)w]\} > 0$

4) 남녀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할 경우 노동공급은  $L_f < L_{f0} < L_n$ 의 형태로 나타나며, 사회후생 손실은  $0 < C_{f0} < C_f$ 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 남성과 여성의 임금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이 0이 아닌 경우

독신여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다르다면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노동의사결정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두 주체 간의 임금교차탄력성도 0이 아니다. 이 경우 가구 내 개인의 노동공급은 본인과 배우자의 세후임금에 의존하게 된다.

$$L_j = L_j((1 - t_j^*)w_j, (1 - t_i^*)w_i) \quad (4)$$

여기서 자신의 임금탄력성은  $\sigma_j$ , 교차탄력성은  $\gamma_{ji}$ ,  $t_j^*$ 은 개인 j의 세율,  $t_i^*$ 은 개인 j의 배우자인 i가 당면하는 세율이다.

교차탄력성이 0이 아닌 경우, 세수중립적인 정부의 최적해(최소의 사회후생 손실)로부터 도출되는 세율은

$$t_f^* = \frac{\theta^* - t_m \frac{L_m}{L_f} \gamma_{mf}}{\sigma_f + \theta^*}, \quad t_m^* = \frac{\theta^* - t_f \frac{L_f}{L_m} \gamma_{fm}}{\sigma_m + \theta^*} \text{ 이다}^{5)}$$

즉, 교차탄력성이 0이 아닌 경우에도 남녀의 소득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기초할 때 남성의 교차탄력성인  $\gamma_{mf}$ 는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음수값이어서 여성의 소득세율  $t_j^*$ 은 교차탄력성이 0인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남성의 세후임금이 감소하게 되면 여성은 더욱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

다.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이 다른 경우

본장의 1)항과 2)항의 논의는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도출한 결론으로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가정<sup>6)</sup>을 도입해도 여성에게 더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임금은 다음과 같은 소득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w_j \sim G_j(w)$ ,  $j = \{f, m\}$ ,  $w_j \in [w_-, w^+]$ . 또한 효용은 다음과 같이 소비와 여가의 단순한 준선형(Quasi-linear)함수로 가정한다.

$$U_j(C_j, L_j) = C_j + V_j(1 - L_j) \quad C_j = wL_j - T_j(wL_j) \quad (5)$$

실증분석의 결과에 기초할 때 남성의 교차탄력성인  $\gamma_{mf}$ 는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음수값이어서 여성의 소득세율  $t_i^*$ 은 교차탄력성이 0인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남성의 세후임금이 감소하게 되면 여성은 더욱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

5) 여기서  $\theta^* = \frac{\lambda^*}{\lambda^* + 1}$ 이다.

6) 여성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노동 시장 내의 다양한 형태의 남녀차별의 존재, 여성이 차별을 예상하여 인적자본투자에 적게 투자하는 등 다양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생산성이 낮아 남성보다 낮은 소득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사회후생극대화<sup>7)</sup>의 1계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최적소득세율은

$$\frac{T_j(w)}{1 - T_j(w)} = H_j(w) K_j(w) P_j(w) \text{ 이다.}$$

여기서  $H_j(w) = \frac{1 - G_j(w)}{g_j(w)}$  는 개인 j 소득분포의 역해저드(inverse hazard)함수이고,  $K_j(w) = \frac{1}{w} (1 + \frac{1}{\sigma_j(w)})$  는 노동공급탄력성의

$$\text{감소함수이며 } P_j(w) = \frac{\int_{w_-}^{w^-} (\lambda - \Omega_j(U_j(w))) dG_j(w)}{\lambda(1 - G_j(w))} \text{ 는 동일}$$

한 성별 내의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 개인 간에 한계세율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으로 남성과 기혼여성 간의 분포가 다르지 않다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식으로부터 임금탄력성이 높은 그룹의 최적소득세율은 감소하고 소득분포의 해저드가 크면  $H_j(w)$ 는 작으므로 최적소득세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기혼여성의 소득은 낮은 소득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해저드가 크므로 최적소득세율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생산성이 낮아 남성보다 낮은 소득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 2. 우리나라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

최적조세이론에 따른 우리나라 남성과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의 차이를 도출하기 위해 위에 소개한 이론적 모형 중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혼남성의 교차탄력성은 매우 낮을 것이므로 교차탄력성이 0라고 가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의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기혼여성의 소득분포가 남성보다 낮으므로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놓고 구한 소득세율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한 경우에 비해 여성에게 다소 높은 최적소득세율을 도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탄력성을 고려하거나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한 모형과 비교할 때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최적소득세율의 차이를 산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사회후생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Omega &= \int_{w_-}^w \Omega_j(U_j(C_j(w), L_j(w)))d \\ G_j(w) &+ \int_{w_-}^w \Omega_m(U_m(C_m(w), L_m(w)))dG_m(w) \quad \text{s.t.} \\ T &= \int_{w_-}^w T_j(wL_j(w))dG_j(w) + \int_{w_-}^w T_m(wL_m(w))dG_m(w) \geq E \end{aligned}$$

분석의 간편함을 위해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효용함수를 가정하고 남성과 기혼여성의 세후소득에 대한 노동공급탄력성 추정하였다.

$$\begin{aligned} \max_{c_i, l_i} U(C_i, l_i) &= [\phi_i c_i^{-\rho} + l_i^{-\rho}]^{-1/\rho} \\ \text{s.t.} \quad c_i &= w_i^* h_i + v_i = [(1 - t_{w_i, h_i}) w_i] h_i + v_i \\ T &= h_i + l_i \end{aligned} \quad (6)$$

기혼여성의 경우, 김현숙·성명재(2007)을 변용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그룹에 대한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임금함수는 경력, 경력의 제곱, 학력, 학력의 제곱, 연령, 연령의 제곱, 대도시 거주 여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하였다<sup>8)</sup>.

한편, 남성의 경우 소비와 여가 간의 선호인  $\phi_i$ 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자녀 수로 국한한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자녀 수 외에 영유아의 존재 유무를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의 자료로는 2004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3>과 같다.

<표 3> 노동패널 기초통계

	전체 남성	기혼여성
노동시장참여 여부(참여=1)	0.720 (0.449)	0.442 (0.497)
연령	40.12 (11.66)	40.57 (11.66)
비근로소득(원)	1,601,412(2,861,550)	2,545,066 (2,850,239)
경력연수	5.60 (8.76)	2.112 (4.79)
고등학생 이하 자녀 수	0.80 (0.93)	1.69 (0.62)
만2세 이하 영아유무(유=1)	0.08 (0.27)	0.20 (0.399)
만3~5세 유아 유무(유=1)	0.11 (0.31)	0.26 (0.437)
교육수준	12.48 (3.44)	11.66 (3.76)
부모동거 여부 (동거=1)	0.09 (0.29)	0.13 (0.34)
대도시 거주 여부(대도시=1)	0.54 (0.50)	0.50 (0.50)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67 (0.47)	0.06 (0.24)
연간 근로시간*	1,994.1 (1,448.2)	1,101.3 (1,393.9)
추정된 시간당 임금(원)	7,285.9 (3,374.6)	5,791.7 (10,782.1)
총 표본 수	5,145	2,120

주: \*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표본의 근로시간은 0이라고 설정하고 계산한 것이며 노동시장에 참여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연 2,000시간을 크게 넘는다.

교차탄력성을 고려하거나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한 모형과 비교할 때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최적소득세율의 차이를 산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단, 김현숙·성명재(2007)에서 이용한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의 추정치는 기혼여성 실효임금을 구할 때 차감하지 않고 소득세만을 차감한 실효임금을 설정하여 남성과 기혼여성 간의 임금탄력성을 대칭적으로 산출하였다.



비보상 임금탄력성이 남성은 0.0095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0.0629로 남성보다는 다소 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산출되었다.

노동공급함수 추정식은 남성의 경우에는

$$\ln\left(\frac{l_i}{c_i}\right) = \beta_0 + \beta_1 age_i + \beta_2 \#ofchild + \beta_3 \ln w_i^* + \beta_4 \lambda_p + u_i$$

으로 설정하였으며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영유아 존재유무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ln\left(\frac{l_i}{c_i}\right) = \beta_0 + \beta_1 age_i + \beta_2 \#ofchild_i + \beta_3 (dummy\ of\ age0 - 2)_i$$

$$+ \beta_4 (dummy\ of\ age3 - 5)_i + \beta_5 \ln w_i^* + \beta_6 \lambda_p + u_i$$

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ln w_i^*$ 는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제한 후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세후 시간당 임금으로  $\ln\left(\frac{l}{c}\right)$ 의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므로 세후 시간당 임금 대신 도구변수로 경력과 학력변수를 사용한 도구변수법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9)</sup>

〈표 4〉 노동공급함수 ( $\ln\left(\frac{l}{c}\right)$ ) 추정

변수	남성	기혼여성
log(세후 시간당 소득) : IV(경력, 학력)	-1.037**(-16.41)	-1.145**(-19.47)
고3 이하 자녀 수	-0.051**(-3.45)	-0.200**(-3.57)
만 0~2세 영아 유무	-	1.008**(7.15)
만 3~5세 유아 유무	-	0.578**(12.08)
연령	-0.008**(-7.93)	0.0002(0.08)
$\lambda_p$	-0.451**(-10.34)	-1.193**(-16.48)
상수	0.398 (0.68)	1.631**(3.01)

주: 1) \*\*는 1%,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남성의 경우 영유아 존재 유무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으며 참고로 영유아의 존재에 대한 더미변수의 계수는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노동공급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어린 영유아의 존재가 유의하게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기혼여성의 경우와 대조됨.
- $\lambda_p$ 는 노동시장에 참여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할 때 나타나는 편의를 교정하는 항으로 Mill's ratio의 역수값임.

추정된 노동공급함수로부터 남성과 기혼여성의 보상 및 비보상 임금탄력성을 계산한 결과는 〈표 5〉에 정리하였다.

9) 세후시간당 임금은 총임금을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노동 시간  $l$ 에 외생적이지 않아 도구변수법을 이용하였다. 경력과 학력은 임금과는 상관관계가 높으나 근로 시간과는 독립적이므로 임금에 대한 도구변수로 흔히 이용되는 변수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현숙·성명재(2007) 참조.

〈표 5〉 우리나라 남녀의 임금탄력성 추정

모형	임금 탄력성	남성	기혼여성
표본선택 무시	비보상	-0.122	0.0123
	보상	0.250	0.368
표본선택 고려	비보상	0.0095	0.0629
	보상	0.333	0.407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남성의 임금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여성의 임금탄력성은 국가마다, 분석기법마다 상이하다.

추정결과 표본선택을 교정한  $\lambda_p$  항의 계수가 유의하므로 표본선택을 고려한 모형의 임금탄력성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비보상 임금탄력성이 남성은 0.0095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0.0629로 남성보다는 다소 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산출되었다.

### 3. 최적소득세율 체계

#### 가. 다른 나라 남녀의 임금탄력성 차이<sup>10)</sup> 비교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남성의 임금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Blomquist(1993)는 스웨덴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남성의 비보상 임금탄력성을 구한 결과 0.08을 도출하였고, Blundell and Walker(1986)은 영국의 1980년 FES를 이용하여 남성의 비보상 임금탄력성의 값을 0.024로 추정하였다. Hausman(1981)은 미국 PSID 1975년을 이용하여 남성 비보상 임금탄력성 추정치 {0. 0.03}의 값을 지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성의 임금탄력성은 국가마다, 분석기법마다 상이한데 Arellano and Meghir(1992)는 영국의 1983 FES를 이용하여 여성의 비보상 임금탄력성은 {0.29 0.71}내에 있다고 추정하였고, Blomquist and Hansson-Brusewitz(1990)은 분석기법에 따라 0.77~0.79의 값을 나타낸다고 발표하였다. Blundell et al.(1988)은 영국의 1980 FES를 이용하여 0.09를 도출하였으며, Hausman(1981)은 1975 PSID를 이용하여 분석기법에 따라 0.906와 0.995를 도출하였다.

10) Blundell R, and T. MaCurdy(1999)의 요약결과 참조



미국의 경우, 여성의  
소득세율이 남성에 비해

21% 낮은 것이

최적의 격차이고 이탈리아는  
그 차이가 더 커서 34%이다.

반면 남녀의 소득세율

차이가 크지 않은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9%의 차이가 적정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최적소득세율

Alesina & Ichino(2007)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과 기혼여성의 최적소득세율은

$$\frac{\sigma_m}{\sigma_f} < \frac{t_f}{t_m} < \frac{\sigma_m + 1}{\sigma_f + 1}$$

의 관계를 갖는다<sup>11)</sup>. Alesina & Ichino(2007)는

미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3국의 탄력성을 비교하여 3국 각각의 남녀 최적소득세율을 도출하였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Balu and Kahn(2004)에 기초하여 추정치를 도출하였고, 이탈리아와 노르웨이의 경우, Aaberge et al.(2002, 2006)을 이용하였다.

〈표 6〉 미국, 노르웨이, 이탈리아의 최적 남녀 소득세율 비교

	미국 (1999~2001)	노르웨이 (1994)	이탈리아 (1993)
교차탄력성 0 가정			
여성의 임금탄력성 ( $\lambda_p$ )	0.40	0.52	0.66
남성의 임금탄력성 ( $\sigma_m$ )	0.10	0.39	0.12
최적 소득세율 비율 $\max(\frac{t_f}{t_m})$ , $\theta = 1$ 가정	0.79	0.91	0.67
세수중립적 최적 여성소득세율 ( $t_f$ )*	0.38	0.49	0.27
세수중립적 최적 남성 소득세율 ( $t_m$ )*	0.71	0.56	0.68
교차탄력성 0이 아니라고 가정			
여성의 교차탄력성 ( $\gamma_{fm}$ )	-0.19	-0.42	-0.49
남성의 임금탄력성 ( $\gamma_{mf}$ )	0.03	-0.23	-0.12
남녀의 노동시장참가율 비율 ( $\frac{l_f}{l_m}$ )**	0.84	0.92	0.64
세수중립적 최적 여성소득세율 ( $t_f$ )***	0.35	0.57	0.35
세수중립적 최적 남성 소득세율 ( $t_m$ )***	0.91	0.70	0.77

주: \*는 미국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theta$ 가 0.25,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theta$ 가 0.5라는 가정하에 도출.

\*\*는 Alesian, Glaser and Sacerdote(2005) 값 이용.

\*\*\*는  $\theta^*$ 가 미국과 이탈리아는 0.25, 노르웨이는  $\theta^*$ 가 0.5라는 가정하에 도출.

자료 : Alesino & Ichino(2007)에서 인용.

11) 이 관계는  $t_f = \frac{\theta}{\sigma_f + \theta} < t_m < \frac{\theta}{\sigma_m + \theta} = t_m$  과  $0 \leq \theta \leq 1$  으로 부터 도출된다.

미국의 경우, 여성의 소득세율이 남성에 비해 21% 낮은 것이 최적의 격차이고 이탈리아는 그 차이가 더 커서 34%이다. 반면 남녀의 소득세율 차이가 크지 않은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9%의 차이가 적정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은 미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theta=0.25$  ( $\lambda \approx 0.3$ )을 가정하면 세수 중립적이면서 최적인 여성소득세율은 각각 38%와 27%이고 남성의 소득세율은 71%와 68%로 남성의 경우, 실제 소득세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 부담이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theta=0.5$ (정부의 예산제약조건이 더 제약적)를 가정한 결과 최적 여성소득세율은 49%이고 남성의 소득세율은 56%로 나타났다.

교차탄력성은 여성의 경우가 더 크며 교차탄력성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한 경우에는 교차탄력성이 대체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므로 최적소득세율이 교차탄력성이 0인 경우보다 증가하고 있다. 3국의 소득분포의 해저드는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높아 미국의 경우에는 남성 0.11, 여성 0.16, 노르웨이는 0.07, 0.12, 이탈리아는 0.17, 0.25를 나타내고 있어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점을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패널의 비보상 임금탄력성 추정치인 0.0095(남성)과 0.0629(기혼여성)를 이용하여 최적 소득세율을 구성하면 <표 7>과 같다.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적어도 기혼여성의 평균소득세율이 남성보다 약 5% 정도 낮은 것이 소득세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따르면 기혼여성에게는 평균적으로 5% 정도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표 7> 우리나라 최적 남녀 소득세율의 차이

교차탄력성 0이라고 가정	노동패널(2004)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 ( $\sigma_f$ )	0.0629
남성의 임금탄력성 ( $\sigma_m$ )	0.0095
최적 소득세율 비율 $\max(\frac{t_f}{t_m})$ , $\theta = 1$ 가정	0.95

물론 정확한 소득세율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제약식의 라그랑지 승수로부터 도출되는  $\theta$ 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며, 남녀의 교차탄력성을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출산에 기여하는  
 소득세 정책은  
 남성과 기혼여성 간의  
 차별화된 소득세율보다는  
 자녀세액공제제도 등을  
 기혼여성에게 한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계산하기 위해 가구의 노동의사결정 모형(household labor supply or bargaining model)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성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따른다면 기혼여성에게는 평균적으로 5% 정도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 4. 자녀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 도입 혹은 기혼여성에 대한 자녀관련 공제확대의 필요성

최적조세이론 관점에서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소득세율을 설정하는 것 외에 남성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기혼여성에게 제공하게 되면 여성에게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기혼여성에게 낮은 소득세율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이혼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에는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출산에 기여하는 소득세 정책은 남성과 기혼여성 간의 차별화된 소득세율보다는 자녀세액공제제도 등을 기혼여성에게 한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는 기혼여성에게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면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므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적조세이론의 관점에서 기혼여성과 남성 간의 소득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혜택을 기혼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제도의 형태나 자녀관련 소득공제 확대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사회후생 극대화와 출산율의 제고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혼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녀의 임금탄력성의 격차가 감소할 수도 있어 장기적인 임금탄력성의 성별 차이는 없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녀의 임금탄력성 격차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는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임금 격차, 교육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소득세율의 적용도 다소 한시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IV. 요약 및 결론

조세체계 중 소득세는 양성 불평등 요소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으며 이는 비근로소득, 가족 간의 공동사업소득, 각종 조세혜택, 소득세율을 통해 나타난다. 소득세를 개별 과세할 경우에는 비근로소득, 가족 간 공동사업소득, 각종 공제제도 등을 통해 명시적·암묵적 불평등 요소가 나타나며, 비근로소득이나 공동사업소득, 공제제도 등에 불평등 요소가 없다고 해도 임금탄력성이 다른 두 집단에게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후생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은 소득세 내의 명시적인 양성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부합산과세를 유지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2차 소득원인(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왜곡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개별신고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각종 조세혜택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각자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부녀자공제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어 양성 차별적인 요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는 소득세 개별신고의 경우에도 최적조세이론 관점에서 남녀의 임금탄력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세율의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크므로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을 추정해 본 결과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적어도 약 5% 낮도록 조정하는 것이 소득세로 인한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녀에게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기혼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가나 자녀관련 공제를 확대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사중손실의 감소와 출산율의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외부성이 없고, 모든 경제주체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의 효용은 가구의 노동의사결정에 적절히 고려되는 등 완전

선언적인 의미의  
양성평등의 추구를  
넘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소득세체계  
구축 차원에서 기혼여성에게  
낮은 실효소득세 부담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하다.



한 시장이 존재하면 최적조세이론은 현실에서 구현 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시장실패가 존재하고 정책적 이슈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최적조세이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혼여성에게 낮은 실효 소득세부담을 제공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공급 활성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언적인 의미의 양성평등의 추구를 넘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소득세체계 구축 차원에서 기혼여성에게 낮은 실효소득세 부담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하다.<sup>12)</sup> KIPF

### <참고문헌>

김완석,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5.  
 김현숙·성명재,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경제』 제12권 제1호, 2007.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2004.

Aarberge R., Colombino U., and T. Wennemo, “Heterogeneity in the Elasticity of Labor Supply in Italy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CHiLD Working paper No. 20, 2002.

Aarberge R. and Colombino U., “Designing Optimal Taxes with a Microeconometri Model of Household Labour Supply,” IZA Discussion paper 2468, 2006.

Alesina, Alberto & Andrea Ichino, “Gender Based Taxation,” Working paper, University of Bologna, 2007.

Arellano, M. and C. Meghir, “Female labour supply and on-the-job search: an empirical model estimated using complementary data set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9, 1992, pp. 537~559.

Blau F. and L. Kahn, “Changes in the Labor Supply Behavior of Married Women : 1980~2000,” mimeo, 2004.

Blomquist, N.S., “The effect of income taxation on the labour supply of

12) 본 논의는 (기혼)여성과 남성의 소득세 부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연령별 임금탄력성 차이와 이에 기초한 최적세율(age-based income tax), 소득층간 임금 탄력성의 차이 등 최적소득세율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중 하나를 다룬 것으로 종합적 의미의 최적소득세율에 대한 연구는 아님을 밝혀둔다.

- married men in Swede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2, 1983, pp. 169~197.
- Blomquist, S and U, Hansson-Brusewitz, “The effect of taxes on male and female labour supply in Swed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5, 1990, pp. 317~357.
- Blundell, R. and I. Walker, “A life cycle consistent empirical model of laboursupply using cross section data,” *Review of Economic Studies* 53, 1986, pp. 539~558.
- Blundell, R., C. Meghir, E. Symons and I. Wlker, “Labour supply specification and the evaluation of tax reform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6, 1988, pp. 23~52.
- Blundell R. and T. Macurdy, “Labor Supply : A Review of Alternative Approaches” in O. Ashenfelter and D. Car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North Holland Amstredam, 1999.
- Diamond, P.A., and Mirrlees, J.A.,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 : Production 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61,1, 1971a.
- Diamond, P.A., and Mirrlees, J.A.,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I : Tax Rule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61,3, 1971b.
- Hausman, J., “Labor supply.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in: H. Aaron and J. Pechman, eds., *Tax and the economy*,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1.
- McCaffery, Edward, “Taxation and the Family: A Fresh Look at Behavioral Gender Biases in the Code,” 40 *UCLA Law Review* 983, 1993.
- Stotsky, Janet G., “Gender Bias in Tax System,” IMF Working Paper, IMF, 1996.
- Stotsky, Janet G., “How Tax Systems Treat Men and Women Differently,” *Finance & Development*, March, 1997.



# 정책토론투리포트

##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 본 원고는 2007년 6월 1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 정책토론회 개요

- 일 시 2007. 6. 19(화) 14:30~16:30
  -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4:30~14:40 인사말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40~16:10 주제발표 및 토론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 ▶ 사회자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 발표자 안중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 ▶ 토론자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 김선영 안진회계법인 변호사
      -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이중현 유럽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16:10~16: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6:30 폐회
- (가나다 순)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요약)

#### 1. 도입배경

-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현행 과세시스템은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유사한 제도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있던 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규정이 단순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 2006년 상법개정안에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인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됨
- 정부는 2007년 3월부터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TF(Task Force)를 만들어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본 자료는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 2.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 (적용대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조합, 법인세 과세대상 중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새로 도입될 예정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적용함
  - 납세자가 현행 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됨
- (이중과세 배제) 파트너십 소득은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파트너에게 배분된 이후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함
- (손익배분비율) 파트너십 소득을 개별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소득배분비율은 파트너십 약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손익배분비율 조작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세회피 방지장치를 도입함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현물을 출자할 때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함
  -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고 파트너십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인식·과세하거나(제안 과세이연)
  -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되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통해 초기 세부담을 완화함(제2안 분할과세)
-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 거래) 파트너가 파트너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할 때 제3자간 거래로 간주하여 소득 및 비용의 발생을 인정함

- (도입시기) 200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입법하되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함
  -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 3. 도입방안의 평가 및 예상효과

- 세부담의 관점에서 파트너십은 개인기업에 비해 유리하며 법인기업에 비해서도 유리한 점이 많음
  - 개인기업에서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의 경우에도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하거나 사내 유보가 많지 않은 기업들은 파트너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한계세부담 인화로 인해 투자가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됨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소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부담 경감 효과를 부여함
  - 지식과 자본을 결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촉진함
    -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지식과 자본의 결합에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
    - 외국기술과 국내자본, 국내기술과 외국자본의 다양한 결합을 촉진함
-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 손익 배분에 있어 사적 계약을 존중하므로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음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방지장치를 도입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 납세자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과세당국의 징세행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음
  - 기업들은 개인이나 법인과 비교하여 세부담이 줄어든 때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선택할 것이므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시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중간적인 형태의 새로운 제도이므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 도입 초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초기 세부담 완화,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의 인정, 파트너와 파트너십의 제3자간 거래 인정 등과 같은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장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 제도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점진적으로 파트너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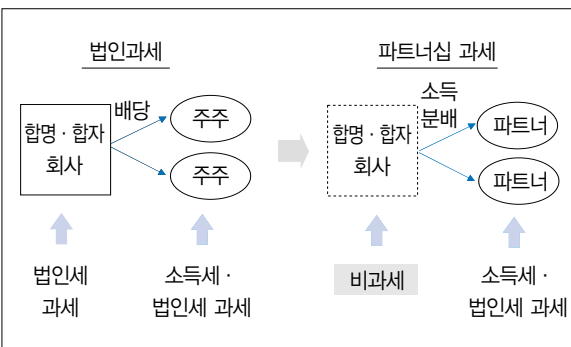
**1. 파트너십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 파트너십(Partnership)

-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 현행 조합, 합명·합자회사가 파트너십에 해당
  - \*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도 파트너십에 포함됨

□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 파트너십의 인적회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과세하는 제도
  - \* 파트너십을 단지 도관(Pass-through)으로 보는 제도



**2.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업형태에 대한 조세제도 마련 필요

- 최근 전통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 이외에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와 같이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조세제도가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에서도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파트너십 형태의 공동기업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임
- 따라서, 세법에서도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 현재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인적회사 과세특례가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고,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관한 규정도 미비되어 예규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 현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에 대해 배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인적회사 과세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 대상업종이 일부 지식기반산업으로 제한적이고,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규정이 미비된 상황임

- 기업과세의 선진화 차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 외국의 도입사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 3.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시 기대효과?

-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적회사의 창업 및 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식기반 벤처산업분야에서는 대규모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 특허권 등 기술을 가진 노무출자자와 벤처투자자본가의 자본이 사적차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이 적함
- 인적회사 형태의 동업기업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제도 마련
  - 현재는 조합 형태의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 합명회사·합자회사 형태의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동업기업간 과세방식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인적회사 형태의 동업기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제도가 마련되어 과세형평 및 기업형태 선택의 다양성 제고가 가능함
- 국제적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투자할 기회를 확대하여 투자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손익배분의 유연성이 부여되고,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어 세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익숙한 외국 자본가들에게 국내에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4.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시 기존기업과의 세부담 비교

	기존기업		파트너십
	개인기업	법인기업	
① 이중과세 여부	-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법인 단계 및 주주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	-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가능함  *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 단계에서만 과세
② 현물출자시 과세문제	-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문제가 없음	- 현물출자시점에서 즉시 과세	- 현물출자시 초기 세부담 완화  * 과세이연 또는 분할과세 허용
③ 사내유보를 통한 배당소득 과세이연 여부	- 사내유보를 통해 배당소득 과세이연 불가	- 사내유보를 통해 배당소득 과세이연 가능	- 사내유보를 통해 배당소득 과세이연 불가능
④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 가능 여부	- 손익배분 불가능 (단독기업)	-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이 불가능하고, 지분에 비례한 배분만 가능	- 지분 또는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 가능  * 세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음
⑤ 법인(파트너십)과 주주(파트너)간 제3자 거래 인정을 통한 세부담 경감 여부	- 제3자 거래의 인정을 통한 세부담 경감 불가능	- 주주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및 법인의 인건비 비용공제 가능	- 파트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및 파트너십의 인건비 비용공제 가능

\* 음영표시 :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표시

## 5. 파트너십 과세제도 관련 조세회피방지 대책은?

-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① 현물출자시 초기 세부담 완화 ② 사적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③ 파트너십과 파트너간 제3자 거래의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이러한 혜택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세회피방지규정 필요

### ■ 현물출자시 초기 세부담 완화 관련 조세회피방지 규정

- ①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자산을 출자한 이후 2년 이내에 현금 등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시점에서 파트너가 파트너십에게 자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
- ② 특정 파트너가 자산을 출자한 이후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파트너가 분배받고, 그 다른 파트너가 출자한 다른 자산을 그 특정 파트너가 분배받는 경우 분배시점에 두 파트너가 자산을 교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함
- ③ 금융자산(주식·채권 등)이 80% 이상인 파트너십의 경우 금융자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함
- ④ 자산을 출자한 후 3년 동안 출자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또는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함

### ■ 사적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관련 조세회피방지 규정

- ①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손익배분연도의 세부담이 낮아진 경우 손실배분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배분비율을 적용
- ②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비율 적용하여 배분  
- 경제적 실질판단 조건: ① 자본계정 유지·관리

- ② 청산시 자본계정에 나타난 금액에 따라 잔여 자산 분배
- ③ 자본계정 결손시 청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손액 보전

### ■ 파트너십과 파트너간 제3자 거래를 인정하는 것 관련 조세회피방지규정

-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

## 6. 인적회사란?

### ① 인적회사의 의의

- 회사의 대내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고, 대외관계에서 사원이라는 회사의 인적요소에 중점을 두는 회사

\* 물적회사 : 대내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대외관계에서 회사재산이라는 물적요소에 중점을 두는 회사

\* 일반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인적회사로 구분되고, 유한회사·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 구분

### ② 인적회사의 주요 특성

#### <대내적 측면>

- ① 사원의 수가 적음
- ② 사원이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며, 의사결정에 전원일치가 필요함
- ③ 사원지위의 양도가 곤란한 반면, 사원의 퇴사제도가 인정됨
- ④ 사원이 1인이 되면 해산사유가 됨
- ⑤ 청산방법으로서 임의청산이 인정됨

#### <대외적 측면>

- ① 사원과 회사 채권자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함



- ② 회사재산의 독립성이 약함
- ③ 회사신용의 기초는 주로 사원의 개성에 있음

〈참고〉 인적회사 및 물적회사간 비교

구분	인적회사 (합명·합자회사)	물적회사 (주식·유한회사)
① 사원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명회사)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li> <li>•(합자회사) 1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회사)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인원 수 제한 없음)</li> <li>•(유한회사) 1인 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li> </ul>
② 사원의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한책임사원) 재산, 노무, 신용출자</li> <li>•(유한책임사원) 재산 출자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출자만 가능</li> </ul>
③ 사원의 출자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의 규정이나 회사의 청구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설립전 출자 완료 필요</li> </ul>
④ 사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한책임사원) 직접·무한·연대책임</li> <li>•(유한책임사원) 직접·유한·연대책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회사) 간접·유한책임</li> <li>•(유한회사) 간접·유한책임(추가 출자의 무 부담 : 자본미달액 보전책임)</li> </ul>
⑤ 회사의 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원이 직접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를 맡는 자기중심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는 사원 이외의 자가 맡는 제3자중심기관</li> </ul>
⑥ 최저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회사) 5천만원</li> <li>•(유한회사) 1천만원</li> </ul>
⑦ 지분의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한책임사원)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li> <li>•(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회사) 자유로이 양도 가능</li> <li>•(유한회사) 사원총회 특별결의 필요</li> </ul>
⑧ 입사와 퇴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인정</li> </ul>
⑨ 회사의 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청산과 임의청산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청산만 인정</li> </ul>

7.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란?

- \*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써 공동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업형태 중 하나임
- \* 상법개정(안)은 금년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1 합자조합 (Limited Partnership)

• 의의

-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무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이 상호출자를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설립되는 조합

\* 기존의 민법상 조합은 무한책임조합원만으로 구성됨

• 주요 특징

- ① 합자회사와의 비교시, 법인격이 없는 조합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합자회사와 유사하므로 “합자조합”이라고 부름
- ② 기존의 민법상 조합과 달리, 법정조합계약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의 등기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소송의 주체 및 자산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현재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는 조합인 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상법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의의

- 대외적으로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물적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합명회사 규정을 폭넓게 준용하여 인적회사적 요소를 가미한 회사

\* 현행 상법상 4가지 유형의 회사만 존재하나(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상법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 추가 시 5가지 유형이 됨

#### • 주요 특징

##### ① 대외적 관계에서 물적회사적 성격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금전출자만 가능 (신용, 노무출자는 불가능)
- 회사설립전 출자를 완료해야 함
- 업무집행자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구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규정 준용

##### ② 대내적 관계에서 인적회사적 성격

- 이사회와 같은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이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은 정관에 따라 사원·비사원 모두 가능
- 지분양도는 사원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정관에 따라 달리 규정 가능
- 이익배분은 지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나, 정관에 따라 달리 규정 가능

\* 주식회사의 특징인 유한책임의 인정과 합명회사의 특징인 사적자치의 보장을 결합시킨 형태의 회사로서, 미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해 주고 있음

#### ■ 주요 내용

##### • 적용대상

- 개인과 개인간의 공동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 소득금액계산 및 배분

- (원칙)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후, 손익배분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
- (예외)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으로서 손익배분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최대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을 지분비율만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 ■ 문제점

•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예규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조합)에 대한 과세규정이 미비됨

## 8.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란?

#### ■ 의의

- 개인간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장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



**<참고>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①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일부는 출자만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각자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손익을 분배하는 경우</li> <li>• 대상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li> <li>* 적용대상 :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li> </ul>	소득법 §43①
② 사업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li> <li>*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분배자료제출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li> </ul>	소득영 §150③
③ 납세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단, 합산과세시는 손익분배비율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부담)</li> </ul>	소득법 §2①
④ 소득금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li> <li>* “약정 손익분배비율 → 지분비율” 순차적용</li> <li>• 공동사업자 합산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등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최대비율)의 소득으로 합산</li> </ul> </li> </ul>	소득법 §43①②  소득법 §43③ 소득영 §100
⑤ 출자공동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li> <li>-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당연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li> <li>* 지급시기 의제 : 배당과세기간 종료일</li> </ul>	소득법 §17① 6의3호 소득법§62 소득영 §46.3의 2호
⑥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는 공동사업자별 지분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li> <li>*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등 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등</li> </ul>	소득법 §87②

⑦ 현물출자	• 공동사업장에 대한 재산의 현물 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	
⑧ 지분의 양도	• 조합지분이 아닌 조합자산 양도로 간주	
⑨ 지분의 탈퇴	• 당초 출자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9.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란?**

■ 제도연혁

- '04.12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 (소득법§104의11)
- '07.4 대상업종에 전문디자인업 및 광고업 추가

■ 적용대상

- 합명 · 합자회사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전문디자인업 및 광고업

■ 과세방법

- 법인단계 : 배당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주단계 : 배당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하고, 당연 종합과세
  - \*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교과세 적용시에도 비금융소득으로 취급
  - \* 배당세액공제(Gross-up제도) 적용배제

■ 문제점

- 대상업종이 일부 지식기반산업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파트너십 과세제도 토론 요약****제도 도입시 법체계 문제 등 검토해야**

김선영 안전회계법인 변호사

이미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법체계의 문제이다.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삽입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다. 이 때 법인이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선택하면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여부이다. 현행법상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시 과세이연으로 변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들 두 제도를 일치시키는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손익배분비율 결정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새로운 세제이므로 처음에는 과세관청이나 사업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시작하여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자 모두 제도에 적응을 마친 뒤 손익배분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면 파트너십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주체가 많이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지분양수도로 인해 발생하는 인사이드 베이

시스와 아웃사이드 베이스스 간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파트너가 자기 지분을 팔고 나가면 특별배분이나 특별조정을 통해 이 격차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새로 참여하는 파트너가 과소 또는 과잉 과세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자산을 자기 지분만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베이스스 변동에 관한 방대한 기록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파트너가 나가면 파트너십과의 계약관계가 끊어지므로 파트너십의 과세연도를 종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파트너는 통상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조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파트너십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면 technical termination이라고 하여 파트너십의 사업은 그대로 영위하되 파트너의 계약은 종료되는 자연적 현상이 일어난다. 통제권을 의미하는 50% 이상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경우 당연히 종전 계약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으므로 파트너십은 존속된 상태에서 파트너 계약만 종결된 셈이다. 이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인수, 합병 등 타의에 의해 파트너가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과세 여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분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자산의 분배가 일어나는 경우를 청산과 비청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산이 꼭 파트너십의 청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종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산되지 않으면서 종료된

경우 나가는 파트너에 대해 어떻게 정산해 줄 것인지 그리고 남아 있는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자산에 대한 인사이드 베이스와 아웃사이드 베이스가 달라지는 경우 특별 조정을 허용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문제 등 고려 필요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근자에 들어 경제활동의 주력이 자본의 출자를 바탕으로 하는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등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추세인 점에 비추어 그러한 지식기반산업에 이용되는 사업체 형태와 관련된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에 있어서 지식과 자본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은 국내투자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친숙한 제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국기술과 국내자본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시안을 보면 복잡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단순화하고 개량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처음부터 무리한 규제 위주의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파트너십의 이용 자체를 위축시키기보다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체의 이용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에서 있다고 생각된다.

본인은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문제이다. TF에서는 출자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안(1안)과 출자자산의 시가로 승계하여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방안(2안)을 제시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1안을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파트너십을 도관으로 보아 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십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1안은 파트너십 설립 단계에서의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파트너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부분으로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현물출자를 과세시점으로 보는 것과 대비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2안은 출자자산의 평가 문제 등 행정적인 집행비용과 납세자의 순응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3년의 과세유예만으로는 기존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현물출자 과세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다.

1안을 채택함에 따른 조세회피 문제는 출자 후 2년 내에 현금 등의 자산을 분배받거나 출자 후 5년 내에 출자자산을 다른 파트너의 출자자산과 교환하여 분배받는 경우, 그리고 금융자산이 80% 이상인 파트너십에 대한 금융자산 출자 및 출자 후 3년간 출자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납세자에게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네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배제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명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여 납세자를 구제해준 사례도 있다. 양도세추징규정, 조특법상 감면추징규정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추가로 삽입하여 납세자를 배려하는 것을 고려해

야 한다.

둘째, 파트너십의 손익배분비율 문제이다. 도입 시안을 보면 원칙적으로 사적자치를 존중하여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을 인정하되 순액법에 따라 순손익에 대한 단일 배분비율만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출자자산이 자본과 노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같이 특정 비용항목을 직접 특정의 파트너에게 분배하는 총액법을 허용한 후 복잡한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조세회피를 막고자 하는 대신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유사하게 파트너십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각자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순액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세제의 복잡성을 피하고 집행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초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순액법을 채택한 이상 이익과 손실의 배분비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총액법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는 상당 부분 방지가 가능하므로 노무와 자본의 공동 출자에만 국한하여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적자치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그 허용범위를 넓힐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 범위 명확하게 해야

**안경봉** 국민대 교수

안중석 박사의 발표를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새로 상법 개정안에 도입되는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의 측면에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된 쟁점 중 하나가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어디까지 적용할까 하는 것이다. TF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크게 법인과 조합으로 나뉘는데 전자 중에서는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후자 중에서는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중석 박사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유한책임사원만 있는 경우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무한책임사원만 있는 경우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유한회사 역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용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체를 보고 실령 법인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안중석 박사의 전제가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 지역에 국한하여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조사해보니 그리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주류도매업, 수산거래업이 많고 무역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 일부가 유한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상법상 반드시 이사회 감사와 같은 기관을 두어야 하는데 비해 후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후자는 업무집행사원을 두고 사적자치에 의해 업무집행 형태를 정할 수 있으므로 크게 보면 양자 간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하면서 유한회사를 배제할 경우 기업 형태의 선택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해외지사, 외국투자법인 등 다국적기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세금 계산시 해외지사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본사와 합산하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한 이유로 들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법상 유한회사를 규정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리한 형태라고 판단하여 유한회사를 선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적용을 배제한다면 차별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도 유한회사 형태로 많이 설립되는데 안중석 박사는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의 배당금 손금산입제도를 활용하고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선택하지 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투자활성화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방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나 정책적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최근 이목이 집중된 금융 허브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실체에 따라 세제를 적용한다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용 대상을 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하지 말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선영 변호사가 지적한 것 중 상당 부분은 TF에서 집중 논의되었으며 안중석 박사의 발표에서 생략

되었을 뿐이다. 특히 아웃사이드 베이스스와 인사이드 베이스스의 경우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에서도 법문의 용어가 아니라 강학상 용어라고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 지분의 양도나 자산의 분배 모두 계산이 가능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 줄 수 있게 운영해야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조세회피와 세수감소 우려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창업, 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들을 동업사업자로 만들어서 좀 더 융합시대에 맞도록 자본, 기술, 물적자본 및 노동을 융합시켜 새로운 지식기반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여러 가지 우려, 특히 세수감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중에서 PF 등 사모펀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통해서 사모펀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자본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보고서에서는 용어 정의나 제도 설명만 되어 있는데, 현재 조합, 합명, 합자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법개정이 되면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들이 생겨나는데 대략적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수량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은 조세체계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이고, 따라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도입 자체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각 세부항목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의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의 사례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도 복잡해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데 왜 도입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공동사업자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완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발표자께서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간소화, 간결하게 도입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과세제도를 보완해서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일반 대상자들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별도로 있고, 더구나 선택적용을 하게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조합의 경우에는 공동사업과세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에 선택하게 하고 합명합자회사는 법인세법과 파트너십 과세제도 둘 중 선택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과도기적으로는 어느 하나를 선택적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정쩡한 과세체계를 만드는 것은 행정비용이 과다발생하고 납세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법개정에 맞춰서 2009년 1월 1일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굳이 상법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가? 합명, 합자회사에 먼저 적용할 수도 있고 앞당겨 적용할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 상법과 분리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내년에 세계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재경부가 실물경제의 활성화, 특히 지식기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과 기술과 노무를 잘 결합하겠다는 목적이라면 현물출자의 과세, 그 밖의 노무의 출자의 과세에 있어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안을 마련하되 기업취지에 맞게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물출자의 경우 과세이연이 분할과세보다 낫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심사제도, 계열사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환경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서 조세연구원의 제안이 기업을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본다면 다른 사항들의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일관성 있는 규제완화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효율적 시행 위해서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

**이중현** 유럽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

먼저, 현행 공동사업자과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왕에 별개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한다면 보다 정교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전제로 과세단계 및 절차상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도관설 내지 실제설 중에서 어느 부분은 도관설 어느 부분은 실제설을 적용하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측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서 적용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은 간소화해도 괜찮지만,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정교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면 상이한 분배비율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이익비율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어느 경우가 조세회피행위의 사례가 되는지 정교한 제도를 갖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현재 소득세법 공동사업자과세제도의 규정처럼 한계세율의 차이로만 접근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조세마찰을 야기한다. 이러한 부분은 과세권자 역시 정교한 과세가 되지 않아서 과도한 행정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 SEET와 같은 정교한 장치를 두고 많은 부분을 차용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된다.

그리고, 앞의 토론자들의 의견과 같이, 현물출자는 당연히 과세이연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호주나 다른 나라와 같이 유상양도로 간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상양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의 것처럼 3년 거치 3년 분할의 금산입하는 것은 개인의 경우 양도차손에 대한 결손금을 이월공제해주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데도 과세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과세이연이 바람직하다.

노무출자와 자본의 출자의 경우 상이한 손익분배비율을 주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노무출자의 경우에는 지분을 취득한 파트너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데, 그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파트너십 단계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어떤 배경인지 궁금하다. 자본과 노무로만 구분하기보다는 기술집약적 사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무형자산을 고려해서

제도안에 포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격인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파트너십 과세 허용문제는, '체크 더 박스룰'(check the box rule)에 의하여 미국세법에서는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로만 되어 있다. 주식회사 이외의 모든 회사는 특성상으로 진짜 회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한회사는 '체크 더 박스룰'에 따라 미국본사가 미국 세무신고를 할 때 신고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 단계에서 유한책임회사만 파트너십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겠다고 하고, 유한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 재무성이나 IRS에서도 유한회사는 파트너십이 아니구나 하면서 법인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투자하러 들어온 많은 기업들이 '체크 더 박스룰'에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유인들과 충돌이 생긴다. 특정한 집단이긴 하지만,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유한회사도 유한책임회사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파트너십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 파트너십이 활성화되면 여러 이해관계를 받는 파트너들이 생기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파트너십 단계에서 결산을 한 후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세무상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Information Return이 작성되어 각 파트너에 해당하는 세무사항이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파트너십 단계의 감사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파트너 단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고 이 단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며 각 파트너의 세무

조정은 이렇게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파트너십 Information Return을 통해서 제공된 세무사항을 고려하여 준비되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12월 말 결산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파트너십의 과세연도나 사업연도가 12월 말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두 세 차례에 걸친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또한, 파트너십 Information Return을 통해 제공받은 세무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수확보는 미리하고 신고는 연장을 하여 확정하는 미국식의 선납제도가 가미된 세무조정신고 연장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서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따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내 파트너들에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의 방법이 따로 되어 있는데, 고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방법 자체를 따로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외로 바로 직접 귀속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트너십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익금불산입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파트너십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각 파트너단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배당세액공제나 배당익금불산입제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TF의 논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 선진 과세체계 구축 위해 최대한 노력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먼저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 2004년도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였고, 공청회까지 개최했으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었다.

그 때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세법의 복잡성, 조세회피의 우려, 기존의 사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었는데, 이로 인해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보류하고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리고,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고, 오늘 발표된 바와 같이 큰 골격을 만들게 된 것은 그 동안 경제·사회환경이 많이 변했고 다양한 사업체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가 사업체의 사업활동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상법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선진 과세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를 2004년에 도입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 동안 운영했지만,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은 업체는 100개 미만뿐이었다. 이는 제도 자체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적용하기에 법적근거가 미약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물출자, 지분양도, 자산분배에 대한 규정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기업의 활동에 대해

서 많은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좀 전에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토론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기본원리를 따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현실과 세제, 세정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 그러한 방향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갖고 있는 손익배분의 유연성, 이중과세의 조정의 장점 등을 극대화하면서 조세회피 우려를 방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법의 복잡화를 어떻게 하든 최소화하고 간소화해서 납세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고민했다. 그리고, 앞서 유한회사를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대상 여부에 포함되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도 하였지만, 제도를 도입하면서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제도가 순산이 안 될 수 있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적절한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TF 논의에서 적어도 1년간은 조세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 사업자, 집행을 담당하는 과세당국의 세무공무원, 납세협력을 담당하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이 전체적인 제도를 쉽게 이해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 <객석토론>

### 우리 제도의 특수성과 법령상 문제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

개인적인 의문사항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하고 싶다. 첫째는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특유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령상 논의사항에 대한 것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해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의 제도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데 반해 미국은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는 기본 틀 안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2005년 회사법 제정시 유한회사를 폐지하고 주식회사 등을 주요 기업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의 제도를 들여와 유한책임회사는 종전의 법인과제로, 유한회사는 종전의 조합과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추진하면서 논의된 내용은 각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2004년 인적회사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삽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이나 일본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파트너십을 선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양자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와 납세자의 선택에 따

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될 파트너십 과세 제도의 선택 여부에 대해 어떤 법령에 규율할 것인지 의문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간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 노무출자를 통한 이익에 대한 청구권 문제

김정식 세무사

노무출자의 경우 노무출자 파트너가 취득한 자본 지분의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다른 파트너는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노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갖는다고 보고 그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노무출자 파트너가 취득한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어떤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노무출자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수년간에 걸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각 연도마다 구분해서 과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다른 파트너가 지분을 양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받은 것이 아니라 노무출자 파트너가 취득한 자본지분의 가치를 인정해서 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간주할 뿐이다. 따라서 직접 현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실무자로서 의문이 든다.

##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문제

이승훈 세무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현물출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중 1985년 이전 취득분은 1985년 1월 1일자로 취득가액을 정하고 있는데 발표자는 장부가액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과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다. 혹시 의제취득가액을 인정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비상용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해서 파트너십에서 업무용으로 대체하였을 때 60%나 되는 세율을 국가에서 그냥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 <발표자 답변>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훈 교수의 지적처럼 미국은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는 고전적 체계(classical system)를 갖고 있으므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유연성을 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반면 일본은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필요성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도 이중과세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조금 전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꼭 필요한지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물출자에

대한 규정을 넣고, 적용 대상에 상법상 임의조합을 추가하는 등 계속 변화되어 왔다. 또한 부분적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며 완전하게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하는 분야인 인적기반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조항으로 포함시키는 등 관련된 과세제도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중간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완성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본식으로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미국식으로 사적계약을 존중하고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세법체계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양분되어 있어 중간 단계인 파트너십을 이 중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소득세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며 새로 파트너십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도입한 후 항구적인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박훈 교수는 선택을 허용하다 보니 그로 인해 과세상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한 차이까지 조정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것이므로 그 차이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거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선택을 허용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세상 차이가 얼마나 클지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차이를 확인한 후 어느 한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통합하는 등의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김정식 세무사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노무출자를 통한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것 자체를 특별히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자본지분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노무출자로 인해 파트너십 전체의 자본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출자 파트너가 자본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파트너가 노무출자 파트너에게 자본을 양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 근거이다. 좀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승훈 세무사가 언급한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많은 논의를 했다. 그러나 과거의 입증도 못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으며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비상업용 자산을 출자해서 사업용으로 활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개인적으로는 파트너십에서 명백하게 사업용으로 활용된다면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안경봉 교수를 포함하여 다수의 패널들이 언급한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도 파트너십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나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실제로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기업에 대해 파트너십으로 과감하게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기업의 실제적인 역할이 어떠한가에 따라 파트너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여지가 없지만, 기업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

는 문제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한 입장에서 부연하면 본인이 발표한 것보다 TF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발표자료 부록에 TF 논의 결과라고 하여 최대한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자 했지만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슈도 상당수 존재한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전혀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추론해서 수정하 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다. TF에서 제시한 안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추후에라도 여러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면 앞으로 제도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일본의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7」<sup>1)</sup>

## -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시나리오 -

\* 본 원고는 2007년 6월 19일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경제개혁의 기본방침 2007」의 주요내용 요약입니다. <편집자 주>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jweon@kipi.re.kr)

일본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발표(2007. 6)한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7」은 아래의 세 가지 관점에서 아베 내각이 대처해야 할 과제의 설정과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1. 인구감소하에서의 성장 실현

-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성장을 실현하고, 생활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1인당 시간당 생산성) 증가율을 5년 동안 50% 증대

### 2.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 전후 고도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현재 제도 피로가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시킴

### 3. 새로운 국가 이미지(「아름다운 나라」)의 제시

- 자유·규율·지속가능성이라는 요소를 겸비한 경제사회를 위해 새로운 틀을 구축함

## 제1장 새로운 일본 만들기에 도전

### 1.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위해

현재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지나긴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인구감소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하에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일본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여러 제도들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인구감소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것으로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인당 생산성의 향상이다.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지닌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얻고, 보다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인구감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높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일본의 경제제도와 구조는 인구고령화와 급속한 글로벌화 그리고 세계적인 IT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1)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7」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본방침의 취지를 밝힌 제1장을 소개하고,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2장, 제3장 및 제5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못하고 있으며, 제도 피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궤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인구감소 하에서도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글로벌화를 오히려 성장력의 향상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경제구조로 변혁하며, 1인당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성장력 강화는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이다. 성장력 강화와 재정 건전화는 양 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일본경제의 당면한 과제이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방안 필요

이를 위해서 첫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경제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이 남아 있는 서비스산업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업·금융기관·지자체가 일체가 되어 지역의 힘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등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성장력의 기초가 되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개혁이나 성장분야로의 리스크 머니(risk money) 공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장력 가속프로그램」을 종합·정리하였으며, 향후 5년 안에 노동생산성 증대, 즉 1인당 시간당 생산성 증가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sup>2)</sup>.

### 일본경제의 개방화 촉진

둘째, 일본경제의 개방(open)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자원이

부족한 일본으로서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글로벌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외의 길은 없다. 글로벌화의 진전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력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 최대의 성장 센터인 아시아에 위치한 일본은 적극적인 개방(open)화로 큰 성장 가능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아시아를 시작으로 경제 연계를 가속화하고, 항공 등의 자유화와 접근(access)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뉴욕이나 런던에 견줄 수 있는 금융·자본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등 광범위한 경제시스템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행정·재정시스템의 혁신

셋째, 행정·재정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민간과는 달리 경쟁에서 비켜 있는 행정부문은 경제사회의 변화에 가장 뒤쳐진 분야이다.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기능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앞으로의 시대에 걸맞은 공무원상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도주제(道州制)를 염두에 둔 본격적인 지방분권 추진 등으로 그야말로 전후체제(regime)로부터 탈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건전화는 매우 긴급한 과제이다. 경제성장 없이 재정건전화가 없듯이, 재정재건이 없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실현되지 않는다. 재정건전화의 첫 걸음으로서 「기본방침 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1년도의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등 세입·세출 일체개혁 프로그램을 확실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세출 삭감은 험난한 길이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단행하지 않는 한 일본의 재정재건은 없다.

2) 과거 10년간(1996년도부터 2005년도) 노동생산성 증가율 평균은 1.6%이며, 이것이 2011년도에는 50% 증가하여 2.4% 정도로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제2장 1의 「II 서비스 기술혁신」 참조.

### 장래 생활의 안심 토대 마련

넷째, 장래 생활을 안심하게 전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류 전체의 과제인 지구환경 보전에 대해 이미 뛰어난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전 세계적인 틀 구축에 공헌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한 교육의 재생을 통한 교육 신시대의 구축과, 포괄적인 저출산대책 등 「아름다운 나라」의 인재 육성에 사회 전체가 나서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의 토대가 되는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안심할 수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고 동시에 서비스 질의 향상 및 효율화의 양립을 꾀하고, 가입자가 급부·부담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한 세계 최고의 치안수준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 2.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경제시스템 역시 「아름다운 나라」에 어울리는 일본의 문화, 전통이나 자연에 뿌리를 둔 일본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혁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나라」의 경제란, 자유와 규율과 지속가능성이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겸비한 것이다.

우선, 「자유로운 경제」란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젊음과 유연함을 지닌 경제이다. 이질적인 것이 결합하는 가운데 이노베이션이 탄생한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시스템이나, 사람과 자금의 원활한 이동을 저해하는 구조, 위험(risk)에 도전하는 것이 촉진되는 구조 등과 같은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을 지니기 위해서는 「규율 있는 경제」가 불가결하다. 규칙(rule)이 확립되고, 사후적인 통치(governance)가 충분히 기능하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속성 있는 경제」란, 자녀나 손자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경제이다. 우리는 차세대에 자신 있게 인계할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구환경은 물론 이거니와 국내의 재정이나 사회보장에서든 현재세대가 장래세대의 선택지를 좁히는 일이 없도록, 다른 세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세대 자립」의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세 요소를 겸비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기나긴 불황을 극복한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환경은 마련되었다. 전후의 일본경제를 뒷받침해 온 뛰어난 인재, 이노베이션의 힘, 지역의 활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새로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구축된다면 인간력·창조력·지역력은 다시 소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시나리오, 그리고 새로운 개혁에의 일보를 제시하는 것이 「기본방침 2007」이다.

## 제2장 성장력의 강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감소라는 국면하에서, 성장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 일본경제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이다<sup>3)</sup>.

이를 위해서는 ① 성장력 강화의 열쇠가 되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본의 높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함과 동시에 ② 보다 자유로운 사람(man), 자원(material), 돈

3) 경제의 장래전망에 대해서는 「일본경제의 진로와 전략」(2007년 1월 25일 각의 결정, 이하 「진로와 전략」으로 함에 제시되어 있다.



(money)의 흐름을 실현하여 글로벌한 시장 활력을 일본의 성장동력으로 사용하고 ③ 의욕과 능력을 살리는 환경 정비에 의해 인재의 활용이나 취업률의 향상을 촉진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한 지역사회가 잠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과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본격적인 성장력 강화책에 착수한다. 그 핵심이 되는 「성장력 가속프로그램」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3개의 정책 패키지를 실행한다. 첫 번째는 인재와 중소기업이라는 경제의 '기초력'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이다(성장력 제고 전략). 두 번째는 특히 비효율이 남아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있는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이다(서비스 혁신 전략). 세 번째는 앞으로 성장분야를 신장하여 일본의 '창조력'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이다(성장가능성 확대 전략). 이 프로그램에 일관된 기본적인 두 가지 관점은 ① 생산성 향상의 저해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 ② 소비자나 사용자(user)의 입장에서 공급에 대한 대담한 개혁을 행하는 것이다.

또한 2006년에 책정된 「경제성장전략대강」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산업경쟁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면서 시책을 강화 및 개정하여 추진한다. 첫째,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시장화를 위한 환경 정비나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인재육성·IT 등 민간투자의 가속을 꾀한다. 둘째, IT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에 의해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셋째, IT나 시니어 인재의 활력을 살리는 시책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 넷째, 경제 연계를 위한 노력의 가속화와 범아시아적(asia wide)인 사업환경의 정비를 꾀한다. 다섯째, 경제성장·에너지 안전보장·기후변동의 총체적 해결을 꾀

한다.

나아가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 「장기전략지침 '이노베이션25」를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일체가 되어 성장력 강화에 노력한다. 이상과 같은 성장력 강화의 노력에 의해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즉 한 사람이 1시간 일하여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의 신장률을 5년 간 5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상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때는,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을 명확히 밝혀, PDCA<sup>4)</sup> 사이클을 착실하게 실시한다.

### 1. 성장력 가속프로그램

#### 가. 성장력 제고 전략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재, 중소기업으로의 투자를 통해 성장력 제고를 꾀한다. 일하는 사람 전체의 소득·생활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양극화의 고정화를 방지하고, 인재의 노동시장에의 참가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 개혁 포인트

1. 인재능력 전략: 누구나 어디서든 직업능력 형성에 참가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직무카드(job card)」제를 도입한다.
2. 취로지원 전략: 공적부조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safety network)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한 취로에 의한 자립 및 생활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 양면에 걸친 지원을 실시한다.
3. 중소기업 제고 전략: 일하는 사람의 임금 상승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최

4) Plan(계획), Do(실행·실시), Check(점검·평가), Act(조치·개선)

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4. 본 전략은 노사정이 참가하는 중앙·지방의 「성장력 제고 전략 추진 원탁회의」에서 합의·형성을 피하면서, 원칙적으로 3년간(2007~2009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구체적 수단

#### (1) 인재능력 전략

- ① 「직업능력 형성 시스템」(통칭: 「직무카드(job card) 제도」)의 구축
- ② 대학·전문학교 등을 활용한 「실천형 교육시스템」의 구축
- ③ 민관 공동추진 조직의 설치

#### (2) 취로지원 전략

- ① 「'복지에서 고용으로' 추진 5개년 계획」의 책정
- ② 「공임(工賃)배증 5개년 계획」에 의한 복지적 취로의 제고

#### (3) 중소기업 제고 전략

- ① 「생산성 향상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합의 형성
- ②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추진에 의한 임금 인상
- ③ 최저임금제도의 충실

#### 나. 서비스 혁신 전략

생산성 수준이 낮은 서비스 산업의 개혁을 위해, IT의 본격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와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경제 전체의 활력 강화를 실시한다.

### 개혁 포인트

1. IT 혁신: IT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사회 횡단적인 IT 기반을 정비한다.
2. 지역경제의 성장력 향상 : 지역경제의 총체적 재생·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지역력 재생기구」의 창설을 위해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3. 규제 집중개혁 프로그램: 관제시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에 밀착한 산업의 창조나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및 질의 향상을 실현한다.
4. 서비스 이노베이션: 산·관·학 연계하에 「과학적·공학적 기법」에 의한 서비스 개발·도입과 서비스 산업의 품질 향상 및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 구체적 수단

#### (1) IT 혁신

- ① IT에 의한 생산성 향상
- ② IT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③ 세계 최첨단 전자정부의 실현
- ④ 재택근무(tele-work) 인구 배증 실현
- ⑤ 정보 안정성(security) 향상

#### (2) 지역경제의 성장력 향상

- ① 「지역력 재생기구」 창설
- ② 지역금융기관의 수익기반 강화
- ③ 제3섹터의 경영 재생

#### (3) 「규제 집중개혁 프로그램」의 책정 및 추진

- ① 의료분야
- ② 복지분야
- ③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 ④ 농업분야
- ⑤ 안전·안심분야
- ⑥ 무역·항만
- ⑦ 관의 사무·사업 재검토, 민간 개방

(4) 서비스 이노베이션

다. 성장가능성 확대 전략 - 이노베이션 등

미래에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시스템의 개혁과 기술혁신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환경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나 장애를 제거하고, 지적 창조를 지원하는 연구와 인재육성, 리스크 머니(risk money)의 윤택한 공급을 실현한다.

개혁 포인트

1. 정책 이노베이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개혁한다. 또한 성장분야를 저해하지 않는 정책으로 개혁한다.
2. 대학·대학원 개혁: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많은 뛰어난 인재의 육성,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인재의 육성,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세계 최고 레벨(top level)의 교육연구 거점 형성이라는 시점에서 철저한 개혁을 실시한다.  
효율화를 꾀하면서, 적절한 평가에 근거하여, 진정으로 실효성이 있는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기반적 경비의 확실한 조치, 기반적 경비와 경쟁적 자금의 적절한 조합, 평가에 근거한 보다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꾀한다.
3. 「저축에서 투자로」의 가속: 가계의 금융자산이 성장분

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4. 이노베이션의 가속: 「이노베이션 25」 등에 근거하여, 이노베이션 입국 실현을 목표로, 사회시스템 개혁과 기술혁신을 총체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 수단

(1) 정책 이노베이션

- ① 최첨단 분야로의 정책지원(SBIR<sup>5)</sup>제도의 혁신
- ②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을 위한 5개년 계획
- ③ 세계 최첨단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법제의 정비

(2) 대학·대학원 개혁

- ① 교육의 질 보증
- ② 국제화·다양화를 통한 대학 개혁
- ③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 교육의 개혁
- ④ 국·공·사립대학의 연계에 의한 지방대학 교육의 충실
- ⑤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국립대학의 더 한층 개혁
- ⑥ 경쟁적 임금의 확충과 효율적 배분
- ⑦ 대학에 의한 자조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개혁
- ⑧ 국립대학 법인 운영비 교부금 개혁

(3) 「저축에서 투자로」의 가속

- ① 확정거출연금의 개혁
- ② 벤처기업에 리스크 머니의 공급 촉진

(4) 이노베이션 가속

- ① 사회시스템의 개혁 전략(「이노베이션 25」)의 추진
- ②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이노베이션 25」)에 근거한

5)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정책의 추진

- ③ 지적재산 전략(「지적재산추진계획 2007」)의 추진
- ④ 산·관·학 연계의 추진

아시아 각국과의 자유화 교섭을 추진한다(아시아 우선). 하네다 공항의 국제화를 더욱 추진하며 대도시권 국제공항<sup>6)</sup>의 24시간화를 실현한다.

(5)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규칙(rule)의 정비

**구체적 수단**

**2. 글로벌화 개혁**

개방적인 나라 만들기를 위해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추진한다. 더불어, 글로벌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의 활력을 성장의 동력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연계의 강화, 금융·자본시장의 개혁, 항공자유화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한다.

(1) WTO, EPA<sup>7)</sup>의 대처 강화

- ① WTO 도하 라운드에의 적극적 대처
- ② EPA 교섭 대처 강화
- ③ 질 높은 EPA의 체결
- ④ 국경조치

**개혁 포인트**

1. WTO 교섭의 연내 타결을 위해 교섭 전체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공헌을 한다. EPA에 대해 체결국 수, 질 모두에 충실을 기한다.
2.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 거래소 등의 시장인프라(field) ②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player) ③ 시장 감시(심판)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혁 플랜을 세운다. 아울러,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도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3. 개방적인 경제사회 구축의 중핵적인 구상으로서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추진한다.
4. 특히, 미국류의 소위 항공개통(open sky)이 아닌,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항공자유화(asia open sky)를 신속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중국을 비롯한

(2) 가칭 「금융·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플랜」의 책정

- ①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 ② 은행과 증권에 관한 방화벽(fire wall) 규제의 재검토
- ③ 준사법기능 강화에 의한 시장감시체제의 정비
- ④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처

(3) 항공자유화(Asia Open Sky)

- ① 항공자유화의 추진
- ② 하네다 공항의 진전된 국제화· 대도시권 국제공항의 24시간화

(4) 아시아 게이트웨이를 지향한 노력

- ① 「무역 절차 개혁프로그램」의 착실한 실시
- ② 아시아 고도 인재 네트워크 허브를 지향한 유학생 정책의 재구축
- ③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조 개혁 특구(가칭)의 창설
- ④ 「일본문화산업전략」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

6) 수도권 공항(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및 추부 국제공항)

7)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⑤ 관광입국의 추진
- ⑥ 주요 국제회의 개최건수 50% 증대를 위한 대처 추진

(5) 종합적인 외교력

(6) 지구 차원의 과제에 대한 리더십 발휘

### 3. 노동시장 개혁

인구감소하에서 귀중한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일의 보람과 의욕을 지니고, 스스로 희망에 근거하여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선형이며 공정한 일하는 방식 실현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노력한다.

#### 개혁 포인트

1.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일·가정·지역생활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work life balance 실현을 위해 가칭 「Work Life Balance 헌장」(이하 「헌장」) 및 가칭「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일본을 바꾼다 행동지침」(이하 「행동지침」)을 책정한다.
2.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를 추진한다.

#### 구체적 수단

- (1) 「헌장」 및 「행동지침」의 책정
- (2)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검토

### 4. 지역활성화

「지역의 활력 없이 나라의 활력은 없다」는 모토 아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을 전개하고, 「매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작방기지(耕作放棄地)의 증대, 종사자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의 장기적 하락 등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여 경쟁력 있는 강한 농림수산업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고, 농·산·어촌 지역을 활성화한다.

#### 개혁 포인트

1. 「지역력 발굴 지원 전략」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서 시책의 체계화·전국으로의 확산, 「노력하는 지방 응원프로그램」, 횡단적 제도 기반의 강화·활용 등에 의해 지역의 노력을 지원한다.
2. 농림수산업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강한 농림수산업을 지향한다.

#### 구체적 수단

- (1) 종합적인 지역활성화 정책 (「지역력 발굴 지원 신전략」)의 전개
  - ① 시책의 체계화·전국으로의 확산
  - ② 「노력하는 지방 응원프로그램」의 전개
  - ③ 횡단적 제도 기반의 강화·활용 등
- (2) 농지개혁의 종합 정리
  - ① 5년 정도를 목표로 농업상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작방기지 0을 지향한다.
  - ② 경지 리스의 가속
  - ③ 법인 경영의 촉진

(3) 농업의 구조개혁 전체상과 공정표

(4) 임업, 수산업의 활성화

## 제3장 21세기형 행정·재정시스템 구축

전후체제에서 탈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재정시스템의 개혁이다. 관 주도, 중앙집권형 정부로부터의 탈각을 꾀하고, 인구감소나 글로벌화에 대응한 21세기형 행정·재정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첫째, 장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기본방침 2006」에서 제시된 세출·세입 일체개혁을 확실하게 실현한다. 둘째, 기본 철학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실시한다. 셋째, 예산편성을 전략적이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넷째, 공무원제도를 근본에서 개혁하여 공무원이 긍지와 의욕을 지니고,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21세기에 어울리는 행정기구의 근본적인 개혁, 재편을 위해 행정의 슬림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재검토한다. 그 첫걸음으로 독립행정법인의 정리·합리화와 정부자산 채무 개혁을 실시한다. 여섯째, 도주제(道州制)를 포함한 본격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실시한다.

### 1. 세출·세입 일체개혁의 실현

「성장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라는 이념하에,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첫 번째 목표로 세출개혁에 노력한다. 그래도 전부 대응할 수 없는 사회보장이나 저출산에 따른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안정재원을 확보하여 장래세대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여, 2011년도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화, 2010년대 중반에 걸친 GDP 대비 채무잔고의 안정적인 인하 등 「진로와 도전」에 정해진 중기적인 재정건전화의 목표<sup>8)</sup>를 확실히 달성한다.

이때, 「진로와 도전」에 따라, 각 연도의 예산이 재정건전화 중기목표 달성에 정합적인가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세제나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혁시에는 세대간·세대내 각 계층에의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 개혁 포인트

1. 진정으로 필요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원의 증점 배분을 실시하면서, 「기본방침 2006」에서 제시한 5년간의 세출개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주요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혁의 이정표나 대처 등을 제시한다.
2. 2008년도 예산은 이 세출개혁을 궤도에 올리는 데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실시하여온 세출개혁의 노력을 결코 늦추는 일 없이, 중앙 및 지방을 통해 계속하여 「기본방침 2006」에 따라 최대한 삭감을 실시한다.

8) 우선 2011년도에는 중앙·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를 확실하게 흑자화시킨다. 재정상황이 심각한 중앙의 기초적 재정수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앙·지방 간의 균형을 계속 확보하면서 재정재건을 추진한다.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과 보조를 맞춘 억제 페이스를 기본으로 세출 삭감을 계속 실시하면서, 세입면에서 일반재원의 소요 총액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흑자기조를 유지한다.

2010년대 중반에 걸쳐,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화를 달성한 후에도, 중앙 및 지방을 통해 수지개선 노력을 계속하여 일정 흑자폭을 확보한다. 이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GDP 대비 채무잔고의 확대를 막고 안정적으로 감소할 것을 확보한다. 중앙에 대해서도 GDP 대비 채무잔고의 확대를 막고 안정적으로 감소할 것을 지향한다.



- 3. 「진로와 전략」에 제시된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새로 필요한 세출을 실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다른 경비의 삭감으로 대응한다」, 「세수의 자연 증가는 안이한 세출이 아니라, 장래의 국민부담 경감에 사용한다」 등 규율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한다.
- 4. 이러한 세출개혁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도, 전부 대응할 수 없는 사회보장이나 저출산에 따른 부담증가에 대해서는, 안정재원을 확보하고 장래 세대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구체적 수단

- (1) 공공투자 개혁
  - ① 중점화, 효율화의 추진
  - ② 공공투자에 관한 기본적 개념
    - i) 과거에 만들어진 다양한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동향이나 출생률 저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다.
    - ii) 투자에 대해서는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자본의 유지·장수명화를 중시한다.
    - iii) 공공투자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개혁방향에 따라 성과(outcome)목표를 중시한다.
    - iv) 사업평가에 관한 제3자 기관의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투자의 선별을 추진한다.
    - v) 실적이 사전평가를 밑도는 공공투자의 사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의 중점화에 활용한다.
    - vi) 공공투자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하에, 계속하여 보조사업·직할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한다.
  - ③ 입찰 담합의 폐절(廢絶)
  - ④ 비용 삭감의 계속

- (2) 사회보장 개혁
  - ① 의료·개호 서비스의 질 향상·효율화 프로그램
  - ② 동 프로그램의 강화와 검증
  - ③ 공립병원 개혁

- (3) 공무원 인건비 개혁

2. 세계개혁의 기본 철학

21세기 일본에 어울리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 「부처의 종적 분할을 뛰어 넘어 수익과 부담의 양면에서 종합적 검토」라는 세가지 시점에서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현한다.

2007년 가을 이후, 세계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실시하여, 2007년도를 목표로 사회보장급부나 저출산대책에 필요한 비용 전망을 고려하면서, 그 비용을 모든 세대가 넓게 공평하게 나누는 관점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조세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현해야 하므로 이에 노력한다. 이때 「기본방침 2006」에 제시된 세입개혁의 기본적 입장과 여당 세계개정대강을 토대로 한다.

<실현해야 할 6개 중점 사항>

- (1) 이노베이션과 개방적인 시스템에 의한 경제성장의 가속
- (2) 다양한 삶의 방식(life style)과 경제활동의 확보
- (3) 세대간·세대내 공평성 확보
- (4) 세금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에 의한 지속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
- (5) 진정한 지방분권의 확립
- (6) 납세자의 신뢰 확보와 공평·효율적인 징수체계의 구축

### 3. 예산제도 개혁

세출·세입을 하나로 파악하여 예산을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의 개혁을 추진한다.

#### 개혁 포인트

1. 「예산의 전체상」의 책정을 통해 예산의 전략성, 종합성을 강화한다.
2. 각 연도의 예산과 재정건전화 중기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3. 명확한 원칙하에서 예산편성을 실시한다.
4. 정책평가를 예산 효율화 등에 적절히 반영한다.

#### 구체적 수단

- (1) 「예산의 전체상」의 책정을 통한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예산 편성
- (2) 중기목표와의 정합성
- (3) 예산편성의 원칙
  - 원칙 1: 민간 수요 주도의 경제성장을 지향하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
  - 원칙 2: 세수의 자연 증가는 안이한 세출이 아니라, 장래의 국민부담 경감에 사용한다.
  - 원칙 3: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를 양립시키기 위해, 중기적인 시점을 중시한다. 즉, 세수가 증가하는 호황기에 건전화 속도를 빨리하는 한편, 세수가 감소하는 불황기에는 속도를 억제하는 등 유연하게 건전화에 대처한다.
  - 원칙 4: 새롭게 필요한 세출을 집행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른 경비를 삭감하여 대응한다.

원칙 5: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철저히 한다.

#### (4) 정책평가의 기능 발휘

- ① 총무성 장관은 각 부처의 평가 실시 상황에 관한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말,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중요 대상 분야의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② 이에 대해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정책평가의 중요 대상 분야 등을 제시한다. 총무성 장관은 해당 제시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를 추진한다.

#### (5) 예산서·결산서 재검토

#### (6) 「연차보고서」의 충실

### 4. 공무원제도 개혁

전후체제에서 탈각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으로, 21세기에 어울리는 행정시스템을 지탱하는 공무원상을 실현한다.

#### 개혁 포인트

1. 능력·실적주의를 도입하여 채용시험의 종류나 연차에 상관없이, 관이나 민간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한다.
2. 재취직 규제를 검토하여, 떠맡기기 알선 등 국민의 신뢰를 잃을 불투명한 인사를 배제한다.
3.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의 과제에 대해 패키지로 개혁을 추진한다.
4. 개혁의 전체상을 염두에 두면서, 실현할 수 있는 개혁부터 신속하게 실현하고, 공무원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 수단

- (1)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법안에 포함된 개혁의 실시
  - ① 능력·실적주의
  - ② 재취직 규제
- (2) 패키지로서의 개혁추진
  - ① 전문스텝직의 조기 도입
  - ② 타 부처 및 민간을 포함한 공모제 도입
  - ③ 관·민 교류의 근본적 확대
  - ④ 정년 연장
- (3) 노동기본권의 바람직한 모습 검토
- (4) 가칭「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안」의 제출

5. 독립행정법인 등의 개혁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에 대한 재검토의 첫 걸음으로서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다. 현행의 독립행정법인이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제도 창설 이후 수행한 다양한 개혁과 정합적인가 등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한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의 우정민영화 및 2008년 10월부터의 정책금융기관 신체제 이행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한다.

개혁 포인트

모든 독립행정법인(101법인)에 대해 민영화와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하여, 「독립행정법인정리합리화계획」을 책정한다. 또한 우정민영화 및 정책금융개혁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한다.

구체적 수단

- (1) 독립행정법인 재검토의 3원칙
  - 원칙 1 「관에서 민으로」원칙: 민간에 맡기는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법인 및 사무·사업에 한정한다. 그 이외에는 민영화·폐지 또는 사무·사업의 민간위탁·폐지를 실시한다.
  - 원칙 2 경쟁원칙: 법인에 의한 업무 독점에 대해서는 민간에 개방할 수 없는 법인 및 사무·사업에 한정한다. 그 이외에는 민영화·폐지 또는 사무·사업의 민간위탁·폐지를 실시한다.
  - 원칙 3 정합성원칙: 기타 개혁(공무원제도개혁, 정책금융개혁, 중앙정부의 수의계약 재검토, 중앙정부의 자산채무개혁)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 (2) 「독립행정법인정리합리화계획」의 책정
- (3)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부단한 재검토
- (4) 재검토 추진 방법
  - (1)의 3원칙에 근거하여 부서 정리합리화 계획의 구체적인 책정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각 주무 장관에게 그 방침에 따라 소관 전 법인에 대해 각각 정리합리화안을 2007년 8월말까지 책정하도록 한다.
- (5) 우정민영화의 확실한 실시
- (6) 정책금융개혁의 확실한 실시

6. 자산채무개혁

스톡먼에서 정부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자산·채무 양면의 위험을 축소함과 동시에, 자산의 매각 및 유효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성장력 강화와 연계시킨다.

### 개혁 포인트

1. 국가의 자산규모에 대해 2015년도 말까지 대 GDP 비율 반감을 목표로 하여, 「공정표」에 따라 착실하게 압축한다.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설치된 전문조사회가 check, follow를 하여 개혁을 구체화한다.
2.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과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해 각각 중앙정부의 대처를 바탕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여,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특별회계 개혁과 공회계 개혁을 자산채무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상승효과를 얻는다.

### 구체적 수단

- (1) 민간의 지체를 살린 국가의 자산규모 압축
- (2)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의 자산채무 개혁의 추진
- (3) 지방의 자산채무 개혁의 추진
- (4) 특별회계 개혁 가속

## 7. 시장화 테스트의 추진

「공공서비스개혁법」에 근거한 시장화 테스트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지방의 공공 서비스 질의 유지, 향상과 경비절감을 꾀한다.

### 개혁 포인트

1. 대상 사업의 근본적 확대: 시장화 테스트 대상 사업의 근본적 확대를 위해 중점 분야를 정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2. 독립행정법인의 시장화 테스트: 독립행정법인 개혁과 보조를 맞춰 시장화 테스트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공

공단체에 대해서도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과 함께 확대한다.

3. 각 부처의 대처 평가: 각 부처의 시장화 테스트 대처 상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구체적 수단

- (1) 대상 사업의 근본적 확대
- (2) 직업소개(Hello Work)
- (3) 통계조사 관련 업무
- (4) 각 부처의 대처 평가

## 8. 지방분권 개혁

전후 체제에서 탈각하기 위해 중앙은 지방이 수행하여야 할 것을 고려하여, 「지방이 주역인 나라 만들기」를 지향한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개혁의 집대성인 도주제(道州制) 실현을 위한 검토를 가속화한다.

### 개혁 포인트

1. 가칭「신분권일괄법안」(이하 같음)을 3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등에 대해 검토한다.
2. 지방재정 전체가 지방분권에 맞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국고보조금부담, 지방교부세, 세원배분의 종합적 개혁을 위해 지방채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더불어, 지방 간의 세원편재를 시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3. 지방 지분부국을 대담하게 합리화하는 근본개혁을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



4. 도주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도주제 비전」을 책정한다.

구체적 수단

- (1) 「신분권일괄법안」의 제출
- (2) 지방세원 재정개혁의 추진
- (3) 지방 지분부국의 근본개혁
- (4) 도주제 실현을 위한 검토의 가속

착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은 거시경제 운영에 관한 다음의 기본적인 관점을 공유한다.

- ①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한다.
- ② 물가 안정을 실현한다.
- ③ 중기적인 과제와 정합적인 정책운영을 실시한다.
- ④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철저히 한다.

이를 전제로, 일본은행은 정부의 정책과 경제전망이 정합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의 운영에서 물가 안정을 확실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경제정세에 따라서는 과감하면서 유연한 정책운영을 실시한다.

제4장 지속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생략)

2. 2008년도 예산의 방향

2008년도 예산은, 세출개혁을 궤도에 올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다. 세출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세출개혁의 노력을 결코 늦추는 일 없이 중앙 및 지방을 통해 계속하여 「기본방침 2006」에 따라 최대한 삭감을 행한다.

제5장 2008년도 예산의 기본 개념

1. 향후 경제동향과 당면 경제재정 운영

세계경제가 계속하여 회복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제는 2007년도에 기업부문·가계부문 모두 개선되어, 자율적·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도도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 사회하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로와 전략」에 제시한 「신성장경제」의 실현을 위해, 본 「기본방침 2007」에 근거하여 개혁에의 노력을 가속·심화한다.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립하는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정

- (1) 탄력 있는 예산 편성
- (2) 예산원칙에 따른 규율 있는 재정운영
- (3) 중기목표와의 정합에 대해 점검
- (4) 예산에 PDCA의 강화
- (5) 행정의 슬림화·효율화 등



# 정책연구

■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시사점

조세정책에서 효율성은 중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입구조를 구성하여 정부활동의 왜곡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재정 조달비용에 대한 정보는 정부지출의 타당성에 시사점을 제공해주게 된다. 조세의 효율성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통해 비교가능하며 과세소득탄력성은 초과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왜곡효과를 계량화한 것으로 과세 대상 세원의 탄력성과 세율수준의 제공에 의존한다. 따라서 세원의 탄력성은 조세의 효율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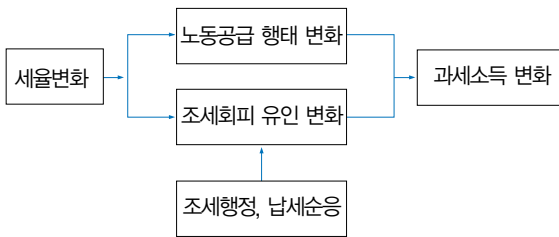
특히, 과세소득탄력성은 초과부담의 결정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수추정, 그리고 세수를 최대화하는 세율수준(laffer rate)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현재 세수추계는 많은 경우 세율 변화에 따른 세원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세수 변화폭을 과대추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세 최

고세율 인상논의에서도 최고소득층의 반응도와 연계된 세수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정부의 소득세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소득탄력성은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노동공급탄력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세율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량의 변화, 과세베이스의 이동 등 행태 변화를 나타내며 이러한 행태 변화로 과세소득 또한 변화하게 된다. 만약 노동소득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노동공급탄력성과 과세소득탄력성은 동일하나 비노동소득이 존재할 경우에는 달라지게 된다. 또한 과세소득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를 통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율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납세순응비용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야기된 납세자의 한계세율 변화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세소득탄력성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982~2005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세후소득률, 즉 (1-한계세율)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여 과세소득탄력성을 추정한다.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의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탄력성과 장기탄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여 향후 세수추계, 세율결정 등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과세소득 변화의 경로



경제적 왜곡을 측정하는 초과부담은 조세부과시 정부세수로 회수되지 않고 사라지는 소비자잉여로 정의된다. 즉, 상품에 대한 조세부과는 상대가격구조를 왜곡시켜 개인의 소비선택을 변화시키는데 이때 소비선택의 변화시 나타나는 소비자잉여의 손실을 초과부담이라 한다. 즉 (소비자잉여의 변화 = 정부수입의 증가 + 초과부담)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노동공급에 있어 초과부담은 세율(t), 임금(w), 그리고 노동공급량의 변화( )의 함수로 나타난다. 여기서 노동공급량의 변화는 다시 소득탄력성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초과부담은 탄력성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B_{EV} = \frac{\eta_l}{2} w h_1 \left( \frac{t^2}{1-t} \right) = \frac{\eta_l}{2} w h_1 \left( \frac{t}{1-t} \right)^2$$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분석과 시계열분석을 동시에 이용하여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선 횡단면분석은 세율의 10% 인하가 있었던 2002년을 전후로 실시하며 시계열분석은 1982~2005년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1982~2005년 가계조사자료이며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용한다. 이는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산소득의 분배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에 이용된 한계소득세율은 각 소득의 한계세율을 가중평균하여 도출하며, 소득계층별 한계세율은 개인별 한계세율을 소득으로 가중평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한계세율은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되므로 근로소득의 한계세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횡단면분석은 Lindsey(1987)의 방법론에 따른 계층별 소득수준 변화를 이용한 방법과 계층별 소득비중 변화를 이용한 방법 등 두 가지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과세소득탄력성의 추정은 세율 변화가 없었다는 가정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상적인 소득(혹은 소득비중) 및 한계소득세율을 실제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세율 변화로 인한 영향을 추정한다. 2002년 세율인하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여 2001년 자료에 기준한 시뮬레이션자료와 2002년, 2003년, 2004년 실제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과세소득탄력성을 추정한다. 이러한 방법론이 제시하는 탄력성은 행태 변화의 시차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단기탄력성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2002년 세율인하로 인해 가구주들의 과세소득, 혹은 과세소득 비중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세율 인하 2년 후까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소득계층별 탄력성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

한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있었다. 고소득층일수록 세후소득률의 변화에 민감하게 자신의 소득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낮은 통계적 유의성의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비조세적인 소득 변화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방법론상의 한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성과중심 급여체계의 정착으로 세후소득률(즉 1-한계세율)의 변화와 관계없이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으나 횡단면분석은 이러한 비조세적 소득 증가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후소득률 변화에 따른 효과와 소득증가 추세에 따른 효과가 혼합되어 추정계수의 방향성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두 번째는 자료 자체의 한계이다. 개인소득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한계세율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즉 근로소득 수준은 개인의 노동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일정수입이 필요한 개인의 입장에서 크지 않은 한계세율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량을 짧은 시간 내에 변동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내생성의 문제이다. 즉, 한계세율(분석에서는 세후소득률)의 변화가 소득수준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소득수준의 변화가 한계세율의 변화를 야기하는 내생성의 문제 역시 추정치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기준 계층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소득증가로 인한 한계세율 증가(즉 과표구간 상승, bracket creep)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생성의 문제가 상당부분 통제될 수 있다. 그 외 샘플사이즈가 작은 문제점, 고소득층 자료가 많지 않은 서베이 자료의 한계 등이 낮은 통계적 유의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

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과 같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납세자료가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자료공개 노력이 필요하다.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소득계층별 차이(heterogeneity), 자료의 안정성, 비조세적 요인에 의한 효과 등을 통제하기 위해 소득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소득계층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면세자 비중, 고소득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납세자 반응 등을 고려하여 상위 소득 20% 이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계세율과 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명목최고소득세율을 도구변수로 이용한 2SLS 추정치는 OLS 추정치와 상당히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인한 과표구간 상승(bracket creep)효과, 즉 소득상승이 한계세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탄력성 추정치는 2SLS의 경우 대부분 OLS보다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과표구간 상승효과로 OLS추정치와 과소추정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SLS의 일차회귀식  $t$ -통계량으로 살펴본 최고소득세율과 한계소득세율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한계소득세율의 변동에 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넓은 소득공제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소득세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공제제도 변화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부호를 보여주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다양한 회귀식에서 세후소득을 변화에 대해 과세소득(혹은 과세소득비중) 변화가 유의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추정모형 설정의 오류를 회귀결과로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 다른 방향은 회귀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는 점추정치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설정된 회귀모형이 경제적 이론에 배치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으로 모형설정의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따라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점추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독립변수로 추세의 3승항까지 포함하여 비조세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는 최고 10%, 최고 5% 계층에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탄력성은 최고 10% 계층의 경우 0.79, 최고 5% 계층은 0.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방법론에 의한 미국 결과(Saez, 2004)가 나타내는 최고소득 1% 계층에 대한 탄력성 0.62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소득세율 변화로 인한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소득세율의 인상 등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탄력성의 원인으로는 과세기반의 충실성, 납세자들의 반응도 차이, 기본적인 한계세율의 수준 차이, 분석자료의 차이 등 크게 네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그 중 과세기반의 충실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과세·면세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높은 탄력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시스템 미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 미비 등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세원이 비과세부분



B5변형/133면/2006. 12/  
값 6,000원

혹은 조세회피가 용이한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납세자들의 반응도 차이, 기본적인 한계세율 수준 차이는 미국 수준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분석자료의 문제는 탄력성의 증가 혹은 감소 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료 보완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의 분석자료와 가장 큰 차이는 사업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세율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부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탄력성 추정결과와 원인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우리나라 소득세제정책은 세원의 충실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과세기반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동시에 과세소득(혹은 비중)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소득세율 인상 등에 대한 정책옵션을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분석자료의 문제는 서베이자료의 한계, 즉 고소득층의 탈락과 포괄소득의 협소함이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장애요인이므로 종합소득자를 포함한 개인별 납세

자료를 이용한 추가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연구관련 자료제공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수준별 탄력성 추정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과세소득탄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2SLS 결과(회귀식 (2))를 살펴보면 상위소득 20%의 경우 탄력성은 1.34, 상위소득 10%는 2.05, 상위소득 5% 계층은 2.71로 상위소득층의 탄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추세변화를 통제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2SLS 결과(회귀식 (8))를 보더라도, 상위소득 20%의 경우 0.76, 상위소득 10% 0.79, 상위소득 5% 0.99로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위계층일수록 소득구조에 대한 개인의 조정능력이 높아 한계세율 변화에 대한 과세소득 변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소득구조에서도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율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노동소득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을 통해 유추될 수 있다.

과세소득의 탄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세율 변화는 그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세수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 세율 변화를 통해 세수 및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납세순응비용, 조세행정, 기타 세원의 관리 등에 의존하는 과세소득 탄력성을 정부정책의 강화를 통해 낮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6-07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조세정책 ·

### 중국, 이자소득세 폐지한다

#### 긴축조치 일환...전문가들은 “효과 의문”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 등 금융권 예금의 이자소득에 붙는 20%의 이자소득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예금의 증시 유입을 완화하고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두 차례의 예금금리 인상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경기긴축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7일 제10기 상무위원회 28차 회의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정부)에 이자소득세 부과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인 이자소득세율을 우선 10%로 줄인 뒤 상황에 따라 징세를 중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의 현행 이자소득세는 개인의 이자소득에만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난 99년 관련세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2,146억 4,000만위안(약 26조 1,400억원)의 세금이 징수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이자소득세 폐지 방침이 중국 경

제의 고속성장과 과잉투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 부장은 “이자소득세가 징수된 지난 8년 간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고 재정수입이 확충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의 경제사회 상황은 달라졌다”면서 “정부는 고정자산 투자의 빠른 증가와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대책을 숙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긴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현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과장은 “이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예금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는 것보다 더 큰 자금유입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그러나 경기긴축에는 대출금리 인상이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울경제 2007-06-27]

## UAE, 이르면 2010년 부가세 도입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면세 정책으로 외자와 외국인을 유인하는 정책을 쓰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르면 2010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의 중동·중앙아시아 담당 모신 칸 국장은 “UAE가 이르면 2010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두바이는 다른 걸프국가의 세금 체계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걸프지역 국가의 경제·정치 협력체인 걸프협력협회의회(GCC) 회원국 6개국은 외국 투자에 대한 면세 정책을 시행중이다.

칸 국장은 “부가세 도입은 강력한 국고 수입 정책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정부가 비(非)석유 소비에 근간을 두는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UAE 정부 측은 부가세 도입을 도입하라는 IMF의 제안을 연구중이며 만약 부가세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10%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06-29]

## 스위스 내년부터 '탄소세' 도입

###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위해 수입 화석연료에 부과

스위스가 내년 1월1일부터 '탄소세'(CO<sub>2</sub> tax)를 도입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01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수입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스

위스 언론이 28일 전했다.

이에 따라 난방용 기름에는 1ℓ당 3상텨(22.66원), 천연가스에는 1m<sup>3</sup>당 2.5상텨(18.88원)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올해 초 스위스 연방정부와 의회 간의 합의에 따르면, 스위스는 지난해 교토의정서에 의한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스위스 연방환경청은 탄소세는 재계와 국민들에게 화석연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만큼, 세금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7-06-29]

## 미국 부자들이 자선사업 많이 하는 까닭은

미국 부자들이 자선 사업에 돈을 많이 내놓는 데 반해 영국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색하다. 이는 미국에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은 반면 영국 부자들의 상당수는 유서 깊은 귀족으로서 상속재산을 소중히 간수하기 때문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7일 전했다.

미국에선 작년 한 해 동안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맞먹는 2,950억달러(273조원)가 자선 기부금으로 걷혔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액수다. GDP 대비 기부금 비율로 따지면 영국이 0.73%로 미국에 이어 2위지만 둘 사이 격차가 크다. 또 미국은 계층에 상관없이 자기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이 일정하지만 영국에선 부유층보다 빈민층의 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3%를 기부한 반면, 상위 10% 부자들은 소득의 1%만 내놓은 것이다.



두 나라 부자들의 행태는 양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에선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와 같은 자선가가 위인으로 추앙받는다. 혼자 힘으로 가난을 딛고 거대 기업주가 된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신념으로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카네기를 본받아 자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신분제 전통이 강한 영국에선 귀족 출신이 거액의 유산을 대물림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자수성가 기업가들과는 달리 돈 버는 데 매달리지 않고 가문의 재산을 대대로 지킴으로써 품위를 유지한다. 영국에선 귀족 부자들 대신 노동당 정부가 자선사업에 열심이다. 2002년부터 정부의 기부금이 민간의 총액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의 기부금이 대부분 급여소득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된 것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자인 귀족 부자들은 세금을 통한 기부도 하지 않은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민일보 2007-06-27]

### 싱가포르, 내년부터 법인세율 18%로 인하

- 향후 5년내 법인세는 15%, GST는 10%로 조정 전망

- 최근 싱가포르 법인세율 및 GST 변동내역
  -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 GST)를 기존 5%에서 7%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음.
  - 따라서 6월 30일 이후에 싱가포르 내에서 소비, 유통될 모든 수입상품 및 제품도 7%가 적용되게

됨.

- 참고로 GST 인상에 따른 각종 문의사항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 혹은 콜센터 (+65 6355 2000)에서 확인 혹은 문의할 수 있음.
- 한편, GST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이 현 20%에서 18%로 하향 조정될 예정임에 따라, 싱가포르 외국인투자 유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싱가포르는 2008년부터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 홍콩의 이익세(법인세에 해당)을 17.5%에 근접하게 되면서 홍콩도 법인세 인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는 2000년 이래로 법인세를 8% 인하한 반면 홍콩은 16%에서 17.5%로 오히려 인상했음.
- 법인세 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투자유치 경쟁력 지속 유지 및 다국적기업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의 입지를 굳히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
- 외국인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내년부터 대폭 인하하는 대신 이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GST)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하고, 남은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임.
- 전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추세에 싱가포르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하며, HSBC의 한 경제전문가는 앞으로 5년 안에 싱가포르가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반면, GST를 10%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국가별 법인세율 및 GST/VAT 현황

국가별 법인세율 및 GST/VAT 현황

국 가	법인세율(%)	국 가	GST/VAT(%)
일 본	40.69	아일랜드	21.0
중 국	33.00	영 국	17.5
영 국	30.00	중 국	17.0
스 위 스	21.30	스 위 스	7.6
싱가포르	20.00	일 본	5.0
홍 콩	17.50	싱가포르	* 5.0
아일랜드	12.50	홍 콩	0.0

주: 2007년 1월 1일 기준, 2007년 7월 1일부터 싱가포르 GST는 7%.

자료: KPMG.

국가별 GST/VAT 현황

국 가	도입시기(연도)	GST/VAT(%)
한 국	1976	10.0
인도네시아	1985	10.0
대 만	1985	5.0
뉴질랜드	1986	12.5
필 리 핀	1988	12.0
일 본	1989	5.0
파키스탄	1990	15.0
방글라데시	1991	15.0
태 국	1992	7.0
중 국	1994	17.0
싱가포르	1994	* 5.0
캄보디아	1999	10.0
베 트 남	1999	10.0
호 주	2000	10.0
인 도	2005	12.5

주: 2007년 1월 1일 기준, 2007년 7월 1일부터 싱가포르 GST는 7%.

자료: PwC.

- 전 세계 각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지속 추진하는 반면, GST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아일랜드로 지목되고 있음. 국민 개개인이 조금씩 부담하는 간접세를 재정의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기업경쟁력과 연관 있는 법인세는 내리는 것으로 아일랜드의 현재 법인세는 12.5%로 가장 낮은 반면, 간접세는 21%로 가장 높음.

- 싱가포르 인근국 말레이시아 역시 금년 및 내년 법인세율을 각각 1%로 내려 16% 가량 세율을 유지할 예정
- 독일도 2008년까지 법인세를 현행보다 9% 낮추는 대신 부가가치세율을 3%로 올리려 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고용 유지 기대
-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은 미국, 일본도 인하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KOTRA, 경제무역정보 2007-06-30]

멕시코 재무부, 세법개혁안 발표

- GDP 10%의 미미한 세수강화 시급
- 2012년까지 세수규모를 GDP 13%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멕시코 정부의 세수 현황

- 멕시코의 세금수익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90년부터 '06년 까지 국가의 세금수익은 전체 GDP의 10% 규모임. 또한 이 중 정부세수의 32%를 원유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이 심한 불안정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멕시코 재무부는 신규 세금징수분야 창출,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세금탈루 방지를 주목표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세법개정 목적은 2012년까지 정부의 계획에 필요한 세수를 GDP 대비 3%에 해당하는 규모를 추가 확보하는 것임.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납부를 쉽게 하고 탈세 및 밀거래 방지를 통해 비원유부문 세수를 GDP의 1.09%인 10만페소의 추가징수를 추진하고 있음.

■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재무부는 의회에 총 7개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주 목적은 공공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수를 늘리고 탈세를 막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데 있음.
-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동일세율 법인세(Contribución Empresarial a Tasa Única)

- 기존의 자산세(Impuesto al Activo)를 대체하는 세금으로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통한 수익에 19%의 동일한 세금 부과(2008년에는 16%, 차년도부터 19%로 조정)
- 재무부는 이 세금을 통해 2008년 13만페소, 2009년 18만페소의 추가 세수를 징수할 것으로 집계
- 이 세제는 신규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의 100%에 대해 면세혜택을 제공, 투자를 억제하지 않는 방향임.
- 이 세금과 법인소득세(ISR, 28%) 중 높은 쪽에 과세

2) 지하경제 방지를 위한 세금(Impuesto contra la Informalidad)

- 월 2만페소가 넘는 개인 현금 은행계좌에 2%의 세금 부과
- 이 세금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계좌를 이용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목적임.
- 또한 법인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이 세금은 은행에서 해당 계좌를 파악, 일괄 징수함.

3) 특별 생산 및 소비세(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

- 복권 등 도박 관련 제품에 20%의 세금 부과, 에어졸 페인트에 50% 부과
- 주 정부에서 이 품목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4%까지 면세해줌.

4) 지방정부에 대한 과세권 부여

- 술, 담배, 디젤, 가솔린 등에 대해 지방정부 재량으로 지방세를 징수

■ 세법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

- 재무부는 세법개정안이 국가의 재정수익을 높이고 기업의 투명한 과세를 촉진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기업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상공회의소(Canacindra)는 재무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번 조치는 고용창출에는 실패하고 세수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혹평
- 반면, 민간경제연구소(CEESP)는 이번 조치가 민감한 납세자 그룹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
- 또한 컨설팅사 Deloitte는 신규 세금 중 CETU(동일세율 법인세)의 경우 과세율이 너무 높아 투자 및 고용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개혁안은 큰 틀의 변화가 없이는 의회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함.

■ 향후 전망

- 정치권은 이 세제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제화될 때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좌파야당인 민주혁명당(PRD)은 개혁안이 미흡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제도혁명

당(PRI)은 세계개혁안 통과를 다른 국내문제 통과와 연계시키고 있어 의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하지만 만약 재무부의 발의안으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현지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의 과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동일세율법인세(CETU)와 법인소득세(ISR) 중 높은 쪽에 과세함에 따라 양 쪽 모두에 대한 세금계산 작업이 필요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KOTRA, 경제무역정보 2007-06-30]

화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도 예상과 달리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독일의 재정적자가 2002년부터 4년 연속 EU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부가세율을 인상

\*\* Kiel 연구소는 부가세 인상으로 2007년중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0.4%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0.4%p 확대될 것으로 전망(2006. 6월)

- 지난해 독일경제가 실질GDP 기준 2.8% 성장하여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난 데 이어 부가세가 인상된 금년 들어서도 1/4분기중 각각 전기 대비 0.5%, 전년동기 대비 3.6% 성장
- 부가세(VAT) 인상으로 소비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투자 및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독일경제의 성장을 견인

### 부가세 인상 이후 독일경제 호조 배경과 평가

- 독일경제는 금년 초 인상된 부가세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금년 들어서도 1/4분기 실질GDP가 전년동기 대비 3.6% 성장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이와 같이 독일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증대와 수출 호조가 부가세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효과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
- 주요 기관들은 금년중에도 독일경제가 투자 및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고용사정 개선으로 2분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1. 최근 독일경제 동향

- 독일은 금년 초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율 인상\*(16% → 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기조가 둔

### GDP 성장률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4)
GDP 성장률	0.0	-0.2	1.2	0.9	2.8	0.5 (3.6)
민간소비	-0.8	-0.1	0.1	0.1	0.8	-1.4 (-0.2)
고정투자	-6.1	-0.8	-0.4	0.8	5.6	4.2 (11.6)
(설비투자)	-7.5	-0.3	4.1	6.1	7.3	5.5 (8.6)
수출	4.3	2.4	9.6	6.9	12.5	-1.2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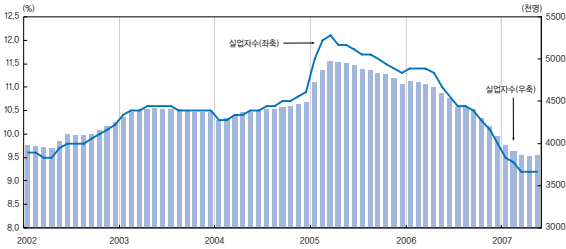
주 (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자료: 독일 통계청

- 아울러 고용 및 물가 등 여타 주요 지표의 경우에도 안정 유지
- 실업률은 성장세 지속에 따른 고용확대에 힘입어 금년 4~5월 연속 9.2%를 기록하여 2001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자 수도 금년 5월 386만명으로 1월에 비해서는 13만명,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73만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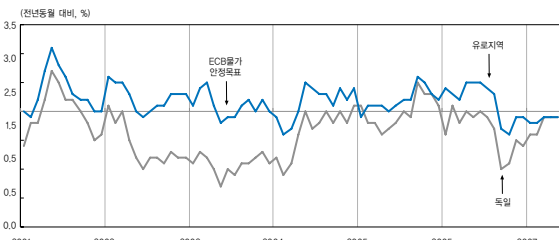
### 실업률 및 실업자 수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부가세 인상 영향 등으로 2006년 12월 전년동월 대비 1.4%에서 2007년 5월 1.9%로 확대되었으나 목표수준(2.0%)을 하회

### 실업률 및 실업자 수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 2. 경제호조 지속 배경

### (투자 증대가 성장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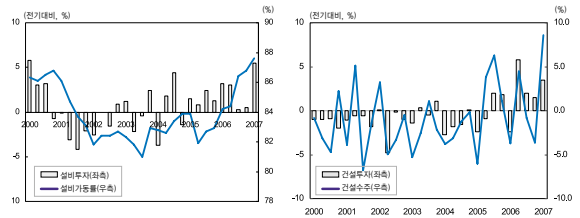
- 금년 들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독일경제의 성장을 견인
- 설비투자는 2006년 4/4분기 전기 대비 0.5% → 금년 1/4분기 5.5%, 건설투자는 1.5% → 3.5%로 증가폭 크게 확대
- 설비투자의 증가는 지난해 독일경제의 회복을 배

경으로 설비기동률이 상승하는 등 추가적인 설비 투자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

- 건설투자의 증가는 이번 겨울기후의 이상온난화로 건설시장이 활황을 유지했던 데 주로 기인
- 1/4분기중 독일의 건설수주도 전기대비로 8.3% 증가하여 전분기의 -3.6%에서 큰 폭 증가로 반전

### 설비투자 및 설비기동률

### 건설투자



자료: 독일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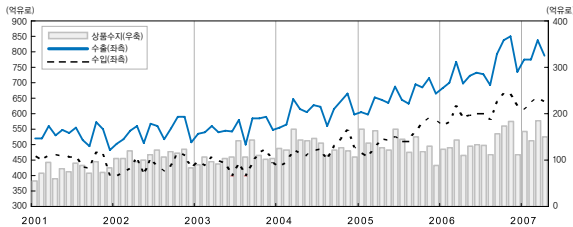
### (수출호조 지속)

- 수출이 유로화 강제\* 속에서도 해외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호조를 지속함으로써 투자와 더불어 독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

\* 5월 말 현재 유로화의 對미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2% 상승하였으며 2006년 초에 비해서는 14% 상승

- 금년 1/4분기중 수출은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11.1% 증가하였으며 상품수지 흑자규모도 전분기에 비해 오히려 확대 (468억유로 → 489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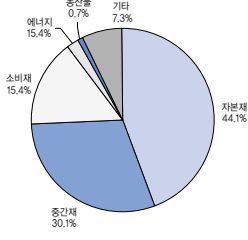
### 상품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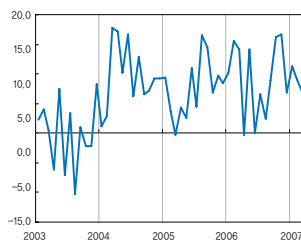
자료: 독일 통계청

- 이는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독일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 특히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계류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 수요도 꾸준히 확대

### 상품별 수출 비중<sup>1)</sup>



### 자본재 수출 추이



주 : 1)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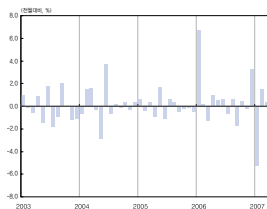
자료 : 독일연방은행

- 또한 독일의 경우 유로지역(Euro-zone) 역내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아 유로화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 금년 1~4월중 독일의 수출액 3,176억유로 중 EU 국가 비중이 66%, 유로지역 국가 비중이 44%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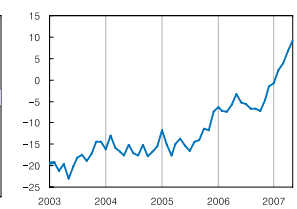
###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

- 소비는 부가세 인상으로 금년 1·4분기 다소 부진하였으나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 유지
- 금년 1/4분기중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4%, 소매판매는 전기대비 2.2% 감소하였으나 당초 예상을 하회
- 이는 수출기업의 실적 호전에 따른 고용확대 및 Merkel 총리 취임 이후의 노동개혁 등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가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
- 특히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의 경우 부가세 인상이 시행된 1월 전월 대비 5.5% 감소하였으나 4월에는 2.6% 증가하여 세율 인상의 영향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설비투자 및 설비가동률



### 건설투자



자료: 독일 통계청

### (구조 개혁추진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

- 2004년 이후 추진되었던 독일경제의 구조개혁\*으로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 촉진
- \* 해고 가능기간 연장(재용 후 6개월 → 2년), 실업수당 수령기간 단축(32개월 → 12개월) 및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 등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고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채용 규모가 계약직 위



주로 크게 확대

- 특히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노사 합의하에 임금 인상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울러 독일정부가 내년부터 유럽지역 내 최고 수준인 기업 법인세율을 인하(38.9% → 29.8%) 할 예정이어서 기업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

- 수출은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지속 등에 따라 호조를 지속하는 한편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상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가 부가세 인상의 영향을 상쇄할 전망

\* OECD는 2007년중 독일의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2.1% 증대될 것으로 전망

### 3. 평가 및 전망

- 독일경제는 부가세 인상 이후에도 성장세가 유지되고 고용, 물가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부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기관들은 2007~2008년중 독일 경제성장률이 전년(2.8%)보다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기업 투자 증대, 수출호조 지속 및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2%대 중반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EU집행위원회, IMF 및 OECD 등, 2007. 4~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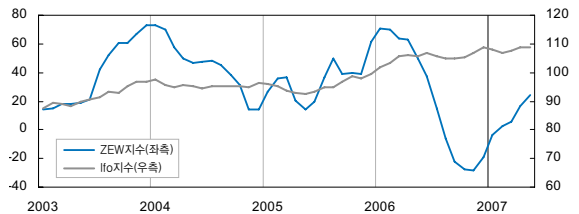
#### 주요기관의 독일경제 전망

(%)

전망기관	전망 시기	경제성장률		CPI		실업률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EU 집행위	2007.5	2.5	2.4	1.9	1.7	7.3	6.5
OECD	2007.5	2.8	2.5	1.8	1.7	6.9	6.3
IMF	2007.4	1.8	1.9	2.0	1.6	7.8	7.6
독일 5대경제 연구소 <sup>1)</sup>	2007.4	2.4	2.4	1.6	2.5	8.7	8.0

주: 1) 독일경제연구소(DIW), Ifo 경제연구소, Kiel 세계경제연구소, Halle 경제연구소, RWI경제연구소

#### 독일의 주요 경기심리지표 추이



자료: 독일 ZEW, Ifo

- 아울러 독일의 재정 사정이 경기호조에 따른 세수증대 등으로 개선되면서 법인세 인하 여력이 생긴 것도 독일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 부가세 인상의 원인이 되었던 재정적자가 2005년 GDP 대비 3.2% → 2006년 1.7%로 축소되면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 이내로 억제
- 2007년중에도 독일의 재정적자는 부가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통한 정부부담 축소로 GDP의 1.0% 이내로 축소될 전망
- 이에 따라 재정적 여유를 확보한 독일정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법인세를 현행 38.9%에서 29.8%로 인하할 예정

[한국은행, 주간해외정보 2007-06-30]

-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간 정체상태였던 독일의 주택경기 회복이 예상되면서 건설투자도 증대될 전망

## 재정정책 ·

## 美 국가경쟁력 높이려면…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경쟁력 향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논의의 중심은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다.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고귀한 행위다. 그러나 경쟁력 확보 방안이 손익계산에만 국한된 것은 문제다.

훌륭한 회계감사와 개선된 재정보고서 및 회계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국제적인 기업들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좋은 조치다. 그러나 기존 법률의 적용 강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사베인스-옥슬리 법과 같은 번거로운 개혁조치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이 법이 적절하기는 하지만 이번 경쟁력 향상 방안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 우선 미국은 경쟁력 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이 1980년대에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 및 인플레이 억제를 통해 미국의 자유시장 체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후 미국경제는 유럽과 일본의 산업 거대상대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번영률이 믿기 어려운 95%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미 증시는 12배로 성장했다. 미국 내 각종 자산의 시장 가격은 채무 가치보다 대략 3배 빨리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 기존의 경쟁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제조업에 종말이 왔다는 주장은 반경쟁 개념이 실제 경쟁력을 압도하는 핵심 사례다. 미국의 제조산업은 2005년에 1조 5,000억달러 가치의 상품을 생산했는데 이는 1992년의 9,000억달러보다 70% 증가한 것이라고 좌절화된 진보정책연구소의 에드워드 그레스가 밝혔다. 현재 미국 제조업은 15년 전보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1990년대 초에 세계경제의 생산량에서 차지했던 비율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의 결과일 뿐이다.

방대한 수의 새 일자리는 급료가 낮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양대 부문인 교육보건 서비스업과 전문기업 서비스업은 지난해 미국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급료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비관리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진보파 시사 해설가들은 “소득의 불평등”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부자들에게 한 과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그러나 것처럼 화석화되고 대중 선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자본주의로부터 자본을 박탈할 뿐이다.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4.5%인 미국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은 더 많이 받는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보답을 받는 것이다.

미 재무부와 의회가 미국의 경쟁력을 진정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면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레이건의 전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들은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에 대해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다. 유럽은 그렇지 않다. 유럽 회사들은 세금환불을 통해 이중과세를 면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번 이윤을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놀리도록 만든다.

법인의 자본 소득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자는 투자회사 로우어의 CEO 제임스 티쉬의 제안은 건설적이다. 이 같은 세율인하를 통해 수천억달러의 법인



유휴자금을 기업의 혈관에 산소처럼 주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세 조치는 막대한 새로운 세금수입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를 대량 창출함으로써 보상을 받는다. 프랑스와 독일에는 사실상 자본소득세가 없다.

기업의 회계 개혁도 훌륭한 조치이지만 새로운 세제상의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은 회계 개혁보다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면적인 법인세 개혁 없이는 어떤 “경쟁력 실천 계획”도 완성시킬 수 없다.

[세계일보 2007-06-19]

## EU경제 동향 및 전망

### - EU 경제 동향 및 전망(2007년 1분기)

#### 1. 2006년 및 2007년 1/4분기 EU 경제 동향

- 2006년의 EU27과 유로지역 경제가 각각 전년 대비 3.0%와 2.7% 성장하여 2001년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06년 EU 경제의 높은 성장세는 견실한 수출 부문과 기업투자 확대가 주도한 것임.
  - 총고정투자가 전년 대비 5.6%, 수출이 9.2% 증가하면서 EU27 경제성장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가계소비 증가율도 5년 만에 최고치인 2.2%를 기록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음.
- 2007년 1/4분기 EU27 경제는 전기 대비 0.6%, 전년동기 대비 3.2% 성장함.
  - EU27 경제는 2006년 4/4분기에는 전기 대비 0.9%, 전년동기 대비 3.5% 성장이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6년 전체적으로는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이 0.7~1.0%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1/4분기에는 독일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EU27의 성장률이 다소 떨어짐.
  - 2006년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 대비 0.8~1.2%를 기록하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독일경제는 2007년 1/4분기에는 전기 대비 0.5%로 성장속도가 낮아졌지만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3.6%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경기확장세를 보이고 있음.
    - 1월의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상이 가계소비지출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독일 경기확대에 제한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음.
  - 이탈리아의 2007년 1/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에 불과, 2006년 4/4분기의 1.1%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이탈리아의 분기별 성장률은 분기 때마다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1/4분기의 저성장은 지난해 4/4분기 과열된 경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프랑스 경제의 1/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와 동일한 0.5%(전기 대비)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EU27 회원국 중에서도 성장속도가 낮은 편임.
  - 2001~2003년 극심한 저성장에 시달렸던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 2006년에는 확실한 회복(2.9% 성장)을 보였으며, 2007년 1/4분기에도 전기 대비 0.6%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EU의 기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호조를 보였던 국가들 중 하나인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1/4분기에도 성장률이 각각 1.0%, 0.7%를 기록하면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활발한 고정투자와 수출부문이 EU27의 경기회

복을 주도하고 가계소비와 정부소비 지출도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음.

- 2006년 4/4분기에는 가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전기 대비 0.6%, 0.4% 증가하였고, 투자도 1.5% 증가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수출부문의 증가율이 3/4분기에 0.3%로 다소 정체된 후 4/4분기 들어 다시 2.9%를 기록하였음.
- EU27 전체의 2007년 1/4분기 GDP 구성요소별 증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몇몇 회원국들이 공개한 국별 자료에 따르면, 1/4분기도 기업투자가 성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이 성장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가계소비의 경우 독일이 부가가치세 인상 여파로 위축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임.
-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도 증가하고 있어 2006년 3월 8.2%에 달했던 EU27의 실업률이 2007년 3월에는 7.3%로 하락하였음.
- 유로지역의 실업률도 같은 기간 7.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3년 유로지역의 실업률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임.
- 그러나 국가별 실업률은 네덜란드의 3.4%에서 프랑스 8.7%까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스페인 8.3%, 독일 7.0%, 슬로베니아 4.6%, 오스트리아 4.4%, 아일랜드 3.9% 등임.
- 4월 EU27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2%, 유로지역은 1.9%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임.
- 유럽의 경기회복은 2006년 상반기의 고유가와 맞물려 물가불안을 심화시켜 2006년 중순에는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이 2.5%에 달했음.
- 그러나 2006년 9월 이후에는 유가와 원자재 가

격의 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낮아져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2007년 1월 배럴당 50달러였던 유가가 최근 7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물가불안 가능성이 있으나 2006년에 비하여 2007년에는 유가안정이 예상되고, 최근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상승을 요구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도 안정 기조를 보여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부터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중동구권지역으로 생산공장 이전을 추진하자, 노사 양측은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없는 근로시간 연장(주당 35 → 39 또는 40시간) 및 임금인상 억제 등에 합의함.
- 2007년 4월 27일 기준으로 유로화가 1,368달러에 거래되어 1999년 1월 유로지역 출범 이래 달러 대비 최고치를 기록한 후 5월에는 1,35달러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으나 유로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음.
- 유럽경제가 2001년 이래로 최고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2007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07년 3월에 3.75%까지 인상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 EU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 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 유럽중앙은행(ECB)은 2003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2%였던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3.75%까지 인상하였음.



- 고유가와 원자재 및 농산물의 가격상승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6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였기 때문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6년 9월 이후부터는 2%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나 EU 경제가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는 200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이에 ECB는 금년 6월 기준금리를 4.0%로 추가 인상하였으며, 하반기에 또 한 차례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2007년중 기준금리는 4.25%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유로지역의 물가가 금년 상반기까지 2.0% 이하로 안정되어 있지만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물가불안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임.

나. 회원국의 재정적자

- 유로지역의 경기회복과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주요 회원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EU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재정적자가 2003년 이래 GDP의 3%를 초과하여 EU 안정·성장협약(SGP)의 재정준칙을 위반해 왔음.
- 그러나 2006년에 와서 프랑스와 독일의 재정상황은 뚜렷이 개선되었는바, 독일의 경우 경기 상승 지속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2005년 GDP의 3.2%였던 재정적자가 2006년에는 1.7%로 떨어졌으며, 프랑스도 재정적자가 2005년 GDP의 3.0%에서 2006년에는 2.5%로 낮아졌음.
- 한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재정상태는

우려할 만한데,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2005년에는 GDP의 4.2%였으나 2006년에는 오히려 4.4%로 상승하였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GDP의 6.1%에서 3.9%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안정성장협약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더욱이 이들 국가 모두 경기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의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독일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독일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인상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원국들의 재정지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

- 독일, 프랑스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복지혜택 축소가 핵심 내용이며 이에 따른 미래의 불안감은 민간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메르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업환경 제고를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 중임.
  - 노조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수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정책이 추진됨.
  -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007년 2월 2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3월 9일에는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 높이는 연금개혁법안도 하원을 통과하였음.

- 또한 독일의 기업환경 제고를 위해 39%인 현 법인세 수준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개정안도 2007년 3월 14일 의회에서 통과 됨.

• 지난 2006년 4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도입이 좌절된 바 있는 프랑스는 2007년 5월 6일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정책, 주당 35시간 근로제 개편, 사회복지 개혁 등의 경제개혁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사르코지 대통령은 고용주들이 피고용자들의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과 이를 위해 현재의 종신제보다 유연한 단기계약제 도입을 제안함.

- 최소한(minimum)의 사회보장이 근로의 의지를 높인다는 주장을 통해 불 때 사회복지 축소가 예상되며, 주당 35시간 근로제 폐지 및 2012년까지 전체 세금부담을 4% 줄이는 등의 공약을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요국들의 경제개혁은 사회보장 축소뿐만 아니라 친기업적 정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슈뢰더 전임 총리의 Agenda 2010 그리고 메르켈 현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독일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라. 독일,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입

■ 독일이 2007년 1월부터 6개월간 EU 의장국을 수입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국제적 입지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영국에서는 금년 5월 블레어 총리가 사임을 표

명, 브라운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로 확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5월 대선을 통해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등 유럽의 주요국 리더십이 최근 교체됨에 따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EU내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메르켈은 EU의 결속력 강화 및 경제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 EU 헌법 부활 및 리스본 전략의 강화 등이 예상됨.

• 금년 내 EU 헌법 부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2006년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둔 독일경제 회복이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개혁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어 리스본 전략을 중심으로 한 EU와 독일의 경제개혁 추진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마. 기타 요인

■ 경기회복세에 따른 고용증가와 이로 인한 임금의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구매력 증가로 인해 가계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음.

■ 반면에 유로화 강세 현상 및 세계경기 확대의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유로지역의 경쟁력 및 수출에 부담을 줘 유럽기업의 투자와 고용 위축을 불러 올 위험이 있음.

• 그러나 유가불안 현상과 세계경기의 부진, 그리고 유로화 강세 등은 EU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EU 경제가 급격한 경기하강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치적 불확실성도 EU 경기확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바, 독일의 대연정 내 의견불일치, 프랑스 대선 후 경제개혁을 둘러싼 갈등 증대 등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3. EU 경제전망

- 최근의 경기상황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EU와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여 2007년에도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독일의 연방산업통상부의 2007년 1~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독일기업의 투자 계획이 13%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8~9월의 7%보다 높은 수치임.
- 또한 프랑스 경제통계청(INSEE)의 4월 조사에서도 기업의 2007년 투자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의 2%를 능가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5년 8월 최저치에서 점차 상승하여 금년 4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가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가계소비의 급격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2007년 EU27의 경제성장률은 2.8~2.9%, 유로지역은 2.6~2.7%로 예상됨.
- 2006년도에 호조를 보였던 EU27 경제는 기준금리 인상,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유로화 강세, 세계경기의 하락세 및 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2007년 말부터는 경기 확대에 제약이 점차 가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8년 EU27 경제성장률은 2.4~2.7%, 유로지역은 2.1~2.5% 정도로 2007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연합인포맥스 2007-06-18]

### 美, 2007 회계연도 연방적자 급감

세입 증가세가 지출 증가세를 웃돌면서 미국의 연방적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07회계연도 들어 지난 5월까지의 연방적자는 1,485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4.6% 감소했다고 밝혔다.

5월 적자는 677억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57.8%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청(IRS)의 세금업무 처리 방식이 연방적자 감소에 기여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IRS)이 4월에 세금 징수를 많이 해 5월분을 줄이는 식으로 세금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 덕분에 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07 회계연도 들어 세입과 지출은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인 가운데 세입증가율은 8%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2.5%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업들의 순익이 호조를 보였고 실업률도 낮은 덕분에 세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세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의회예산국(CBO)은 9월 30일 마감하는 2007 회계연도 기간에 연방적자가 1,770억달러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2,482억달러)보다도 28.7% 낮은 수준이다

[머니투데이 2007-06-13]

### IMF "고령화로 대규모 재정압박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재정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IMF는 지난 2주간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뒤 이날 내놓은 '2007년 한국 연례협약' 자료를 통해, "고령화는 수십 년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지만 이에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상당한 조정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경제성장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우선 우리 경제에 대해 '양호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여러 산업에 걸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성장세가 완만하게 상승해 올해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고유가로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도 한국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잘 유지될 것"이라며 "대외 경상수지는 올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내소비의 회복이 확고해지지 않는다고, 추가적인 유가상승이나 또 한 차례의 세계적인 금융혼란 같은 충격에 영향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고 장기적인 경기둔화의 위험도 수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정적인 위험요소들이 나타날 경우 한국은 금융통화적인 면을 포함해 거시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하락은 가계가 일시상환형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능력을 저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는 건강한 상태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들은 남아 있다"며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현재까지 문제의 징후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정책 및 행정, 공공지출 개혁, 공공부채 관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정책 수단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또 "한국은 현재 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

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뉴시스 2007-06-13]



# | 정책 흐름 |

-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개통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2006년말 부담금 수는 100개로 전년보다 2개 감소, 징수규모는 11조 9,534억원으로 경상GDP증가율(4.6%)과 동일수준 증가”

이 자료는 2007년 7월 4일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기획관실에서 발표한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기획예산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6.25일)를 거쳤으며, 7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06년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0개로 전년말 대비 2개가 감소하였음
  - 환경오염 방지목적 등으로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신설하고,

## 〈'06년도 부담금 수 변동내역〉

구분	부담금명
신설 (3개)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지역신보및전국신보연합회 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분리 (1개)	생태계보전협력금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리 신설
폐지 (△5개)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손괴자부담금(도로법), 여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여장관리법), 수익자부담금(사방사업법), 배출부과금(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통합 (△1개)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 별정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 기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중 해양생태계 사업을 분리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

금을 신설(1개 부담금 증가)하였으며,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등 부과 실효성이 없는 5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유사부담금의 통합으로 1개 부담금이 감소하였음

- 부담금 징수규모는 '05년 11조 4,296억원에서 '06년 11조 9,534억원으로 4.6% 증가하였음
  - 이는 경제규모 확대(경상GDP증가율 4.6%)에 따른 징수 증가와
  - 산림복구비 현실화, 석유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등 관련 부담금의 징수금액 변동에 기인

## 〈예시〉 정책적 목적을 위한 특정 부담금 징수금액 변동 내역

-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예치기준액 인상(23,085 → 24,497천 원/만㎡)으로 산림복구비용예치금 3,244억원증가
- 에너지사업 재원의 적기확충을 위한 부과율 인상(14원 → 16원/ℓ)으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2,468억원 증가
- 여유재원 증가에 따른 부과율 인하(45.91/1000 → 37/1000)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1,059억원 감소

- 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 재원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사용됨
  -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부

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전원개발의 촉진 및 전력공급 지원사업에 사용(10,062억원)

- 석유수입·판매 수익자에 대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부과를 통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에너지 관련사업에 사용(17,179억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 등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에 사용(6,018억원)
- 금융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 보증, 주택신용보증 등을 제공(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9,684억원)

-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3.1조원(26.2%)을 사용하였고,
  - 그 다음으로는 환경(1.9조원, 16.2%), 보증·금융(1.8조원, 15.1%), 보건·의료(1.5조원, 12.5%), 건설·교통(0.9조원, 7.8%) 순으로 사용하였음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부담금 신·증설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강화하여
  -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부담금이 그 부과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

〈참고〉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요약)

I. 추진배경

1. 세입세출 결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은 부담금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동 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정기국회 개회일 전까지 국회 제출
  - 총세입 결산액은 206조 2,108억원으로 예산

II.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1. 부담금 수 : ('05말)102개 → ('06말)100개

- 환경오염 방지 등 목적으로 신규 부담금 설치 3개
  -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지역신보및전국신보연합회 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기존 부담금의 부과대상 분리 신설 1개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중 공유수면내 개발사업 등 해양생태계 사업을 분리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신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과 실효성 등이 없는 부담금 폐지 5개
  -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 손괴자부담금(도로법)
  -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어장관리법)
  - 수익자부담금(사방사업법)
  - 배출부과금(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 각각 규정된 연구·개발출연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2개 → 1개)

- '기간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과 '별정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에 으로 통합

- '기반시설부담금' 의 근거법률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담금 수 추이〉**

■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02. 1월) 이후 부담금 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구분	'00	'01	'02	'03	'04	'05	'06
증가	3	12	2	6 <sup>1)</sup>	2	1	6 <sup>2)</sup>
감소	-	9	1	8	-	1	8 <sup>3)</sup>
부담금수	98	101	102	100	102	102	100

- 1) 부담금 관리대상에 누락된 기존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
- 2) 신규설치 3개, 분리신설 1개, 통합신설 1개, 근거법률변경 1개
  - 신규 설 치 :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지역신보및전국신보연합회 출연금
  - 분 리 신 설 : 해양생태계보전현력금
  - 통 합 신 설 : 전기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 근거법률변경 :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3) 폐지 5개, 통합폐지 2개, 근거법률변경 1개
  - 폐지 : 하수도법 상 손괴자부담금, 도로법 상 손괴자부담금, 사방사업법 상 수익자부담금,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상 배출부과금,
  - 통합폐지 : 기간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별정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 근거법률변경 : 기반시설부담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①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의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예치기준액 인상(23,085 → 24,497천원/만 m<sup>2</sup>)으로 예치금 3,244억원증가
- ② 고유가구조 및 온실가스 의무부담이행 등 여건변화에 따라 에너지사업 재원의 적기확충을 위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14원 → 16원/ℓ)으로 부담금 2,468억원 증가
- ③ 담배반출량의 증가(38.4 → 42.7억갑)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25억원 증가

■ 주요 감소요인

- 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부과요율 인하(45.91/1000 → 37/1000)로 부담금 1,059억원 감소
- ② 택지개발 감소 및 건축물 신·증축 감소 등으로 인해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1,702억원 감소
- ③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정악화로 인한 전년도 출연금 선수납분 정산(△2,245억원)등으로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779억원 감소

**2. 부담금 징수규모**

- '06년 부담금 징수규모는 11조 9,534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5,238억원 증)
  - '06년 경상 GDP 증가율(4.6%)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금 징수규모 증가
- 주요 증가요인

### <2006년도 주요 부담금 증감현황>

(단위: 억원)

부담금명	'05 실적	'06 실적	증감	비고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산림청)	4,738	7,982	3,2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치기준액 인상 : 평균 4.7% 인상 예)산지전용허가지 경사도 10도미만 23,085 → 24,497천 원/만㎡</li> <li>매년 예치액 재산정 및 차액 예치</li> <li>대부분(90%)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li> </ul>
석유수입· 판매 부과금 (산업자원부)	14,711	17,179	2,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부과금 부과율 인상('06.2.7) - 원유·석유·석유대체연료 (천연역청유, 유화연료 유 제외) : 14원 → 16원/ℓ</li> </ul>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보건복지부)	12,915	14,940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반출량 증가 - '05년 38.4 → '06년 42.7억갑 (4.3억갑 증)</li> </ul>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 (산업자원부)	11,121	10,062	△1,0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요율 인하 ('05.12.28 이후) - 전기요금의 45.91/1000 → 37/1000</li> </ul>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환경부)	5,954	4,252	△1,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개발 감소 및 건축물 신·증축 감소</li> </ul>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 출연금 (재정경제부)	9,157	7,378	△1,7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선수납분 정산액 △2,245억원</li> <li>출연요율 인상 - 용자금평잔 0.3% → 0.4%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합계)</li> </ul>
소계	58,596	61,793	3,197	
그 외 93개 부담금	55,700	57,741	2,041	
총 부담금	114,296	119,534	5,238	•전년대비 4.6% 증가

### 3. 부담금 사용내역

■ 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 재원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공공서비스 창출에 사용

#### ■ 주요 사업별 사용내역

-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부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전원개발의 촉진 및 전력공급 지원사업에 사용(10,062 억원)
- 석유수입·판매 수익자에 대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부과를 통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에너지 관련사업에 사용(17,179억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 등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에 사용(6,018억원)
- 금융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 보증, 주택신용보증 등을 제공(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9,684억원)

#### ■ 각 분야별 사용내역

-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26.2%를 사용
- 환경 분야에 16.2%, 보증·금융 분야에 15.1%, 보건·의료 분야에 12.5% 및 건설·교통 분야에 7.8%를 사용

### <2006년도 사용분야별 부담금 현황>

(단위: 억원)

	산업·정보·에너지	환경	보증·금융	보건·의료	건설·의료	기타	계
금액	31,336	19,425	18,008	14,940	9,286	26,539	119,534
비중(%)	26.2	16.2	15.1	12.5	7.8	22.2	100.0

### Ⅲ. 향후 부담금 운용방향

- 부담금 신·증설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강화하여
  -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부담금이 그 부과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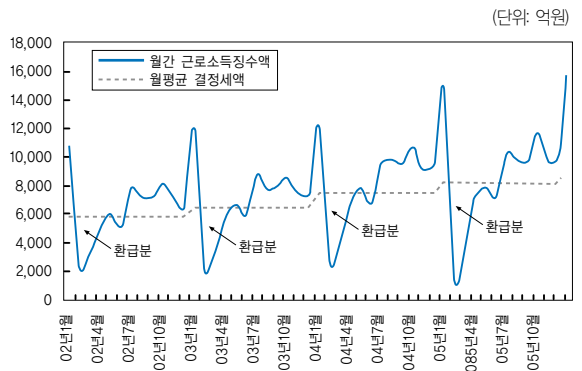
이 자료는 2007년 7월 3일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에서 발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임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실제부담세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의 근로자 원천징수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 받고 있음
  - '05년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납부할 세액은 9.8조원이나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은 13.7조원으로 최종 납부해야할 세액대비 40%가량 더 징수되었고 연말정산시 4.5조원이 환급되었음
  - 이와 같은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한 금액 대비 30%수준(C/B)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단위: 십억원, 천명)

	2003년	2004년	2005년
최종납부세액(A)	7,641	8,913	9,778
원천징수액(B)	9,745	11,453	13,687
환급세액(C)	2,613	3,170	4,555
최종납부세액대비 원천징수액(B/A) %	128%	128%	140%
원천징수액대비 환급세액(C/B) %	27%	28%	33%

[그림 1] 근로소득세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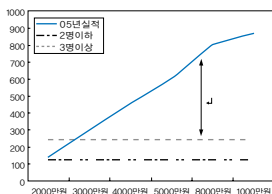


- 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이 선(先) 원천징수했다가 많이 후(後) 환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 직장이동이 많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소 징수했다가 나중에 추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점 등을 감안하여 간이 세액을 실제 세부담보다 높게 운용해온 측면이 있었고
  - 간이세액 계산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은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어느정도 가능하나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의 경우, 납세자별로 비용지출의 행태가 다양하여 실 지출액을 간이세액표에 사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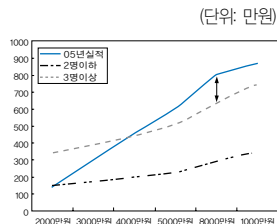
-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
  -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여
  -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수준을 초과하여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현행	개정
<b>■ 간이세액 산정방법</b> ○ 정확히 반영되는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li> </ul> ○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가족 2인이하 : 120만원</li> <li>• 부양가족 3인이상 : 240만원</li> </ul> </li> </ul>	- 현행유지  -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이하: 100만원* + 총급여의 2.5%</li> <li>• 3인이상: 240만원 + 총급여의 5.0%</li> </ul> *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급여비례적 공제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원천징수시점의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사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함임

[그림 2] 현행 간이세액표 특별공제액



[그림 3] 개정 간이세액표 특별공제액



-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감소효과는 급여수준별로 아래와 같음

(단위: 원/월)

연간급여	현행(A)	변경(B)	감소액(C=B-A)	감소율(C/A)
2천만원	4,300	1,310	△ 2,990 (年3.6만원)	△69.5%
3천만원	33,570	26,590	△ 6,980 (年8.4만원)	△20.8%
5천만원	265,350	230,070	△ 35,280 (年42.3만원)	△13.3%
8천만원	785,090	698,640	△ 86,450 (年103.7만원)	△11.0%
12천만원	1,714,960	1,539,960	△175,000 (年210.0만원)	△10.2%

\* 20세 이하 자녀2명을 부양하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할 계획
  - 원칙적으로 시행령 개정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 원천징수의무자가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중 개정간이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에 대해 향후 원천 징수시 이를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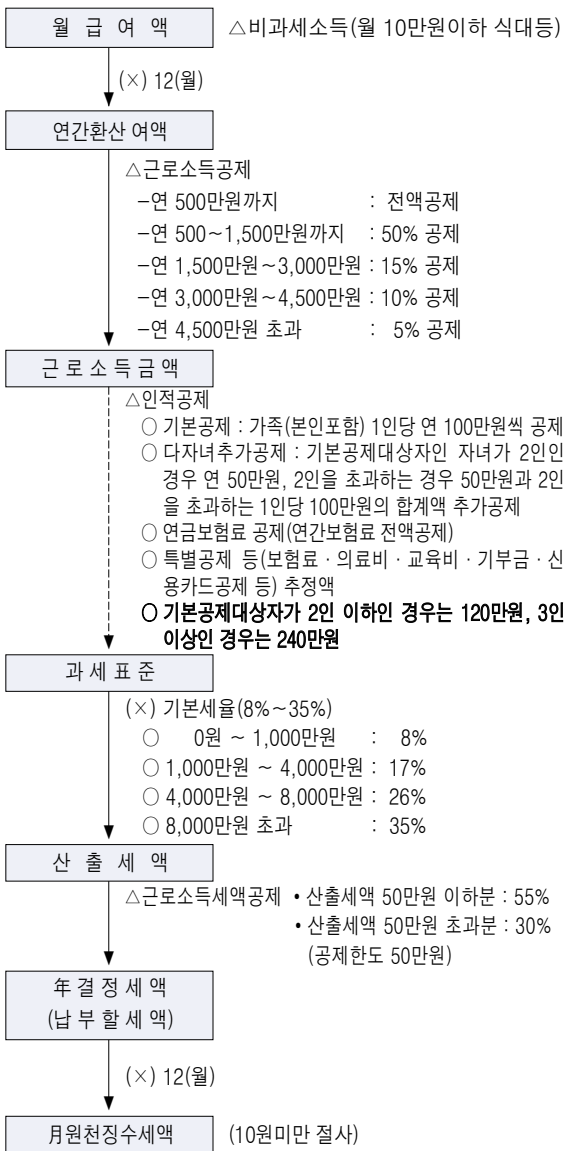
<참고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단, 특별공제는 실액공제가 대부분이므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

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 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참고 2〉 현행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계산체계



〈참고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세액 변화

[1인가구]

(단위: 원)

연간급여	현행 (a)	개정안 (b)	감소액 c=(a)-b	연간감소액 c×12개월	감소률 c/a
10,000,000	0	0	0	0	-
20,000,000	18,400	17,510	890	10,680	4.8%
30,000,000	83,470	75,700	7,770	93,240	9.3%
40,000,000	204,750	193,430	11,320	135,840	5.5%
50,000,000	331,930	317,130	14,800	177,600	4.5%
60,000,000	481,850	453,610	28,240	338,880	5.9%
70,000,000	684,390	650,820	33,570	402,840	4.9%
80,000,000	886,930	848,030	38,900	466,800	4.4%
90,000,000	1,099,350	1,054,860	44,490	533,880	4.0%
100,000,000	1,301,890	1,252,070	49,820	597,840	3.8%
110,000,000	1,576,070	1,501,670	74,400	892,800	4.7%
120,000,000	1,852,050	1,770,380	81,670	980,040	4.4%

[2인가구]

(단위: 원)

연간급여	현행 (a)	개정안 (b)	감소액 c=(a)-b	연간감소액 c×12개월	감소률 c/a
10,000,000	0	0	0	0	-
20,000,000	15,400	14,510	890	10,680	5.8%
30,000,000	69,300	61,820	7,480	89,760	10.8%
40,000,000	190,590	179,270	11,320	135,840	5.9%
50,000,000	317,760	302,960	14,800	177,600	4.7%
60,000,000	460,180	438,190	21,990	263,880	4.8%
70,000,000	662,720	629,160	33,560	402,720	5.1%
80,000,000	865,260	826,370	38,890	466,680	4.5%
90,000,000	1,077,680	1,033,200	44,480	533,760	4.1%
100,000,000	1,280,220	1,230,410	49,810	597,720	3.9%
110,000,000	1,546,900	1,472,500	74,400	892,800	4.8%
120,000,000	1,822,880	1,741,210	81,670	980,040	4.5%

[3인가구]

(단위: 원)

연간급여	현행 (a)	개정안 (b)	감소액 (c=a-b)	연간감소액 (c)×12개월	감소률 (c)/a
10,000,000	0	0	0	0	-
20,000,000	8,800	5,810	2,990	35,880	34.0%
30,000,000	45,440	33,590	11,850	142,200	26.1%
40,000,000	159,420	131,110	28,310	339,720	17.8%
50,000,000	286,600	251,320	35,280	423,360	12.3%
60,000,000	425,490	382,900	42,590	511,080	10.0%
70,000,000	615,050	539,260	75,790	909,480	12.3%
80,000,000	817,590	731,140	86,450	1,037,400	10.6%
90,000,000	1,030,010	932,380	97,630	1,171,560	9.5%
100,000,000	1,232,550	1,124,260	108,290	1,299,480	8.8%
110,000,000	1,482,740	1,322,260	160,480	1,925,760	10.8%
120,000,000	1,758,710	1,583,710	175,000	2,100,000	10.0%

\* 3인가구 : 20세 이하 자녀가 1인인 가구 전체

[4인가구]

(단위: 원)

연간급여	현행 (a)	개정안 (b)	감소액 (c=a-b)	연간감소액 (c)×12개월	감소률 (c)/a
10,000,000	0	0	0	0	-
20,000,000	4,300	1,310	2,990	35,880	69.5%
30,000,000	33,570	26,590	6,980	83,760	20.8%
40,000,000	138,170	109,860	28,310	339,720	20.5%
50,000,000	265,350	230,070	35,280	423,360	13.3%
60,000,000	404,240	361,650	42,590	511,080	10.5%
70,000,000	582,550	506,760	75,790	909,480	13.0%
80,000,000	785,090	698,640	86,450	1,037,400	11.0%
90,000,000	997,510	899,880	97,630	1,171,560	9.8%
100,000,000	1,200,050	1,091,760	108,290	1,299,480	9.0%
110,000,000	1,438,990	1,288,320	150,670	1,808,040	10.5%
120,000,000	1,714,960	1,539,960	175,000	2,100,000	10.2%

\* 4인가구 :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가구 전체

<참고 4> 근로소득

① 연봉 3,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독신인 김 과장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25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8만 3,47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7만 5,70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9만 3,24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250만원, 연봉 3,000만원, 홑벌이 기준)

(단위: 원)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자녀1)			4인가구(부부,자녀2)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69,300	61,820	89,760	45,440	33,590	142,200	33,570	26,590	83,760

② 연봉 6,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자녀2명을 키우고 있는 김 부장(4인가구)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50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40만 4,24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36만 1,65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51만 1,08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500만원, 연봉 6,000만원, 홑벌이 기준)

(단위: 원)

1인가구(독신)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자녀1)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481,850	453,610	338,880	460,180	438,190	263,880	425,490	382,900	511,080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 서울시민의 재산세액, 납세절차에는 변함없어 -

이 자료는 2007년 7월 6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에서 발표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자치구간 격차 해소」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 7월 3일 제26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그 동안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하여 1995년부터 자치구간의 세원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은 재산세액의 차이가 그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07년 현재 최고구와 최저구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14.8배에 이르고 있고, 재산세의 과표현실화가 끝나는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행정서비스의 격차 또한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그러나 자치구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크고 학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려 지금까지 입법화되지 못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대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간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내용은
  -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되, 서울시분 재산세

는 다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임.

- 이러한 공동과세 방안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공청회, 전문가 토론, 대안 마련 등을 통하여 쟁점을 해소하였음.
  - 서울시의 재산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주택분과 업무용 비주택분이 각각 50% 정도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 업무용 비주택분은 광역세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과세권을 갖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학계의 입장을 수용
  - 다른 한편으로는 강남·서초 등 세수가 감소되는 자치구의 충격 완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과세하는 공동과세율을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단계별로 인상 적용하도록 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을 수용
  - 서울시에서도 세수감소 자치구에 대한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러한 공동과세 제도의 경우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이나 절차에 있어 종전과 변함이 없음.
  - 서울시는 그동안 시세의 징수를 자치구에 위탁하여 왔기 때문에 징수절차에 변함이 없고, 다만 납세고지서에 시세분과 자치구세분이 구분 표기되게 됨.
  -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입장에서선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종전대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 시민의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서울 이외 자치단체 『세원불균형 완화 방안』도 점진적 추진 계획임.

- 정부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의 세원불균형 완화효과를 분석한 다음,
-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 등 계층별 특성을 감안,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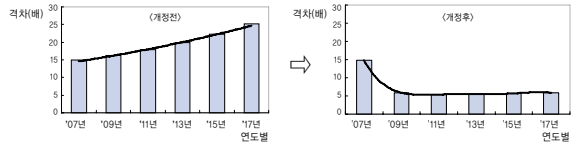
■ 이번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데 또 하나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그 동안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이양 문제를 검토하면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던 특정 지역의 초과세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게 됨으로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배분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서울시 공동재산세 개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세 목	구세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구분 재산세
과세권자	각 구청장	서울시장, 각 구청장
공동과세율	-	시세분('08년 : 40%, '09년 : 45%, '10년 이후 50%)
부과·징수권자	각 구청장	각 구청장(서울시장이 시세분재산세의 부과·징수권을 구청장에 게 위임)
세입처리	전액 각 구의 세입으로 처리	- 구분재산세는 당해 구의 재산세입으로 처리하고, - 특별시분 재산세는 서울시로 각각 납입 후, 다시 각 구에 균등배분 * 각 구에서는 서울시 배분액을 당해구청의 재산세입으로 처리

〈연도별 세원불균형 변동추이〉



연도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개정전	14.8배	15.4배	16.1배	16.9배	17.8배	18.7배	19.8배	20.9배	22.1배	23.5배	25.1배
개정후	14.8배	6.5배	5.9배	5.4배	5.4배	5.5배	5.5배	5.6배	5.7배	5.8배	5.9배

문답자료

1.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조치인가?

-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기초세로 할 것인지, 광역세로 할 것인지는 세목의 특성과 사무배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임
- 서울시 전체 재산세를 주거분(주택)과 비주거분으로 구분할 경우 그 세수규모가 약 50 : 50 정도로서
  - 비주거분 재산세는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한 과세로써 광역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임

2. 당초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 공동과세로 바뀐 이유는?

- 당초 특별시세 중 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고, 구세 중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세목교환 방식(우원식의원 '05.11.9 발의)에 대하여 논의가 있던 중
- 재산세의 과세권은 자치구에 그대로 두고,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시로 납입하는 자치구 재원조정 방식(김충환의원 '05.12.6 발의)이 제

기되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 서울시와 자치구의 이해와 지방세법과의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절충안인 공동과세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임

### 3. 위헌성 문제는 없는지?

- 이종과세, 법 적용의 보편성 및 형평성, 과잉금지 원칙 등

#### ① 이종과세 문제

-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 총액은 변하지 않고 특별시와 구에서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종부담을 초래하는 이종과세가 아님(시민부담의 증가 없이 과세권만 분할)
-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세원(과세표준)을 공유하여 각각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조정 툴(tool)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일본 담배세, 미국 지방정부 소득세 등)

#### ② 서울시만의 적용이 법의 보편성 및 형평성 원칙 위배 문제

- 법은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일반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
  -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닌 과세권을 시와 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세정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 이러한 특례는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울산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선례가 있고 또한 특정세목에 특정세율을 적용하는 입법례도 있음
- \* 지방세법상 과세특례: 재산세의 대도시종과세가 대도시인구집중지역을 목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재원불균형 완화방안은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 「광역시 자치구세」등 자치단체 계층별 특성

을 감안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임

#### ③ 과잉금지 원칙 위배 문제

-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동과세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판단여부는
  - 공동과세방안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화성, 법익의 균형성 등 네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나, 위 네 가지 요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① (목적의 정당성)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재산세 세수입의 격차가 심하고 이러한 세수입의 차이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임
- ② (방법의 적정성) 서울시 교부금 조정, 국고보조율 차등화, 세원재배분 등 재정균형화의 방법중 서울시 교부금은 자치구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고, 국고보조율을 자치구간 차등화할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며, 세원재배분 방법 중 세목교환 방식은 자치구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 대다수 자치구가 동의하는 공동과세방안을 선택하게 된 것임
- ③ (피해의 최소화성) 기여자치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과세율의 3년간 단계별 조정방식을 택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재산세 과표현실화로 세수회복이 이루어지는 2010년까지 결손세수를 년차별로 60%, 40%, 20%씩 보전할 계획으로 있음
- ④ (법익의 균형성) 기여자치구의 재정자치권 훼손과 수혜자치구의 균형발전이란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일부 자치구의 세수입이 다소 줄더라도 대다수의 자치구에 최소한의 재정력을 뒷받침하게 되고, 자치구간

세수격차도 현재의 14.8배에서 '08년에는 6.47배, '09년에는 5.9배, '17년의 경우 25.1배에서 5.9배로 완화되므로 서울시 자치구간 삶의 질 형평화에 기여하는 법익의 균형성 유지 가능

#### 4. 외국의 공동과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공동세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의 공동세 제도를 들 수 있음
  - 공동세 세목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총 조세수입의 75% 점유)
  - 배분비율

조세종류	연방	주	자치단체
부가가치세	49.6%	50.4%	-
소득세(원천징수분 및 연말정산분)	42.5%	42.5%	15.0%
소득세(분리과세분)	44.0%	44.0%	12.0%
법인세	50.0%	50.0%	-
영업세	약 7.5%	약 7.5%	약 85.0%

- 그 외 다른 나라의 사례로
  - 일본 담배세(관련 천과피당) : 도부현 969엔, 시정촌 2,977엔, 국가 3,126엔
  - 일본의 지방소비세 : 소비세액(국세)의 25%를 과세
  - 일본 개인주민세 소득할 : 소득세액의 총 10%
    - 개인 도도부현민세 소득할 4%, 개인 시정촌민세 소득할 6%
  - 미국의 지방정부 소득세 : 연방소득세와 중복과세
    - 연방소득세 과표를 주소소득세 과표로 하는 주 :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 8개주
    - 연방소득세 과표를 일부조정하여 주소소득세 과표로 하는 주 : 아리조나, 켄터키 등 26개주
    - 연방소득세의 일정률을 주소소득세로 하는

주 : 버몬트 등 3개주

※ 우리나라의 다른 세목 사례

- 주민세 소득할 : 국세인 법인세 · 소득세액의 10%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및 과세물건 동일
- 주행세와 교통세 : 과세표준 및 과세물건 동일
-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 : 과세물건 동일

#### 5. 재정 불균형 완화의 실효성은 있는가?

- 현재 서울시의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14.8배이고, 재산세의 과표현실화가 종료되는 2017년에는 그 격차가 25.1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세원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나,
  - 공동과세 도입으로 그 격차가 '08년(서울시 과세권 비율 40%) 6.47배, '09년(서울시 과세권 비율 45%) 5.9배, '10년(서울시 과세권 비율 50%) 5.36배, 2017년 5.91배로 줄어들게 되어 재정불균형이 완화됨
- 또한, '08년 기준으로 세수감소구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6개구로 총 1,577억원(구당 평균감소액 263억원)이 감소되나
  - 세수가 증가하는 구는 총 19개구에 1,577억원(평균 83억)이 증가되며, 이는 19개 자치구 세입예산 총액 6,935억원의 23%, '07년도 19개 자치구 총예산 41,182억원의 4%정 도입

#### 6. 이번 조치로 손해 보는 구와 이득을 보는 구는?

- 이번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08년(서울시 40%) 기준으로 총 25개 구 중 6개 구가 세수가 감소됨
  - 감소규모 : 종로구 11억원, 중구 95억원, 영등포구 42억원, 서초구 425억원, 강남구 764억원, 송파구 239억원 정도임
- 감소 구에 대하여는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3년간은 년차별로 감소 세수 일부('08년 60%, '09년 40%, '10년 20% 씩)를 보전해 줄 계획임

## 7. 손해 보는 강남구 등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 서울시 자치구 간 세원불균형 완화 문제는 '95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과제로 2005년에는 공동세율 35%까지 접근하였으나 결렬된 바 있고 불균형완화의 필요성은 서울시와 전 자치구가 인정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재원보전대책 등을 중심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6년 4월에는 국회 행자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2007년 2월에는 행자부 주관 실무협의 등을 거친 바 있고 학회와 언론에서도 여러 번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 법령, 질의회신, 심사·판결정문, 판결문 등 14만여건 모두 공개 -

이 자료는 2007년 7월 4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계 최초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과 공유」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고객인 국민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에게도 무료로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7월 3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가졌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
  -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행정에 있어 부실과세는 국민에게 형언할 수 없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므로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 그간 국세청에서는 “과세품질 혁신없이 국세행정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과세기준자문, 과세쟁점자문, 부실과세원인분석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영세 납세자 소액 사건 집중 처리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등 제도를 시행 중이나
    - 부실과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국세관련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는 ‘과세인프라’로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했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과
  - 국세청에서는 '05년 2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T/F」를 구성, 흩어져 있던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DB화하기 시작하여

-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각종 정보를 수록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06년 11월 내부 직원에게 시험 개통하였으며
- 시험 개통 이후 나타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종 법령정보를 재점검하여 14만여건의 국세법령정보를 수록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일반 국민에게 7월 3일부터 개방하게 되었음

<표> 국세법령정보 DB 현황 ('07년 6월말 현재)

(단위: 건)					
계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	판결문	기타
141,051	74,215	24,822	21,052	4,618	16,344

- 세계 초일류 세정을 뒷받침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행정기관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개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 OECD국세청장회의, 리스캐슬그룹회의 및 다자·양자간 국세청장 회의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결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 기대효과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추가 예산 부담없이 다시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 납세자가 민간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해 왔던 금전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 민간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던 영세 납세자는 국세법령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이번 개통으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도 동일한 정보를 공유, 국세관련업무가 통일성을 갖게 되고
    - 국세청은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법령정보 부족에 따라 발생하던 부실 과세와 불복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 '07.4월 불복청구(4,140건) 전년 동기(4,890건)대비 15.3% 감소
- 아울러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국민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되어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 생산되는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조문별 입법 취지 및 세법 조문별 해설을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세정」을 뒷받침하는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 〈참고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방법 및 주요 특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및 검색
  -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

속한 후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좌측하단 POPUP ZONE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클릭

-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 초기 화면 빠른 검색 : 검색어만으로 검색
  - 통합검색(메뉴) : 검색어, 생산기간, 정보종류 및 세목을 지정하여 검색
  - 법령(메뉴) : 법령 조문별로 관련 법령정보를 검색
  - 종류별 정보(메뉴) : 질의회신 판례 등 정보종류별로 검색
  - 주제별 정보(메뉴) : 정형화된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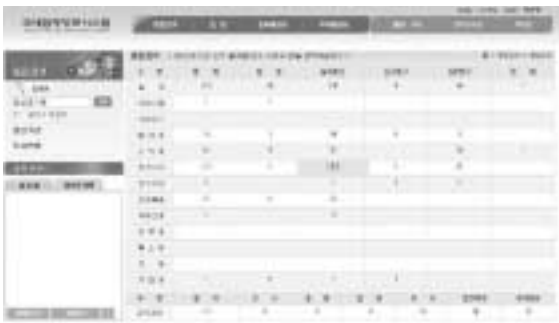
-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을 망라하여 수록
- 초기화면 빠른검색 기능과 세목·정보종류별로 검색결과를 보여주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 검색목록에서 제목과 요지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내용을 보지 않고도 찾고자 하는 정보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검색한 정보는 검색바구니의 '열어 본 목록'에 자동 보관되어 나중에 쉽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주요 화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초기 화면



■ 검색어에 의한 검색결과 화면



■ 검색목록 화면



■ 검색내용 화면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이 자료는 2007년 6월 20일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한국 경제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과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연평균 4.3% 성장
  - 그러나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
- 따라서, 한국경제는 이들 구조적 문제점을 조기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추진 필요
  -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목표 달성에 집중 필요
  -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 등 효율적 시장 조성에 역점을 둘 필요
    -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최근 부동산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 분양가격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조치들이 장기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주택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전재정 유지 필요
  -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 노력 필요
  - 노인층 빈곤감소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 기초노령연금 도입·확대하고, 기업연금 확

대 필요

- 외국인 투자유치, FTA 체결 확대 등 개방, 외국인 노동력 유입확대가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

## 1. 거시경제 여건 및 정책

### ① 최근 경제성장 평가

- 한국 경제는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 중국으로부터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 02년 이후 연평균 4.3% 성장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국가 평균의 2/3 수준으로 증가
  - 반면, 내수는 신용카드 거품붕괴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
  -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원화강세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를 하회

### ② 한국 경제성장 전망

- 07년 1/4분기 성장률은 내수부진을 반영하여 4%미만(계절조정 연율 성장률)에 그쳤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07년 중 4.3% 성장률 예상
  - 민간소비는 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다소 둔화

- 투자부진으로 GDP 대비 투자비중의 하향 추세 지속
- 수출은 세계 교역량 증가세의 둔화 및 원화 강세로 인해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05년	06년	07년 <sup>a)</sup>	08년 <sup>a)</sup>
• GDP	4.2	5.0	4.3	4.8
- 민간소비	3.6	4.2	4.4	3.6
- 총고정투자	2.4	3.2	4.2	3.0
- 수출	8.5	12.4	10.0	12.2
• 실업률	3.7	3.5	3.4	3.4
• 소비자물가	2.8	2.2	2.5	3.0
• 경상수지(對 GDP)	1.9	0.7	△0.0	?0.4

### ③ 환율정책

- 원화는 선제적 통화긴축정책<sup>\*</sup>에 의한 큰 폭의 자본수지 흑자발생 등으로 05년 말 이후 달러화 대비 9% 하락
- 추세적 흐름은 수용하면서, 급격한 절상속도 완화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smoothing operation) 조치가 이루어짐
- \* 단기정책금리를 05년 10월 ~ 06년 8월동안 3.25%에서 4.5%까지 인상

#### <정책권고>

- 외환시장 개입의 비용과 위험을 감안하여 유연한 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
- 외환보유액(2,470억불, GDP의 27%)이 단기외채의 두배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추가적 외환보유액 축적은 불필요
- 최근의 자본유출 규제완화 조치가 환율하락 압력완화를 위해 효과적이지만, 단기적 유출축진 조치는 지양할 필요

### ④ 통화 정책

- 한국은행이 유동성 증가세<sup>\*</sup>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을 인상
- \* 자본유입 및 주택관련 대출수요 증가로 인해 M2 증가율이 06년 4분기에 03년 이후 최고수준인 11%에 근접
- 그러나,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
-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상황이므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
- 상품과 서비스 가격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를 소홀히 할 우려

#### <정책권고>

- 한국은행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집중할 필요
- \* 부동산 시장 조치는 적절한 별도의 조치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
-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성장과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

## 2. 부동산 및 지역개발 정책 <5~7>

- 00년 이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수도권 내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급등
- 규제로 인한 택지확보 어려움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반면, 교육 등 양질의 생활여건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
- \* ① 07~10년 동안 공공부문 주도로 수도권내 주택공급 확대 ②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현재 80만호 → 전체 주택재고의 20%인 340만호) ③ 자금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펀드 신설 등
- 주택 수요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관건

- 또한,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과 더불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다수의 정책 실시
- \* ① 수도권 지역 LTV비율 축소, ② 종합부동산세 도입(05년) 등 ③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인상, 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상한제 도입 등
- 이러한 정책들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
- 이들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전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정책권고>**

-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수도권 내 거주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 필요
-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주택공급 촉진 유도
- 향후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져서 주택공급이 지금보다 더욱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면 분양가격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
- 정부는 주택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3. 재정정책**

**⑧ 한국의 재정상황**

- 아직 건전한 편이나, 02년 이후 정부지출이 세입 증가율을 넘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 확대(對 GDP 비율 : 02년  $\Delta 0.2\%$  → 06년  $\Delta 0.8\%$ )
- \* 사회보장기금 흑자,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을 제외한 재정수지

**⑨ 재정·조세정책 우선순위**

- 중기적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정부지출 제한 및 세제개혁 필요
- 이는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복지비용 등 미래 지출압력에 대한 대비에 기여할 것

**⑩ 공공 사회복지지출 확대**

- 향후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급격히 증가할 전망(對 GDP 비율 : 현재 6% → 2030년 21%)
- 선진국의 과거사례를 감안, 사회복지지출 확대시 신중할 필요
- \* 사회복지지출의 현저한 증가가 급격한 조세부담을 증가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정책권고>**

- 07년 정부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 7.5%로 제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인 1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6.4%를 달성
- 세제개혁은 관대한 조세감면과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기반 확대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기준 확대 등 강력하고 일관된 稅政필요

**4. 공공 사회복지 지출(급속한 고령화 대비)**

**⑪ 고령화 대비 정책**

- 고령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출산율(05년 1.08)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제고하고, 고령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퇴직연령을 늦추거나 철폐할 필요

**<정책권고>**

-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가계의 출산 저해요인 제거
-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적정규모로 공급 필요
- 단,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자간 경쟁촉진이 바람직
- \* 민간보육시설 공급자에 대한 가격 상한제 철폐가 전제될 필요
- 그 밖에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도입 필요

**12 공공연금 제도개혁**

- 국민연금은 현재 적용 대상자가 적고, 평균 기여기간도 길지 않아 노인층 포함가구의 빈곤 완화에 어려움
- \* 적용범위 : 생산가능인구 1/3수준, 평균 기여기간 : 2030년 17.6년 전망

**<정책권고>**

- 기초노령연금제도(노인의 약 60%가 수혜자) 도입은 비록 수령액이 평균임금의 5%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나 합리적인 정책방향

**13 기타 연금제도 개혁**

-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영업자 가입증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
-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최저 생계비(평균임금의 20%)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자도 확대할 나할 필요

**<정책권고>**

- 기초연금 혜택이 상당 수준으로 확대된 이후 국민연금 혜택을 축소하여 노인층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지출 수준을 제한할 필요
- 당분간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할 필요

- 그 밖에 특수직 연금개혁을 통해 정부지원을 축소하고, 국민연금과의 이동허용(portability) 필요성

**14 기업연금 제도 도입**

-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정부가 05년말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연금제도 등 민간저축을 적극 활용 필요
- 현재 일부 대기업만이 기업연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기업연금제도 형태 선택의 어려움\*에도 일부 기인
- \* 노사는 합의에 의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중 선택가능

**<정책권고>**

- 관련 세제를 활용하여 기업에게 고령 근로자를 은퇴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조속히 폐지
- 노동이동성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촉진

**15 건강보험제도 개혁**

- 현재 공공 의료지출은 낮은 수준(GDP 대비 3%수준)이나, 고령화 및 소득증대로 인해 2050년 GDP 대비 6~8%까지 증가할 전망
- 의료지출 상승 제한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필요

**<정책권고>**

- 건강보험제도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 경감을 지양하는 한편, 저소득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제고
- 의료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혁 필요
- 건강보험 공단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구매자 역할 수행,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이외의 지출 시스템 채택 필요
- 약제비가 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약제공급 체계 개편)
- 영리기업의 병원설립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 의료부문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허용

### 16 노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시설 이용 수준(노인의 0.4%)은 OECD 평균(4.5%)보다 낮은 수준
  - 정부는 06~08년간 1,000개소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 08년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
- \* 최초 기여율은 임금소득의 0.1%, 수혜자 규모는 노인인구의 1.7%로 제한 전망

#### <정책권고>

-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바우처 제도(가게에게 바우처 제공하고, 민간기업들이 관련 서비스 제공)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과도한 지출억제를 위해서 재가 요양서비스를 우대하고, 경미한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한 필요

### 17 공적부조제도 확대

-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90년대 중반 전체인구의 9% → 00년 13%)하여 OECD 평균을 상회
  - 한편,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이 상대 빈곤을 완화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정책권고>

- 공적부조 수혜대상을 확대(소득·자산기준, 부양가족 여부 등 수혜조건 완화)하여 가계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 확보가 중요
-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공적부조제도 개혁 필요

### 18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격차·빈곤문제 발생
  - \* 최근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크게 상승(01년 17% → 05년 29%)하였고, 비정규직(임시직 포함) 임금은 정

규직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

-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및 사회보험 제도 미편입 등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부추기는 효과
- \* 정규직의 4/5이상이 각종 사회보험 대상자인 반면, 비정규직의 2/3은 이중 어느 하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

#### <정책권고>

-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고용유인 축소를 위해 사업장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필요

### 19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완화는 소득계층간 형평성 개선 및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
  - 한편, 기업이 낮은 임금요인 외 고용 유연성 확보차원(정규직 해고 어려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한다는 점 감안할 필요

#### <정책권고>

-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의 점진적 감소를 위해서는 정규직 보호수준을 완화시킬 필요
- 또한,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률'이 전반적인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

## 5. 세계화 : 생산성 향상

### 20 외국인 투자 유치

-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내수 대비 수입규모(import penetration), 외국인 노동자 비중 등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둔화되는 추세

**<정책권고>**

- 외국인 투자유입 촉진 필요
-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경간 M&A 활성화 및 주요 부문의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등 추가적 규제 완화
- 상품시장, 특히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완화
- 기업환경개선 및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관행 정착
- 경제자유구역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
- 주기적으로 운영편익과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을 비교·평가하여 운영 합리화
-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된 규제개혁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21 적극적인 FTA 추진**

- OECD 국가 중 수입품의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규제를 추가개선 필요
  - 최근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FTA 추진 중이지만, 농업부문의 높은 보호수준이 협상의 장애요인

**<정책권고>**

- 다자간 무역협상 및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 추진 필요
-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을 완화하여 FTA 체결을 원활하게 하고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하는 것이 중요
- FTA 대상에 서비스 부문을 적극 포함하여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제고가 필요

**22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 활용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국경제에 효용이 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필요

**<정책권고>**

-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관련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확대하고, 이들의 서비스 부문 종사를 허용
- 현재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6%에 불과한 외국의 전문기술 인력 유입을 촉진할 필요
- 현재 12개 부처에서 관여하고 있는 외국인력 유입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streamlining) 필요



# | 재정통계 |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 특별회계 규모 추이

1.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단위: 1948~1951년도 백만원(圓), 1952~1961년도 백만원, 1962~2005년도 백만원)

	세입		세출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948	24,292	884	24,292	1,685
1949	196,695	128,840	194,263	124,801
1950	372,902	270,831	372,887	260,312
1951	1,576,007	1,342,732	1,576,007	1,291,932
1952	55,496	50,707	55,496	47,842
1953	170,826	144,836	170,826	137,830
1954	487,183	318,264	487,183	296,025
1955	1,071,665	852,193	1,071,665	728,261
1957	969,614	994,043	969,614	776,958
1958	780,850	855,124	780,850	686,260
1959	631,050	672,448	631,050	598,282
1960	643,733	690,464	643,733	540,074
1961	725,849	643,574	725,849	564,602
1962	98,241	86,409	94,599	80,147
1963	112,943	112,518	112,943	106,548
1964	127,822	120,562	127,822	112,367
1965	142,452	138,175	142,452	130,133
1966	224,281	216,695	224,281	208,632
1967	267,507	260,963	267,507	243,205
1968	364,174	338,662	364,174	327,505
1969	530,521	520,514	530,521	503,761
1970	486,013	482,810	543,559	458,814
1971	611,263	570,247	611,263	549,331
1972	797,695	768,797	797,695	744,133
1973	769,132	770,118	769,132	734,225
1974	1,024,114	1,050,376	1,024,114	989,096
1975	1,742,055	1,750,013	1,742,055	1,686,340
1976	2,227,460	2,172,899	2,227,460	2,068,929
1977	1,922,642	1,936,189	1,922,642	1,821,613
1978	1,922,642	1,936,189	1,922,642	1,821,613
1979	2,397,190	2,375,498	2,397,190	2,282,018
1980	3,165,977	3,033,403	3,165,977	2,927,548
1981	4,454,901	4,308,815	4,454,899	4,207,953
1982	6,157,906	5,587,095	6,157,906	5,458,413
1983	5,223,652	4,972,444	5,223,652	4,779,254

	세입		세출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984	6,253,984	6,184,450	6,253,984	5,954,767
1985	6,316,157	6,325,621	6,316,157	6,059,993
1986	7,210,059	7,148,388	7,210,059	6,957,714
1987	7,630,203	5,357,124	7,630,203	5,155,889
1988	7,732,205	7,251,065	7,732,205	7,046,945
1989	11,419,196	11,487,053	11,419,196	10,949,347
1990	11,773,144	11,830,349	11,773,144	11,046,124
1991	15,283,507	15,790,798	15,283,507	14,713,736
1992	18,588,647	18,270,263	18,588,647	17,089,803
1993	23,962,283	24,196,006	23,962,283	22,303,818
1994	34,309,365	35,720,658	34,309,365	32,489,095
1995	40,600,119	42,437,038	40,600,119	38,132,456
1996	45,611,326	48,251,141	45,611,326	43,559,004
1997	50,692,231	51,162,263	50,692,231	46,567,390
1998	58,911,011	57,925,699	58,911,011	54,232,417
1999	64,840,375	65,704,456	64,840,375	61,670,624
2000	67,775,242	69,090,655	67,775,242	64,787,524
2001	66,065,991	66,931,766	66,065,991	63,070,213
2002	67,817,458	70,003,866	67,817,458	64,365,806
2003	73,767,021	75,673,933	73,767,021	70,780,828
2004	67,759,406	68,500,343	67,759,406	64,958,241
2005	60,625,656	61,329,006	60,625,656	58,192,145

주: 1956년도 자료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연도.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통계자료>, 제3집, 1961.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1.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	전매사업	통신사업	교통(철도)사업	조달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
1948 <sup>2)</sup>	-	-	-	-	-	-	-
1949	675	-	327	34	312	-	2
1950	1,942	1,131	266	63	480	-	2
1951	6,035	3,147	1,810	131	942	-	5
1952	18,537	9,508	6,202	447	2,366	-	14
1953	37,958	22,177	9,562	1,023	5,155	-	41
1954	68,806	34,014	18,080	2,747	13,861	-	104
1955	170,256	75,064	49,211	9,517	36,143	-	321
1957	189,387	90,483	49,483	11,418	37,665	-	338
1958	202,587	76,978	55,495	14,288	55,407	-	419
1959	204,037	59,225	62,826	18,929	62,380	-	677
1960	205,802	49,928	66,310	22,870	65,912	-	782
1961	242	72	77	60	26	6	1
1962	287	110	54	72	31	18	2
1963	546	138	174	150	58	23	3
1964	645	179	201	133	97	31	4
1965	735	160	245	173	108	43	6
1966	1,164	283	335	272	214	49	11
1967	1,318	273	436	331	257	3	18
1968	1,768	345	624	437	336	2	24
1969	2,524	760	837	458	423	5	41
1970	2,023	13	1,016	433	504	7	50
1971	2,534	14	1,317	531	594	9	69
1972	3,178	20	1,615	667	774	9	93
1973	3,763	26	2,077	643	891	11	115
1974	5,410	24	2,763	1,042	1,411	18	152
1975	8,583	30	4,480	1,566	2,297	29	181
1976	10,792	39	5,621	2,020	3,010	31	71
1977 <sup>6)</sup>	13,164	47	6,869	2,433	3,771	44	
1978	17,103	65	9,080	2,835	5,062	61	
1979	21,260	74	11,120	3,899	6,042	125	
1980	31,332	86	15,038	4,881	11,123	204	
1981	40,378	109	19,188	5,404	15,467	210	
1982	31,186	118	21,752	6,655	2,446	215	
1983	33,016	118	23,163	6,898	2,571	266	
1984	34,603	115	23,326	7,813	3,118	231	
1985	35,748	120	23,567	8,507	3,387	167	
1986	41,217	126	27,208	9,109	4,590	184	
1987	21,106	168	5,739	9,817	5,184	198	
1988	17,101	160		6,273	10,425	243	
1989	18,708	172		6,841	11,443	252	
1990	21,072	192		7,954	12,637	289	
1991	26,659	224		9,542	16,496	397	
1992	31,550	253		11,209	19,511	577	
1993	34,757	262		12,896	20,745	854	
1994	64,263	27,161		15,795	20,202	1,105	
1995	59,843	17,275		18,525	23,188	854	
1996	65,045	14,734		21,711	27,474	1,126	
1997	77,520	14,839		27,098	34,359	1,223	
1998	78,342	12,837		30,731	33,576	1,199	
1999	82,043	12,483		34,732	33,456	1,372	
2000	88,686	11,397		34,139	38,740	1,981	
2001	102,845	11,241		39,487	45,941	1,271	
2002	114,556	12,726		42,316	52,532	1,372	
2003	127,642	15,787		42,317	61,966	1,153	
2004	112,035	14,703		42,244	46,977	1,420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책임운영기관	2. 기타특별회계	외자 <sup>3)</sup>	관재청 <sup>4)</sup>	방송국	국책금	귀속농지관리국
1948 <sup>2)</sup>		17	8	9	-	-	-
1949		574	419	12	2	91	48
1950		661	470	53	5	4	128
1951		6,885	3,119	-	6	442	488
1952		29,305	1,565	-	-	1,296	-
1953		99,872	2,940	1,032	-	2,063	-
1954		227,218	5,243	2,895		3,550	
1955		558,006	13,118	-		14,630	
1957		587,572	13,789	-		19,088	
1958		483,674	12,940	-		-	
1959		394,245	10,541	-		-	
1960		334,272	7,465	-		-	
1961		323					
1962		515					
1963		522					
1964		478					
1965		567					
1966		922					
1967		1,114					
1968		1,506					
1969		2,514					
1970		2,566					
1971		2,960					
1972		4,264					
1973		3,578					
1974		4,481					
1975		8,278					
1976		9,900					
1977 <sup>2)</sup>		5,053					
1978		5,718					
1979		8,016					
1980		10,746					
1981		14,206					
1982		16,608					
1983		16,756					
1984		24,946					
1985		24,852					
1986		28,360					
1987		30,452					
1988		53,368					
1989		90,784					
1990		89,388					
1991		120,479					
1992		139,348					
1993		188,281					
1994		260,628					
1995		321,482					
1996		370,545					
1997		388,154					
1998		463,982					
1999		534,663					
2000		559,189					
2001	2,430	527,857					
2002	4,904	529,102					
2003	5,610	580,166					
2004	6,420	537,547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연도	후생복표	애국복권	귀속재산처리	한미경제협정예의한	대유자금통용	경제조정	국립극장
1948 <sup>2)</sup>	-	-	-	-	-	-	-
1949	2	-	-	-	-	-	-
1950	1	-	-	-	-	-	-
1951	-	30	227	39	2,534	-	-
1952	-	-	381	-	7,566	16,371	3
1953	-	-	-	-	38,442	41,802	26
1954	-	-	-	-	-	12,464	22
1955	-	350	7,858	-	-	9,825	25
1957	-	678	11,548	-	-	5,338	-
1958	-	-	9,272	-	-	1,339	-
1959	-	-	5,887	-	-	9,646	-
1960	-	-	7,872	-	-	18,756	-
1961	-	-	8	-	-	-	-
1962	-	-	18	-	-	-	-
1963	-	-	9	-	-	-	-
1964	-	-	-	-	-	-	-
1965	-	-	-	-	-	-	-
1966	-	-	-	-	-	-	-
1967	-	-	-	-	-	-	-
1968	-	-	-	-	-	-	-
1969	-	-	-	-	-	-	-
1970	-	-	-	-	-	-	-
1971	-	-	-	-	-	-	-
1972	-	-	-	-	-	-	-
1973	-	-	-	-	-	-	-
1974	-	-	-	-	-	-	-
1975	-	-	-	-	-	-	-
1976	-	-	-	-	-	-	-
1977 <sup>3)</sup>	-	-	-	-	-	-	-
1978	-	-	-	-	-	-	-
1979	-	-	-	-	-	-	-
1980	-	-	-	-	-	-	-
1981	-	-	-	-	-	-	-
1982	-	-	-	-	-	-	-
1983	-	-	-	-	-	-	-
1984	-	-	-	-	-	-	-
1985	-	-	-	-	-	-	-
1986	-	-	-	-	-	-	-
1987	-	-	-	-	-	-	-
1988	-	-	-	-	-	-	-
1989	-	-	-	-	-	-	-
1990	-	-	-	-	-	-	-
1991	-	-	-	-	-	-	-
1992	-	-	-	-	-	-	-
1993	-	-	-	-	-	-	-
1994	-	-	-	-	-	-	-
1995	-	-	-	-	-	-	-
1996	-	-	-	-	-	-	-
1997	-	-	-	-	-	-	-
1998	-	-	-	-	-	-	-
1999	-	-	-	-	-	-	-
2000	-	-	-	-	-	-	-
2001	-	-	-	-	-	-	-
2002	-	-	-	-	-	-	-
2003	-	-	-	-	-	-	-
2004	-	-	-	-	-	-	-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연도	농지개혁사업	구황실재산관리	대유자금	산업부흥국채금	전란수습비	경제부흥	국방비
1948 <sup>9)</sup>	-	-	-	-	-	-	-
1949	-	-	-	-	-	-	-
1950	-	-	-	-	-	-	-
1951	-	-	-	-	-	-	-
1952	2,123	-	-	-	-	-	-
1953	3,471	11	5,085	5,000	-	-	-
1954	7,066	121	99,371	12,878	76,148	7,460	-
1955	7,558	210	338,511	19,297	-	40,245	106,379
1957	5,523	225	303,129	29,517	-	86,275	112,462
1958	12,294	212	369,096	-	-	78,521	-
1959	5,452	305	302,957	-	-	59,457	-
1960	2,068	316	245,633	-	-	47,633	-
1961	2	1	226	-	-	35	-
1962	-	1	308	-	-	44	-
1963	-	2	255	-	-	145	-
1964	-	-	254	-	-	117	-
1965	-	-	284	-	-	172	-
1966	-	-	319	-	-	290	-
1967	-	-	292	-	-	335	-
1968	-	-	272	-	-	579	-
1969	-	-	204	-	-	782	-
1970	-	-	165	-	-	919	-
1971	-	-	109	-	-	1,087	-
1972	-	-	31	-	-	1,728	-
1973	-	-	-	-	-	1,160	-
1974	-	-	-	-	-	2,740	-
1975	-	-	-	-	-	4,945	-
1976	-	-	-	-	-	6,110	-
1977 <sup>9)</sup>	-	-	-	-	-	-	-
1978	-	-	-	-	-	-	-
1979	-	-	-	-	-	-	-
1980	-	-	-	-	-	-	-
1981	-	-	-	-	-	-	-
1982	-	-	-	-	-	-	-
1983	-	-	-	-	-	-	-
1984	-	-	-	-	-	-	-
1985	-	-	-	-	-	-	-
1986	-	-	-	-	-	-	-
1987	-	-	-	-	-	-	-
1988	-	-	-	-	-	-	-
1989	-	-	-	-	-	-	-
1990	-	-	-	-	-	-	-
1991	-	-	-	-	-	-	-
1992	-	-	-	-	-	-	-
1993	-	-	-	-	-	-	-
1994	-	-	-	-	-	-	-
1995	-	-	-	-	-	-	-
1996	-	-	-	-	-	-	-
1997	-	-	-	-	-	-	-
1998	-	-	-	-	-	-	-
1999	-	-	-	-	-	-	-
2000	-	-	-	-	-	-	-
2001	-	-	-	-	-	-	-
2002	-	-	-	-	-	-	-
2003	-	-	-	-	-	-	-
2004	-	-	-	-	-	-	-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연도	공무원연금	국토건설사업	부정축재처리자금	정보보유외국환관리	재정자금운용	원호 <sup>가)</sup>	교도작업
1948 <sup>가)</sup>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						
1955	-						
1957	-						
1958	-						
1959	-						
1960	4,529						
1961	10	39	2	-	-	-	-
1962	14	40	14	-	24	46	1
1963	19	-	4	-	60	24	1
1964	12	-	6	-	54	24	1
1965	14	-	7	-	48	27	2
1966	16	-	-	-	151	32	2
1967	21	-	-	-	216	40	3
1968	37	-	-	-	195	53	3
1969	53				487	66	4
1970	91				398	73	5
1971	97				525	88	5
1972	117				460	111	6
1973	160				426	101	10
1974	140				-	117	13
1975	154				-	158	16
1976	397				-	232	22
1977 <sup>가)</sup>	452					341	31
1978	606					424	37
1979	732					521	48
1980	1,233					672	57
1981	1,827					830	66
1982	2,464					-	64
1983	-					-	80
1984	-					-	97
1985	-					-	109
1986	-					-	116
1987	-					-	101
1988							106
1989							111
1990							113
1991							125
1992							143
1993							174
1994							202
1995							228
1996							229
1997							237
1998							246
1999							261
2000							271
2001							275
2002							336
2003							340
2004							334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연도	국토건설원	재정차관자금관리	청구권자금관리	문화재관리	국립대학교부속병원	국유임야관리	중기사업
1948 <sup>a)</sup>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7							
1958							
1959							
1960							
1961	-	-	-	-	-	-	-
1962	5	-	-	-	-	-	-
1963	-	-	-	2	-	-	-
1964	-	-	-	2	-	-	-
1965	-	-	-	3	-	-	-
1966	-	33	50	4	5	3	-
1967	-	55	101	6	7	5	3
1968	-	58	84	8	10	7	6
1969		336	120	12		8	10
1970		305	102	15		8	10
1971		470	84	16		13	8
1972		948	223	14		13	7
1973		803	176	16		13	
1974		516	172	15		25	-
1975		1,716	228	17		43	-
1976		1,859	113	18		39	-
1977 <sup>b)</sup>				19	197	36	
1978				20	289	43	
1979				25	162	64	
1980				29	226	81	
1981				36	334	88	
1982				48	425	96	
1983				43	500	89	
1984				43	543	97	
1985				42	599	97	
1986				48	674	103	
1987				52	807	120	
1988				54	967	209	
1989					1,103	261	
1990					1,360	584	
1991					1,716	766	
1992					2,056	836	
1993					1,699	736	
1994					1,268		
1995					908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국영TV방송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용시설교외이전	정부청사조정	정부청사시설	국립의료원	도로정비사업
1948 <sup>2)</sup>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7							
1958							
1959							
1960							
1961	-	-	-	-	-	-	-
1962	-	-	-	-	-	-	-
1963	1	-	-	-	-	-	-
1964	1	-	-	-	-	-	-
1965	1	3	-	-	-	-	-
1966	1	5	1	-	-	-	-
1967	2	7	4	2	-	-	-
1968	5	10	7	10	-	3	129
1969	7	17	5	20	-	5	316
1970	13	24	9	18	-	6	304
1971	17	31	13	9	-	8	251
1972	23	44	8	8	-	9	356
1973	4	52	15	7	-	10	420
1974	-	78	30	15	-	13	375
1975	-	122	28	21	-	18	571
1976	-	143	26	-	-	24	561
1977 <sup>3)</sup>		240	53			32	
1978		353	52			42	
1979		612	78			52	
1980		720	70			76	
1981		884	6			124	
1982		1,128	57			145	
1983		1,341	189			162	
1984		1,621	254			133	
1985		2,019	373			155	
1986		2,340	415			169	
1987		2,663	508			185	
1988		3,282	551			192	
1989		4,127	836			218	
1990		5,873	1,265			249	
1991		7,767	2,432			305	
1992		10,279	3,977			355	
1993		10,467	3,227		189	403	
1994		11,254				463	
1995		5,528				466	
1996						455	
1997						475	
1998						466	
1999						486	
2000						476	
2001						521	
2002						533	
2003						566	
2004						616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도로사업	군인연금	사법시설	서울대학교시설확충	항공기정비	국립대학교	국립종축장관리
1948 <sup>a)</sup>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7							
1958							
1959							
1960							
1961		-	-				
1962		-	-				
1963		-	-				
1964		7	-				
1965		6	-				
1966		10	-				
1967		15	-				
1968		19	11				
1969		22	19	5	-	16	-
1970		43	23	12	-	20	3
1971		55	31	14	-	26	3
1972		72	31	19	-	33	3
1973		87	34	43	-	37	4
1974		93	24	56	1	51	7
1975		94	32	36	1	71	7
1976		155	49	17	1	125	9
1977 <sup>a)</sup>		237	118				
1978		317	148				
1979		396	244				
1980		660	310				
1981		922	445				
1982		1,204	465				
1983		1,395	601				
1984		1,444	592				
1985		1,711	619				
1986		2,121	861				
1987		2,367	1,027				
1988		2,790	1,140				
1989	9,131	3,228	1,083				
1990	12,306	3,886	1,090				
1991	13,544	4,494	1,335				
1992	18,119	5,776	1,939				
1993	20,664	6,773	1,994				
1994		7,289					
1995		8,300					
1996		8,857					
1997		8,562					
1998		9,342					
1999		10,014					
2000		10,429					
2001		11,139					
2002		12,124					
2003		14,214					
2004		15,210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재정용자 <sup>9)</sup>	교육환경개선	국민복지연금	우체국(체신)보험	특별관리	국유재산관리 <sup>10)</sup>	농어촌구조개선
1948 <sup>9)</sup>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1975							
1976							
1977 <sup>9)</sup>	3,296		1	-			
1978	3,386		1	-			
1979	5,081		1	-			
1980	6,611		1	-			
1981	8,643		1	-			
1982	10,511		1	-			
1983	12,355		1	-	-		
1984	20,063		1	58	-		
1985	18,958		1	169	-		
1986	20,694		1	818	-		
1987	22,351		51	220	-		
1988	43,680			284			
1989	70,183			334			
1990	58,378	3,697		405			
1991	62,107	3,699		460			
1992	47,971	3,703		598			
1993	"87,434			734			9,459
1994	107,686			1,013		10,153	13,363
1995	111,840			977		11,806	28,116
1996	118,752	4,000		1,314		14,785	44,304
1997	103,341	7,000		1,588		15,476	54,454
1998	152,070	7,000		1,752		9,896	56,690
1999	191,176	7,000		2,422		10,318	52,823
2000	207,899	7,000		3,560		11,946	59,955
2001	162,601			3,887		12,817	59,094
2002	169,240			4,117		13,398	62,097
2003	181,038			4,872		12,493	63,413
2004	147,160			5,082		13,038	68,234
							67,252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연도	농어촌특별세관리 <sup>1)</sup>	교통시설 <sup>2)</sup>	등기	지방양여금관리	지방교육양여금관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1948 <sup>3)</sup>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sup>4)</sup>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5,250	13,418		
1992				11,842	17,733		
1993				12,850	20,761		
1994	2,118	42,551	403	17,702	25,774		
1995	13,390	49,335	501	21,336	29,124	14,276	3,924
1996	14,864	65,114	745	24,056	35,228	16,816	5,960
1997	12,394	79,565	1,008	25,388	44,600	19,258	7,418
1998	12,022	105,708	1,277	29,457	48,201	20,523	8,847
1999	17,479	118,258	1,428	35,108	48,073	19,933	9,313
2000	16,493	120,520	1,560	36,422	50,578	19,206	10,203
2001	21,464	130,997	1,713	40,879	39,477	23,086	11,531
2002	21,146	130,052	1,855	39,752	31,493	22,309	12,004
2003	20,710	145,241	1,678	43,360	36,598	23,572	12,680
2004	20,740	135,873	1,843	45,445	38,636	22,141	12,544

2. 특별회계 규모 추이 (계속)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도시철도사업	특허관리	합계
1948 <sup>3)</sup>					17
1949					1,249
1950					2,603
1951					12,920
1952					47,842
1953					137,830
1954					296,024
1955					728,262
1957					776,959
1958					686,261
1959					598,282
1960					540,074
1961					565
1962					802
1963					1,068
1964					1,123
1965					1,302
1966					2,086
1967					2,432
1968					3,274
1969					5,038
1970					4,589
1971					5,494
1972					7,442
1973					7,341
1974					9,891
1975					16,861
1976					20,692
1977 <sup>4)</sup>					18,217
1978					22,821
1979					29,276
1980					42,078
1981					54,584
1982					47,794
1983					49,772
1984					59,549
1985					60,600
1986					69,577
1987					51,558
1988				114	70,469
1989				170	109,492
1990				182	110,460
1991	734		2,100	225	147,138
1992	1,826		2,500	236	170,898
1993	2,276	473	3,802	261	223,038
1994	3,637	692		307	324,891
1995	4,079	764		394	381,325
1996	3,483	917		513	435,590
1997	3,828	683		644	465,674
1998	2,803	738		811	542,324
1999	1,794	804		839	616,706
2000	1,977	252		1,302	647,875
2001	2,654	1,231		1,488	630,702
2002	1,962	3,653		1,714	643,657
2003	2,907	10,001		1,664	707,808
2004	3,265	6,537		1,832	649,582

- 주 : 1) 세출결산 총계기준.  
 2) 1948년도는 6개월분.  
 3) 외자는 1948~49년에 감시외자총국특별회계.  
 4) 관재청은 1948~49년에 감시관재총국특별회계.  
 5) 교통사업, 경제부흥특별회계는 1962년도에 폐지되고 1963년도부터 철도사업, 경제개발특별회계로 개편.  
 6) 체신사업특별회계는 1961년도에 폐지되고 1962년도부터는 통신사업특별회계로 개편.  
 7) 군사원호특별회계는 1962년도에 폐지되고 1963년도부터 원호특별회계로 개편.  
 8) 1977년 증가율은 1977년중 자금관리특별회계가 통합 신설되어 파악곤란.  
 9) '87년 이전은 자금관리 특별회계.  
 10) '94년부터 4개 특별회계(국유임야관리, 군용시설, 사법시설, 정부청사)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통합.  
 11) '94년 개편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였음.  
 12) '94년부터 2개 특별회계(도로사업, 도시철도)를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통합.
- 1, 1956년도 자료 없음.  
 자료 :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통계자료>, 제3집, 1961.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경제기획원, <예산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각 연도.

##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 불투명한 NGO 회계 기부문화 죽인다

민간 비영리단체들의 투명성 부족이 기부를 통한 기업의 사회 공헌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경련이 어제 내놓은 '기업 기부문화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주요 기업의 총기부액은 7,411억원에 달한다. 기업당 평균 36억원을 기부한 셈으로 기부문화가 척박한 우리 현실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 기부가 전체 기부의 80%에 달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부는 대부분 기업 몫인 게 사실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 모금 결과만 봐도 전체 모금액 1,627억원 가운데 73%인 1,185억원을 기업이 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들이 기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아 기업들이 기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부의 애로 요인 중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는 대답이 46%에 달했다. 한 민간단체에 수억원을 기부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 결과보고가 없어 문의했더니 영수증도 없이 달랑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역서만 보내더라는 기업 관계자의 개탄은 우리 비정부기구(NGO)들의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결국 그 기업은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지 못했으며 이듬해 기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말았다.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부족이 부메랑이 돼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시민사회정보시스템(GuideStar)을 구축해 사업 소개와 회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렇지 못한 단체가 훨씬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먼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사업 내역과 회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만이 기업은 물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앙일보 2007년 7월 11일자 '사설')

### 국세심판원의 론스타 과세불복 기각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 3건(1,017억원) 모두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사로 봤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론스타 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본사가 조세회피 계획을 만들어 실행했으며 스타홀딩스가 스타타워 소유자인 론스타코리아의 주식 매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론스타가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결론은 법원의 몫이 됐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것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투자소득에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단지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기업과 달리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조세회피로서 과세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이다.

론스타 세무조사 당시 '외국인 투자자 탈출 리스크가 시작될 것'이라는 등 온갖 이유를 들어 국세청에 대해 협박조로 세무조사를 반대한 국내 고위 인사들도 많았다고 한다. 훗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로부터의 역풍을 이겨내는 것이 세무조사 자체보다 더 힘들고 부담도 컸다고 솔직한 적이 있다. 그만큼 외국자본 과세는 안팎으로 힘들다.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의 극동건설·스타리스·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스타타워 사례와 다른 측면이 있어 과세가 어려울 수도 있

다. 억지로 세금을 물려서도 안 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포기돼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 2007년 7월 7일자 '사설'〉

###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04년부터 3년 넘게 논란을 거듭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덜 받는다' 내용으로 당초의 정부 안보다 후퇴한 '반쪽짜리 개혁'이긴 하지만 연금재정 고갈(枯渴)의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이번 연금법 개정은 겨우 한 고비만 넘긴 것일 뿐 연금재정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금 고갈시기가 겨우 13년 정도 늦춰졌을 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앞으로 보험료율 조정 등의 추가적인 개혁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 비상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소요재원 마련을 비롯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임을 감안하면 연금개혁

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동안 누차 지적됐지만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 부담 형평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형편없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국민만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간의 지나친 격차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 재정이 훨씬 부실한데도 더 많은 연금을 주면서 해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연금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다.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등 전면적 연금 개편을 하루빨리 서두르지 않을 경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구조조정이 보다 과감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미완(未完)에 그치고 말 것이다. 결국 재정불안은 상존하면서 연금에 대한 국민 불만과 다음 세대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또다시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정치적 이해타

산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한국경제 2007년 7월 4일자 '사설'〉

## 한·미 FTA 마무리 잘하자

6월 30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2월 협상을 시작, 올해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추가 협상까지 마무리해 양국 정부 간의 협상 절차는 모두 마쳤다.

그간 한·미 양국은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했지만 강력한 리더십과 능숙한 협상으로 고비를 넘겼다. 의약품·개성공단·소고기·무역구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이 돌출될 때마다 협상이 삐걱거리는 듯했다.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통상 공세와 국내시장 보호에 급급한 전통적인 한국의 통상협상 방식이 반보땀다면 협상은 일찌감치 좌초했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는 성숙함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계기로 '경쟁과 개방'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협상의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양국이 한·미 FTA를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기회인 동시에 동북아의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4월 2일 협상 타결 이후 협정문을 두고 면밀한 검증작업이 있었다. 양국의 비교우위를 반영하면서 서로의 민감성을 존중하는 결과를 도출해 균형을 이룬 '중상급 FTA'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추가 협상에서도 이러한 균형의 원칙은 견지됐다.

양국의 대외협상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이제 공은 양국의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만 한·미 FTA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양국 정치권의 상황이 낙관을 불허한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고,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과연 비준동의에 적극적일지도 의문이다. 내년엔 대선을 치르는 미국은 일부 예비 후보가 반FTA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 하원 지도부 4인이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FTA 기류가 심상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의 비준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의 반발은 주로 자동차와 소고기 관련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번 추가 협상에서 이들 분야가 논의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기도 하지만, 선거구민만을 의식한 지극히 무책임한 정치 행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공화당 행정부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 이들 분야를 포함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기회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의 정치 일정을 볼 때 올가을

에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필자가 주도한 통상 전공 교수 30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압도적인 다수가 대선 전에 비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대선이 지나면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데,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비준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정치권의 전열이 재정비된 상태에서 비준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때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돌입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이 2009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관세 인화와 비관세 장벽 제거 혜택은 서류 위에서 잠들게 된다.

한국 정부는 부처 간 합의를 거쳐 6월 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한·칠레 FTA 비준 과정에서 경험했듯 예상되는 피해를 지나치게 과장한 퍼붓기식 보상은 지양해야 한다. 납세자인 국민은 이미 학습효과를 통해 생산자만을 의식한 정치권의 과보호 행태에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조기 비준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지도·편달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의 몫이다. 이제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중앙일보 2007년 7월 3일자 '시론'〉

## 저출산

한국은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다. 유엔인구기금(UNEP)의 '2007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19명. 가임 연령(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가 1.19명이란 뜻이다. 홍콩·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에 이어 세계 4위 저출산국이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합계출산율이 현행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인 2.1 이하로 떨어진 것이 1983년이다. 여기에 심각한 고령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5%에서 2020년대에 2%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마침내 정부는 지난해 '새로마지플랜2010'(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한 논문은 직장 생활을 하던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면 손해액이 1억 400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또 첫아이의 화폐적 가치는 1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첫아이를 키우는 데 그만큼 기회비용이 든다는 얘기다. 남편의 소득 공유라는 추가 이득이 없다면 결혼과 출산은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결론이다.

황정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 저출산 담론을 둘러싼 성장제일주의를 비판한다. 산아제한기에는 고출산이 성장을 방

해하고, 최근에는 저출산이 성장을 위협한다고 단정지며 국가가 출산율 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다. "정책 목표는 '적게 낳자'에서 '많이 낳자'로 바뀌었지만 출산 양육에 대한 근본 시각은 개발국가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출산 자체를 '경제현상'으로만 보며 건설 경기를 부양하듯 출산을 늘릴 수는 없다."

전통적 가족관계와 규범의 변화 속에서 경제 부양용 출산 장려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도 묻는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많이 낳는 사회'가 아니라 '잘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해외로 입양되는 문제, 낳아들이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잘 키우는 사회'의 출발은 결국 남성과 여성, 사회가 모두 양육을 부담하는 시스템의 마련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잘 살아보기 위해 고집했던,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 이기적 가족주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주의, 그리고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출산 해법의 실마리라는 것이다.

양성희(중앙일보 문화스포츠 부문 차장)  
〈중앙일보 2007년 6월 29일자 '부수대'〉

## '유류세 인하 논쟁' 나무보다 숲을 보자

요즘 '유류세 인하 논쟁'이 뜨겁다. 국민소득에 견준 체감 유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몇 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논지다. 만약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면 시급히 유류세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경제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경제학자란 사실을 떠나 주유할 때마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필자 또한 심정적으로 분통을 금할 수 없다. 유가가 인하되기를 누구 못지않게 바라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가가 높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현재의 가격 수준이 적정한지를 짚은 다음 조세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소득 대비 유가의 비교가 방법론상 적절한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석유류의 값은 주로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가격을 설명하는 데서 소득의 역할은 상당히 작다. 그러므로 소득 대비 가격의 국제비교는 원천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후진국을 상대로 소득 대비 유가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후진국보다 훨씬 낮다. 그런데 왜 굳이 반대 위치에 있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비교하는지도

의문스럽다.

석유류는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 외부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외부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여 값을 높여야만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소비 수준에 도달한다. 유류세는 제조원가에 외부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다.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 비용은 직접도가 높을수록 가파르게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산악지역을 뺀 유효면적당 인구밀도는 훨씬 더 높다. 반면에 도로 여건은 선진국보다 열악하다. 따라서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 비용은 직접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류의 경우 제조원가와 함께 외부비용이 거의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된다. 반면에 유가와 소득의 상관관계는 작다. 그러므로 이런 요인을 무시하고 체감 유가만을 기준으로 선진국보다 유가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급하다.

휘발유만을 놓고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유류세 인상이 거의 없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졌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의 가격 인상은 원유가 상승 및 정유사들의 유가정책에 기인한다. 이 경우에도 유가 상승의 원인을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실효세 부담은 오히려 종전보다 하락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유가 수준은 어느 정

도인가. 2006년 4분기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는 세금 비중이 57.6%로 29개 회원국 중 14위, 절대 가격은 11위이다. 경유는 세금 비중이 47.4%로 19위, 가격 수준은 14위이다. 외부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우리나라의 유가가 높다고 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유류세 체계를 유지하되,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와 대체수단 개발 등을 통한 수요 관리를 통해 석유류 소비 및 국민 부담을 모두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명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겨레 2007년 6월 22일자 '왜냐면'〉

### 중소 상속세 감면방안 적극 추진해야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이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매년 10%씩 감면해 10년 후에는 전액 면제하겠다고 함으로써 중기의 가업승계·고용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기 1세대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세 부담이었다. 이로써 한국도 외국처럼 100년 이상 기업이 이어지는 '기업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는 100년 넘은 중기가 흔하다. 특히 일본은 2만 개 가까이 되고, 소위 '마치고바(町工場)'로 불리는 길거리 소규모 공장도 100년 넘은 것이 아주 많다. 우리는 100년은커녕 반세기 넘는 것조차 손가락으로 셀 정도다. 우리 중기 중 가족기업이 거의 70%나 되는데도 평균 수명은 10년이 조금 넘을 뿐이다. 바로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인의 무지, 준비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인 중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50%나 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과세가 15%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상속세 감면 등 제반 조치는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나 상속세에 대한 중기인의 관심을 제고해 가업승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일본 등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경쟁하듯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상속세 감면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독일의 정책을 그대로 본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상속 활성화,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이를 악용한 탈세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계도 상속세가 많다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 감면정책 입안과정부터 중기 업계의 뜻이 많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도 중기 업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업승계 사업자가 자긍심을 갖고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 2007년 6월 19일자 '사설'〉

## 한미 FTA '年内 비준 동의'에 범국민적 응원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제 국회가 넘겨받아 협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따져볼 차례다. 국내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는 협정 비준 동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12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회도 대선 바람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조기에 비준을 마무리하면 미국 의회에서 서둘러 비준 동의를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에선 한국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정문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고, 의회 비준 동의 절차도 우리보다 까다로워 발효까지 순

향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FTA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계기로 협상이 시작됐고, 전체 협상과정에 노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다. 한미 FTA 협상 완결은 현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제때 받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을 상대로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성실하게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 올 하반기에 노 대통령이 다른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한 가지 몰두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한미 FTA에서 유종(有終)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정부는 FTA 협정문 공개에 그치지 말고 FTA 협정문 내용과 영향, 대비 방안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을 포함한 FTA 반대파는 아직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FTA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제도 FTA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들의 허황된 논리에 국민이 더는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FTA에 관해 잘 알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국회의 비준동의도 쉬워진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좋은 발판이지만 그 영향을 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그제 내용은 보완대책처럼 손실 보전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동아일보 2007년 6월 29일자 '사설'〉

# 재정포럼

2007년 7월호 통권 제133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 월간 재정포럼

2007년 7월 16일 발행 / 제12권 제7호(통권 제13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